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2016年 8月
博士學位論文

法人企業의 會計監査制度에 관한 研究

- 外監法上 監査對象企業의 擴大方案 摸索과
組織變更 事例檢討를 中心으로 -

조선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이 재 운

法人企業의 會計監査制度에 관한 研究

- 外監法上 監査對象企業의 擴大方案 摸索과
組織變更 事例檢討를 中心으로 -

A Study on Auditing System in Korea Corporation

- Focus on greater extent of the companies subject to audit in
oegambeop and reorganization alteration of review cases -

2016년 8월 25일

조선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이 재 운

法人企業의 會計監査制度에 관한 研究

- 外監法上 監査對象企業의 擴大方案 摸索과
組織變更 事例檢討를 中心으로 -

지 도 교 수 조 승 제
공동지도교수 서 성 호

이 논문을 경영학박사학위 청구논문으로 제출함

2016년 4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이 재 운

이재운의 경영학 박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단국대학교 교수 양만식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김승용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김문태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서성호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조승제 (인)

2016년 6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목 차

ABSTRACT	vi
I. 서 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2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1)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2) 연구의 구성	4
3. 선행연구의 검토	5
1) 국외 선행연구	5
2) 국내 선행연구	7
3)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이점	12
II. 감사제도의 개관	13
1. 감사제도	13
1) 감사제도의 의의	13
2) 감사의 종류	14
2. 한국 감사제도의 현황	21
1) 감사제도의 목적	21
2) 감사의 선임과 해임	25
3) 감사의 권한	28
4) 감사의 책임	29
5) 감사위원회	30
6) 외부감사인	33

3. 회계감사의 의의 및 환경변화	36
1) 일반적인 회계감사의 정의	36
2) 회계감사의 목적	38
3) 회계투명성을 위한 감사의 중요성	39
4) 회계감사의 독립성	44
5) IFRS 도입과 회계감사환경 변화	45
4. 주식회사의 회계감사제도	47
1) 외부감사대상기준에 관한 법률 연혁	47
2) 외부감사대상 기준	49
3) 주식회사 회계감사제도의 중요성	52
4) 주식회사의 회계감사 현황	53
III. 주요국 감사제도의 분석 및 회계감사제도의 비교·고찰	57
1. 감사제도 개혁논쟁과 국제적 동향 및 한국의 입장	57
1) 감사제도 개혁논쟁의 배경	57
2) EU의 Green Paper	58
3) 미국의 PACOB의 Concept Release	60
4) 일본에서의 사외이사제도 도입	61
5) 한국에서의 회계신인도 제고에 관한 논의	62
2. 미국의 감사제도	63
1) 미국의 감사위원회제도	63
2) 미국법률협회(ALI)의 감사위원회에 관한 규정	64
3) 미국 감사제도의 특징 및 시사점	70
3. 독일의 감사제도	73
1) 독일의 감사제도 의의 및 문제점	73
2) 독일감사제도의 특징	75
3) 독일감사제도의 흐름	77
4) 독일 감사제도의 특징 및 시사점	78

4. 일본의 감사제도	80
1) 감사관련 제도의 연혁	80
2) 감사관련 제도의 일반	81
3) 비영리 법인에 대한 특수감사	86
4) 감사의 권한 및 자격	89
5) 일본 감사제도의 특징 및 시사점	92
5. 중국의 감사제도	95
1) 내부인 통제	95
2) 회계감사제도	97
3) 중국 감사제도의 특징 및 개선점	103
6. 한·미·일 비영리법인에 대한 회계감사제도 비교	106
1) 비영리법인의 운영	106
2) 비영리법인의 회계기준	108
3) 비영리법인 회계정보의 공개	109
4) 비영리법인에 대한 외부감사	112
7. 우리나라 회계감사제도의 문제점	113
1) 회계감사제도의 특징	113
2) 회계감사제도의 문제점	114
3) 한국회계기준의 문제점	117
4)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문제점	119

IV. 주식회사의 조직변경관련 사례 및 개선방안 121

1. 서언	121
1) 주식회사의 조직변경관련 사례현황에 대한 개관	121
2) 외감법 개정에 관한 논의	125
2. 주식회사의 조직변경관련 사례와 문제점	125
1) 우리나라 회사의 현황	125
2) 회사의 회계규정	126
3)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특징 비교	129

4) 주식회사가 유한회사로 조직변경 한 사례예시	130
5) 주식회사 조직변경시 회계감사제도와 관련된 문제점	134
3. 회계감사제도의 개선방안	137
1) 외감법 개선의 필요성	137
2) 외감법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제안	139
3) 대규모 비상장주식회사에 대한 회계규율 강화에 관한 제안	145
4) 비영리법인의 투명성제고를 위한 기준확립에 관한 제안	147
5) IFRS 도입에 따른 회계감사제도의 개선에 관한 제안	159
6) 내부회계관리제도 개선방안의 모색	163
V. 결론 및 한계점	165
1. 결 론	165
2. 한계점 및 향후 연구의 방향	168
【참고문헌】	169
1. 국내문헌	169
2. 외국문헌	174

표 목 차

< 표 1 > 감사목적에 따른 감사의 종류	16
< 표 2 > 내부감사 업무 및 내용	19
< 표 3 > 감사주체에 따른 감사의 종류	20
< 표 4 > 외감법상 감사대상기업의 변천	48
< 표 5 > 현행법상 외부감사대상기업	49
< 표 6 > 외부감사 면제대상기업	50
< 표 7 > 외부감사 대상회사 현황(2015년 12월말 현재)	54
< 표 8 > 결산월별 외부감사 대상회사 현황(2015년 12월말 현재)	56
< 표 9 > 일본 회사법상 주식회사기관의 유형	83
< 표 10 > 비상장법인의 재무제표 제출 내용	118
< 표 11 > 재무제표 제출기한	119
< 표 12 > 유한회사의 규모별 현황	124
< 표 13 > 상법상 회사의 종류에 따른 회계처리기준	129
< 표 14 > 외부감사 규율관련 해외사례	138
< 표 15 >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관한 개정제안(안)	140
< 표 16 > 주식회사·유한회사·유한책임회사 제도 비교	142
< 표 17 > 비상장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회계규율 비교	143
< 표 18 > 주요국 외부감사 대상 기준	144
< 표 19 > 비상장 주식회사의 규모별 현황	146
< 표 20 > 상장회사와 비상장주식회사의 회계 규율 비교	147
< 표 21 > 원칙중심의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활동주체의 인식 변화	160

그 립 목 차

< 그림 1 > 연도별 외부감사대상 회사 추이	55
< 그림 2 > 자산규모별 외감대상 회사수	55
< 그림 3 > 회계투명성 확보차원의 제도개선방안	148

ABSTRACT

A Study on Auditing System in Korea Corporation

Jae Woon, Lee

Advisor : prof. Sung-Je Jo, Ph.D.

Department of Business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of Business Administration,

Chosun University

Co-Advisor : prof. Seong-Ho Seo, L.L.D.

Department of Business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of Business Administration,

Chosun University

The underground economy usually tax base automatically legalize transparency is ensured. Corporations to ensure transparency of the economy in the first institutionally to protect and ensure transparency of taxation will have to start. Transparency is ensured because, corporate tax base, these trading with many private operators will also be transparent. In addition, corporations and individual operators dealing with the dealer of sand, still has openly shown evidence related to dealing with the individuals.

Thus, for corporate external accounting auditors voluntarily, it is necessary to have the institutional incentives to obtain. Volunteering to expand external accounting auditors is our position be desirable in the tax. Because tax limits on the budget and the human resources for research and audit, our position in the tax since it is realistically work on projects which can not expand indefinitely.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was subject to external audit standards and External Audit of an unlisted company(limited companies, non-profit corporation) adjusted upward by 1.2 billion provide polices to expand.

These discussions to improve audit system and the issue for background is both domestic and foreign investors confidence, restoring the transparency of accounting information to the unceasing demand. These conflicts policy direction for the pros and cons of the positive effect of enhancing transparency and external audits amid accounting order to appear in the revision of the 「Act on External Audit of Stock Companies」. By securing transparency of the limited company of gratitude for the codification and non-profit organizations is deemed the most important personality test.

In this study the reorganization alteration of organization and non-profit entities, the Corporation recognized about the accounting audit system for transparency. Can summed up by three main details are as follows.

The first is the revision of the ‘Act on External Audit of Stock Companies’ of suggestions of improvements through the National Audit Office in order to make the system of discipline systems for such as amended or limited companies, of the audit scope of a corporation subject to external audit presented more discipline and reinforced.

The second is the improvement of accounting information service user side and in terms of external audits and accounting information as large unlisted, and strengthening a non-profit corporation’s accounting rules, establishing the general organization for accounting transparency and accounting standards for back presented through the codification of improvement measures.

The third one is IFRS of accounting audit system in accordance with the introduction of external audits to improve central accounting principles,

regulations, contract through introduction of the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presented in the accounting audit system improvement measures.

This study is a social accounting audit system for transparency about the role of the corporation limited companies, as well as target to improve measures, including non-profit organizations. Also, IFRS was introduced in the center of the principles and accounting and audit system is right to effective and reliable direction will draw up plans to the government to improve.

Accounting experts are very important in the judgement of the central principle. Leaders of corporations according to experts of the supervisor to match this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and the financial report of the best director and publishing the business of stakeholders shall be reported. This is our credibility is long and high, will be how to improve the quality of accounting information. In addition, financial authorities also serious damage that is expected of business stakeholders direct supervisor for companies and complementary think he needs a system could investigate.

So, by segmenting accounting standards, the National Audit Office, divided them into five areas of accounting information service user, accounting, accounting information system audit system and pointed out problems, and the status of suggested Through this, I have been a profit, composed of center, accounting for non-profit organizations as well as limited liability company either transparency improvement to enhance transparency, accounting and to suggest specific importance in that they have proposed relevant.

Limited company and non-profit corporation, proposed in this study is limited companies and non-profit entity and strengthen supervision or increase restrictions for a limited company and to reduce the activities of

non-profit corporations; rather it is properly limited companies and non-profit organization whose original role of the role of accounting transparency, better to help them perform.

External audits is the purpose of various external sources, protecting users and corporate accounting more transparent by providing external audits, to consider that boost public confidence. The terms of assets that are subject to external audit standards in addition to protection needs, changes in economic conditions by inclusively considering the necessity of the guard management accounting transparency, are believed to be an issue that will decide.

Later studies in hope to address stock-listed corporation's entire in the sovereignty costs corresponding to major shareholders about the company to undergo audit and by external auditors and to establish the target of an external audit. The standard by clearly stipulating the protection of the interested parties to enhance transparency and accounting companies in the law, since it is necessary to have to contribute to the healthy development of the terms of assets divided into detailed analysis at the back looks will need watching.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최근 국내 회계업계의 가장 큰 관심사는 유한회사의 외부감사 의무화, 외부감사대상 기업을 매출액 기준으로 선정하는 법제 신설 및 감사인 지정제도 확대 등 외부감사 효과를 전제로 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으로 칭함)의 개정문제에 관한 것에 있다.

이러한 회계업계의 관심사에 대해 일부업계 및 학계와 당국에서는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찬반의견이 나뉘고 있으나, 그 이면에는 각자가 처해 있는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 외부감사에 대한 상대적 가치평가와 이해관계가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다. 한편, 현재의 법제에서는 법인 중 일부 주식회사만이 외부감사대상 기업으로 강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대상기업은 감사대상기업에서 제외되기 위해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조직변경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가 하면, 처음부터 유한회사 등으로 설립을 추진하기도 하고, 자산규모를 축소하여 대상기업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경우가 적지만은 않다는 것이 현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제도 개혁방안으로 금융위원회는 유한회사에 대한 외부감사 의무화,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회계감리안, 주식회사의 외감법 대상기업에 대한 자산총액 기준을 기존 100억원에서 120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가 있고, 그러한 내용을 포함한 외감법개정(안)을 2013년도 말에는 국회에 제출한 바가 있었다. 그러나 그 전체가 입법에 반영되지는 못하고 그 중 외부감사대상기업에 대한 자산총액 기준의 개정(안)만이 회계투명성 제고 측면이 아닌 중소기업의 어려운 경영사정 등을 감안하여 나온 조치로

2014년 9월 외감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120억원으로 상향조정되었을 뿐이다.

그리고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낮은 감사 보수 현실화 방안, 유한회사에 대한 외부감사 확대, 세법개정을 통한 외부감사 실시법인에 대한 세제혜택 제공 등의 배경은 국내외 투자자에 대한 신뢰회복을 위한 회계정보의 투명성 제고에 대한 끊임없는 요구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 또한 국내 회계업계, 감독당국, 민간기업의 이해관계에 따라 찬반 의견이 대립되고 있어서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계투명성 향상을 위한 바람직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외부감사의 효과를 파악하여 입법제안 하는 것은 학자(연구자)의 기본적인 사명일 것으로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 후반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지원받은 이후부터 영리 기업부분의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외부감사 강화 및 회계기준 등을 정비하기 위한 조치에 따라 투명성개선에 많은 노력을 함으로써, 주요 경쟁상대국과 대등한 제도 및 정책적 경쟁력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계투명성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는 영리기업부분의 투명성뿐만 아니라 비영리법인의 회계투명성이 함께 개선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비영리법인의 사회적 기능과 경제적 규모의 중요성에 기인하여 비영리법인의 회계투명성에 대한 문제는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나, 회계부정관련 실제 사례들이 언론에 노출되면서 일반국민들의 신뢰를 잃고 사회에 대한 불신이 확대되는 문제가 있어 왔다. 특히 비영리법인의 경우 회계투명성에 있어서 사업목적별로 차이는 있으나, 투명한 회계처리의 기피로 인한 재정 운영상의 부실 등의 문제점들을 야기 시키고 있는 현실이다. 특히 비영리법인에 대한 불투명한 회계처리 및 그로 인한 재정운영의 부실로 인한 신뢰성 실추 등 일부 비영리법인에서 드러난 취약점은 사회문제로 비화되는 조짐을 보이기도 한다.

2) 연구의 목적

상술한 비영리법인의 문제점은 비영리법인들이 다양한 공익적인 활동을 펼

치고 있지만 회계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못함으로 인해 법인들의 활동에 대한 평가가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고, 일부에서 드러난 비리가 마치 전체 모습인 것으로 비추어지기도 하기 때문이다. 사정이 그러하고 보면 회계투명성의 확보는 비영리법인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도 필수적 요소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우리나라의 사회투명성 제고와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영리법인을 외부감사대상으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외부감사대상이 아닌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등에 대한 회계투명성 제고방안으로 외부감사대상기업에 포함시키는 것에 관해서도 고려해 보아야 할 시점에 와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외부감사가 회계투명성을 제고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겠는가에 관하여 먼저 확인하고, 다음으로 이를 기초하여 외부감사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향후 정책수립에 있어서 바람직한 개선책이 무엇인지 찾고자 함에 그 주된 목적이 있다.

상기한 목적적 차원에서 이하 본 논문에서는 비영리법인의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회계기준, 외부감사, 회계정보이용자와 작성자, 그리고 회계제도의 측면에서 개선해야 할 방향 등을 살펴본 후, 이를 기초로 유한회사 뿐만 아니라 비영리 회계법인의 회계투명성이 제고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개선점이 무엇인지까지 구체화하여 입법제안 하고자 하는 바이다.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문헌중심의 연구방법을 채택하고 있으며, 문헌 중 우리나라 주식회사의 감사제도와 외국 감사제도의 사례를 포함하여 총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유한회사, 비영리법인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문제점으로 좁혀가며 논하는 형식으로 전개되고 있다. 그리고 본 논문에서는 크게 이하에서와 같이 세 가지 범주로 나누어 살펴보는 것으로 진행된다.

첫째, 각종자료를 통해 우리나라 회계기준의 현황과 문제점, 회계감사의 중요성과 회계감사의 환경변화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고,

둘째, 회계감사를 포함한 감사제도의 국제적 동향을 비교법적으로 고찰하여 우리나라 주식회사의 감사제도에 관한 문제점이 무엇인지 파악함으로써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셋째, 주식회사의 조직변경 관련 사례를 검토하여 문제점을 찾아 현행 주식회사 감사제도의 문제점과 연계시켜 파악함으로써 외감법상 문제점을 도출하여 그 개정에 관한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이에 더하여 대규모 비상장회사에 대한 회계규율과 비영리법인의 투명성제고를 위한 기준확립은 어떻게 되어야하는지 까지 모색함으로써 결론으로 총체적인 법제개선에 관한 주장을 펼치고자 하였다.

2) 연구의 구성

본 논문의 전체적인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1장에서는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논문이 추구하는 바를 전체적인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배경과 목적, 연구의 범위 등에 관하여 「서론」의 장으로 묶어 구성함과 동시에, 선행연구를 살펴본 후 본 연구와의 차이점을 제시하였다.

제2장은 「감사제도의 개관」의 장으로 감사제도의 기원과 발전 등에 관한 전체적이고 일반적인 이론과 현황을 정리하였다.

제3장은 「주요국 감사제도의 현황분석 및 회계감사제도의 비교·고찰」의 장으로 각국의 감사제도의 현황을 비교·검토하였고, 각국의 감사제도의 특징 및 시사점을 전제로 우리나라 회계감사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제4장은 「주식회사의 조직변경관련 사례 및 개선방안」의 장으로 사례를 중심으로 문제점을 파악하여 주식회사 회계감사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제5장은 「결론」의 장으로 현행 회계감사제도에 관한 종합적인 개선책을 제시하는 한편, 본 연구의 한계점을 적시하였다.

3. 선행연구의 검토

1) 국외 선행연구

Simunic(1980)¹⁾은 외부 감사시장에서 대형 회계법인 Big 8의 집중도가 높은 것이 외부 감사시장을 독과점시장이라고 볼 수 있는지를 연구하였다. 동 연구에서 감사보수의 결정요인을 감사투입시간 등 감사원가와 감사결과로 외부감사인 과 피감사회사의 손실 기대분포는 동일하다고 전제할 때 회사와 외부감사인간에 예상손실분담률의 차이로 인해 감사보수가 결정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동 연구에서는 실증분석결과 외부감사인의 실제 손실분담률이 예상 손실분담률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며, 이는 외부감사인의 감사비용이 감사보수를 초과하는 수익구조를 의미하므로 결국 회계법인이 파산하게 되는 원인으로 지적하였다.

Khurana and Raman(2004)²⁾은 영국, 미국, 캐나다 등의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Big 4 감사인의 감사품질이 내재된 자기자본비용과의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우선 미국의 경우에 Big 4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은 기업의 내재된 자기자본비용이 감사를 받지 않은 기업보다 더 낮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에 대해 소송과 관련된 위험이 보다 큰 미국의 자본시장 환경하에서는 Big 4 감사인이 소송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보다 높은 품질의 감사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투자자들은 평가한다고 결론지었다. 이와 같은 Khurana and Raman(2004)의 연구결과는 대형 감사인이 감사하였던 상장기업의 자본비용이 더 낮아지는 것은 감사품질이 높게 생각되는 감사인이 감사한 기업의 재무제표를 투자자들은 더 신뢰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기업의 정보위험도 동일하게 조금 더 낮아질 수 있다는 연구를 실증적 증거로 뒷받침하고 있다고 이해되고 있다.

1) Simunic,D. "The Pricing of Audit Services : Theory and Evidence.",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18, 1980, pp.161-190.

2) Khurana, I. K. and K. K. Raman. "Litigation risk and the financial reporting credibility of big 4 versus non-big 4 audits: Evidence from Anglo-American countries" *The Accounting Review* 79 (2), 2004, pp.473-495.

Wallace(2004)³⁾는 정보가설 관점에서 외부감사는 투자자에게 자본조달에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게 되는 것인데, 비상장회사의 경우는 주요 투자자인 대출자로 하여금 정보 불확실성을 감소시켜 차입이자율이 낮아지게 된다고 하였다.

일반적으로 외부감사는 적격체로서 독립적인 외부감사인이 재무제표에 인증을 표명함으로써 회계정보의 신뢰성이 제고되고, 또한 투자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며, 투자자보호를 위한 자본시장의 중요한 안전장치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외부감사는 경영자의 이익조정행위를 억제하는 등 정보비대칭을 완화시키는 효과를 가져다주며, 그로 인한 자본조달에 관한 비용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주식시장에서 자본조달이 어려운 소규모 비상장회사의 경우에는 정보가설관점(information hypothesis)에서 외부감사는 비상장회사의 차입에 있어서 대출자로 하여금 정보 불확실성을 감소시킴에 따라 차입이자율을 낮추는 효과를 주게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비상장회사가 독립성이 있는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게 되면 재무제표의 신뢰성이 높아지게 되므로 이를 통해 경영자의 이익조정행위를 억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대리인 비용이 낮은 일반적인 비상장회사에 대한 외부감사 효과를 정보가설 관점에서 논의하였다고 하는 점에서 의의를 가질 수 있겠다.

Abbott · Parker(2000)⁴⁾는 감사위원회의 다양한 기능 중 외부감사인의 선임과의 관계를 검증하였다. 이들의 연구에서는 독립적이고 적극적인 감사위원회는 소송이나 증권거래위원회의 제재로 경제적 손실과 그들의 명성이 훼손될 것에 대한 우려 때문에 높은 수준의 감사에 관한 질적 요구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피감사기업에 속해 있지 않은 외부감사인은 상대적으로 피감사기업 속해 있는 외부감사인보다 낮은 감사의 질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하여, 피감사기업이 속해 있는 산업에 전문적인 외부감사인의 선임과 독립적인 감사위원회와의 관계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3) Wallace, W. A. "The economic role of the audit in free and regulated markets: A look back and a look forward", *Research in Accounting Regulation* 17, pp.267-298.

4) Abbott, L.J. and S. Parker, "Auditor Selection and Audit Committee Characteristics, Auditing", *A Journal of Practice & Theory*, 19, 2000, pp.47-66.

위와 같은 관계검증을 위하여 감사위원회의 효과(독립성과 활동성 수준에 의해 측정)와 산업에 정통한 외부감사인의 선임과는 유의한 양(+)의 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였는데, 그 검증결과로 적극적이고 독립적인 감사위원회는 그 산업에 전문적인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감사위원회의 특성이 외부감사인의 선임과 관련이 있다는 증거를 제시함으로써 감사위원회의 기능에 대한 이해를 도와주고, 외부감사인의 선임 시에는 특정 산업에 대한 전문성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는 것에 관한 증거를 제시하고 있으며, 피감사기업이 속해 있는 산업에 능숙한 감사인을 선임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며, 그 결과 감사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고 회계정보의 신뢰성에 기여할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그 밖에도 동 연구에 있어서는 감사위원회가 회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지닌 회계전문가로 구성되어야 하고, 빈번한 회의를 개최하는 등 활발한 운영도 효과적인 감사위원회의 요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밝히고 있는데, 이러한 결과는 감사위원회와 이사회가 경영자로부터 독립될수록 기업의 회계 등 재무보고 과정에 대한 객관적인 감시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증거로 제시되기도 한다.⁵⁾

2) 국내 선행연구

서성호·이재운·김진환(2012)⁶⁾은 우리나라의 감사인 감사제도 전반에 관하여 외감법 및 동법시행령, 공인회계사법 및 동법시행령을 중심으로 포괄적·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현행 우리의 감사인 감사제도에 관한 문제점이 무엇인지 파악하고자 노력함과 동시에, 회계감사실무에 있어서 부실한 회계감사가 이루어지고 또한 이를 통제하지 못하는 원인이 제도적인 문제점에 기인하고 있음을 밝히고자 하였다. 동 연구의 결과로 얻게 된 제도적인 문제점은 외감법 및

5) 조문기·김중대, “감사위원회 제도가 이익의 정보효과에 미치는 영향”, 「회계와 감사연구」 제41호, pp.95-118.

6) 서성호·이재운·김진환, “주식회사의 회계감사제도에 관한 연구”, 「기업법연구」 제26권 제2호, 2012, pp.157-183.

그 시행령 등의 법제 자체의 복잡성으로 인한 한국공인회계사회 등에 위임하는 입법이 너무 많다는 것이었고, 또한 감독기관(금융감독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등)이 그 실행법제에 대한 심의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결국은 공인회계사회 자체가 이해집단에 해당되기 때문에 외감법이 의도하는 본래의 입법 취지가 퇴색되는 경향을 보일 수밖에 없음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동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우리나라의 감사인 감사에 관한 법제는 위임입법이 너무 많고 복잡하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에 관한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제도전반에 관한 재정비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는데, 이 경우에 있어서는 신뢰성을 바탕으로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부여한 권한(회계감사기준의 제정 및 적용, 회계감리권)이 그 실효성을 거두고 있지 못하는 한계점에 도달했다는 것을 인식하고, 회계감사기준의 마련에서부터 감리제도에 이르기까지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한 현행 법제방식을 탈피하여 정부기구가 직접 제정 및 감독·통제하는 방식으로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그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둘째, 감사인의 전문성에 근거한 책임강화 일변도의 입법정책에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다. 기업의 분식회계가 날로 다양화되고 지능화되어 가는 현 상황에서 감사인이 아무리 전문성을 갖춘 공인회계사로 구성되는 집단(회계법인 또는 감사반)이라고 하더라도 재무제표가 부정이나 오류에 의하여 왜곡표시된 전부를 밝혀낸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감사인의 도덕적인 해이에서 부실감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별개로 감사인이 그 임무에 성실하게 임하였어도 발견할 수 없었던 회사의 회계부정의 경우에 있어서는 제도적인 차원에서 감사인의 책임을 감면 또는 면제해 줄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되어 감사인이 책임회피에만 급급하지 않고 업무에 충실히 임할 수 있는 건전한 회계감사문화의 풍토조성 또한 필요하다는 것을 그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장금주·강민정·김상순(2014)⁷⁾은 외감법의 개정으로 소규모의 비상장 중소기업이 법정 외부감사에서 제외되는 경우 회계투명성이 얼마나 저하되는가를 이익조정 의 측정치로 쓰이는 재량적 발생액을 이용하여 확인하였다.

7) 장금주·강민정·김상순, “법정 외부감사에서 배제된 소규모 비상장기업의 이익조정”, 『회계저널』 제23권 제5호, 2014, pp.237-277.

최근 외부감사 대상범위의 확대 및 감소에 대한 논쟁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소규모 비상장 기업의 외부감사 효과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실증 분석을 수행한 연구가 적었음에 기인하여 동 연구에서는 실증분석을 통해 결과로 소규모 중소기업의 외부감사가 축소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동 연구는 외감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외부감사 대상기준(자산총액, 부채, 종업원 수)이외에도 최근 논의되고 있는 매출액을 고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동 연구에서는 현재 외부감사대상기준(자산총액, 부채, 종업원 기준)외에도 매출액 기준을 추가하여야 한다는 회계업계의 주장에 대한 타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매출액과 부채비율을 분석에 반영하여 그로 인한 이익조정 측정치의 변화를 살펴보았다는 점과, 외부감사가 회계투명성을 제고하는 긍정적 효과로 존재하는가를 확인하고자 이익조정 측정치인 성과통제 재량적 발생액을 이용하여 외감법 개정으로 인한 법정 외부감사에서 배제되는 경우의 효과를 파악하였다는 점에서 특이점이 있다.

동 연구에서는 분석결과 법정감사에서 배제된 소규모 비상장기업은 재량적 발생액이 법정감사를 받았던 기업에 비해 유의하게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며, 매출액과 부채비율이 큰 경우에 이러한 효과가 가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그리고 법정감사 대상기업과 그렇지 않는 기업을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에서도 위와 동일한 결과가 나타났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기초로 동 연구에서는 결론으로 법정감사 대상으로부터 배제되는 소규모 기업은 회계투명성에 관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았고, 또한 소규모 기업에 대한 대형 회계법인의 영향을 살펴보는 것으로부터 임의감사의 경우에는 대형회계법인의 이익조정이 반대로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간접적으로 소규모 기업의 경우에는 대규모 감사인보다 감사반 등 소규모 감사인의 감사가 더욱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동 연구에서는 비상장 중소기업이 외부감사를 안 받으면 회계투명성이 낮아지므로 현 시점에서 소규모 중소기업에 대한 외부감사를 축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한편, 향후 법률의 개정에 있어서 외부감사 대상에 대한 기준을 정할 때 매출액이 추가되어야 한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

하고 있음은 특이사항으로 주목된다 하겠다.

홍기용·김갑순·이선표·박훈(2013)⁸⁾은 외부회계감사를 자발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통해 현재 들어나 있지 않은 세원을 양성화 시켜 세수를 확보하자는 것을 제안하였다. 이 제안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강제성실신고 확인제도와 일본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해외 입법 사례를 통해 분석을 시도하였다. 그리고 자발적 회계감사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회계감사 확대 시 예상되는 신고소득금액의 증가액을 추정함으로써 정책적인 인센티브를 도입할 때 예상되는 세수증대에 대한 효과를 추계하였고, 우리나라의 경우는 국세기본법상 업종, 규모기준이 제시되고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세무조사 기준에 있어서는 명확하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등에 회계감사의 여부를 세무조사 기준으로 명시할 경우에는 차별적인 효과가 기대된다는 점을 고려하고 또한 세제상 혜택을 부여 하는 방법으로 세원투명성에 기여하는 회계감사가 동일한 정책적 취지와 목적에 충분히 부합된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김순석(2002)⁹⁾은 언론사 파산과정에서 나타난 미국의 기업고시제도와 회계관행, 감사위원회,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등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특히, 기업개혁법 중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한 내용과 회계감독위원회, 감사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연구함으로써 우리나라 감사시장 여건을 고려하여 외부감사인에 대한 금지되는 컨설팅 서비스를 지정할 때에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유형별로 분류하며 신중하게 시행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동 연구에서는 외부감사인 선임 및 보수, 감독 등에 대해서는 외부감사인을 추천하는 위원들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외부감사제도의 독립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보면서도 외부감사인이 피감사기업에 대해 회계감사와 컨설팅을 동시에 할 경우에는 제3자로 하여금 감사인의 객관적 독립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하여 그러한 부분에 대한 주의를 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함과 동시에, 감사인이 피감사기업으로부터 비감사 부분에 대한 서비스를 수주하기 위해 회계감사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감사

8) 홍기용·김갑순·이선표·박훈, “자발적 외부회계감사 확대와 지하경제양성화”, 「회계·세무와 감사연구」 제55권 제2호, 2013, pp.451-489.

9) 김순석, “기업의 회계부정과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제고방안” 「증권법연구」 제3권 제2호, 2002, pp.307-343.

인의 독립성 문제가 야기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정영기·박재환·박종성·전규안·이영한(2009)¹⁰⁾은 신·국제감사기준(New ISA)의 도입이 품질관리에 미치는 영향과 각종 법규에 미치는 영향 및 동 감사기준의 교육과 홍보방법 등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에 연구의 초점을 맞추었고, 신·국제 감사기준의 도입에 따른 대응방안에 대하여 이해관계자인 감사인(공인회계사), 감독기관(금융감독원), 학계(회계학 교수)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처럼 이론적 분석과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연구의 결론에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주장하고 있다.

즉, 첫째로는 신·국제감사기준의 도입이 품질관리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동 감사기준의 도입 시 위험평가(risk assessment)가 강조되므로 그에 알맞게 감리가 바뀌어야 한다고 하면서, 동 감사기준의 도입으로 감사계획단계에서 핵심감사인력의 참여 확대, 산업전문가 확보의 중요성 증가, 중요한 왜곡표시위험에 대한 평가결과와 후속 감사절차와의 연계성에 대한 명확화, 품질관리감리 위주의 전환 및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리의 중요성 등에 대해서 주장하고 있다.

둘째로는 신·국제감사기준의 도입이 각종 법규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동일한 이사에 의한 계속 감사 기간을 연장하고 감사보조자 교체규정을 폐지하여 주권상장법인은 동일한 이사로 하여금 6년 동안은 계속감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하면서, 적용 및 기타 설명 자료를 포함한 감사기준 전부를 금융위원회의 승인사항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빠뜨리는 등의 책임이 종속회사에 있거나 또는 그 밖의 관계회사의 감사인에게 있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감사인이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된 현행 외감법 제17조의 단서조항은 삭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셋째로는 신·국제감사기준의 도입 시 교육 및 홍보방안과 관련하여 감사인 개인별로 구축된 교육체계를 감사인 조직단위(감사반/법인)로 전환해야 한다고 하면서, 이미 위험기준 접근방법(risk-based approach)을 도입하여 적용하고 있는 캐나다 등의 실무적용사례를 벤치마크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공인회계사회 차원에서는 CPD강화, 품질관리를 감리에 반영,

10)정영기·박재환·박종성·전규안·이영한, “신·국제감사기준의 도입에 따른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회계와 감사 연구」 제50호, 2009, pp.25-67.

인증제도(accreditation)의 도입, 새로운 감사기준 도입배경에 대한 이해도 제고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동 감사기준을 실제 감사업무에 적용함으로써 새로운 감사기준의 성공적 정착에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회계법인인 회계법인 자체의 인증제도 운영, 감사인 조직의 대형화 유도, 감사 투입시간의 재검토와 문서화에 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동 연구는 신·국제감사기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동 감사기준 도입에 따른 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에서 동 감사기준이 성공적으로 정착하는데 기여될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3)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이점

앞에서는 본 연구와 유사한 면이 있는 일부 국·내외 선행연구에 대해서 간단히 그 요점을 정리해 가며 살펴보았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선행 연구에서와는 달리, 외부감사에 있어서 대규모 비상장 주식회사에 대한 회계규율 강화와 그동안 외부감사인에 대한 자격제한, 동일감사인 3년 선임의무, 회계감리절차 등 회계감독을 상장회사 중심으로 강화해 옴에 따라 상장주식회사와 비상장 주식회사 간의 규제차이가 커지게 되었음을 지적하고, 또한 외부감사 대상기업으로 되는 것에 대한 부담으로부터 대형 비상장주식회사들이 상장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과, 주식회사에 대한 외부감사의 강화에 관한 입법동향으로 인하여 기존 주식회사가 다른 조직으로 변경하는 사례가 늘고 있음에 착안하여 그러한 문제점을 구체화해 가면서 그 해결책을 찾고자 하였다는 점에 그 특이성이 있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영국·호주 등 몇몇 선진국의 경우를 볼 때 외부감사의 대상기업이 되는 경우에는 비상장회사나 상장회사 간에 회계감독규율의 차이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 가며 우리나라의 주식회사가 범망을 피하기 위하여 유한회사 등으로 조직변경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과, 비상장회사의 상장을 유도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인 장치 및 그간의 법률개정(안) 등을 살펴봄으로써 효과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관해서도 밝히고자 함을 연구의 중심과제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본 연구와의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Ⅱ. 감사제도의 개관

1. 감사제도

1) 감사제도의 의의

합명회사 및 합자회사와 같은 인적회사는 무한책임사원이 직접 무한의 책임을 부담하고 경영에 참여하며 자율적으로 통제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회사의 유형중 감사를 위해 독립기관을 두도록 의무화 한 것은 주식회사가 유일하다. 주식회사는 원래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소유자가 직접 경영에 임하지 아니하고 전문경영인에 위임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부터 대리인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는 회사의 유형이다.

경영학적인 입장에서 대리인에 관한 문제는 주주와 경영자의 사이, 소유주 경영자(대주주, 지배주주)와 외부주주(소액주주)의 사이, 또는 경영자와 채권자의 사이에 있어서 발생하는 문제로 파악하고, 대리인과의 갈등을 줄이는 노력으로 감사(감사위원회)제도가 필요하게 된 것으로 설명하며, 신뢰할 수 있는 감사(감사위원회)의 선임 역시 중요한 문제로 취급되고 있다. 주식회사는 기능별로 주주총회, 이사회 및 대표이사(집행임원), 감사(감사위원회)와 같은 내부 기관구조를 갖추어야 하는데, 이 중 감사(감사위원회)는 업무집행기관을 감사하여 주주총회에 보고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설계되었다.

주식회사는 경영에 대한 감시기능을 누가 수행해야할 것인지에 관하여 고민할 수 밖에 없으며, 그 경영감시기능을 이사회에 부여하는 방법과 주주가 직접 수행하는 방법, 그리고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감사가 수행하는 방법 등이 고려되는 가운데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감사가 수행하는 방법이 가장 타당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¹¹⁾. 즉, 그러한 견해에서는 이사회에서 경영감시 기능을 수행 하게 되면 자기감사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고, 주주가 직접 감독하는 방법은 지분이 완전히 분산된 최근의 주식회사 형태에는 맞지 않는 방

11) 김건식 외, 「회사법(제3판)」 박영사(2012년), pp.284.

법이며, 현실적으로도 실행이 어려울 것이므로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감사에게 감사권을 위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타당한 방법이라고 주장한다. 특히, 소유와 경영이 완전하게 분리되지 않아 지배주주 또는 대주주에 의해 경영이 이루어지는 기업지배구조 환경에서 이사회가 경영감시기능을 수행하게 되면 감사기능의 실효성보장이 어려울 것이므로 독립된 감시기구에 의한 감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최근, 미국에서는 일원적 이사회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면서도 감독형 이사회제도¹²⁾가 많이 채택 되어 경영기능과 감독기능이 분리되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지배구조의 변화추이는 집행임원을 별도로 두어 그들로 하여금 업무집행을 담당하게 하고, 이사회는 감독기능을 수행하게 하는 감독형 이사회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도 설명될 수 있겠다.

일본의 경우는 독립된 개별 감사를 두어 감사업무를 전담시키는 전통적인 독립제 감사체제로 유지되어 왔으나, 2002년도 상법개정으로 감사위원회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선택적으로 감독형 이사회제도를 허용하기에 이르렀다.¹³⁾ 일본의 전통적 감사제도와 새로 도입된 감사위원회제도에서는 경영을 담당하는 이사와 경영감사를 담당하는 감사 또는 이사가 모두 주주총회에서 선임됨에 따라 이사와 감사가 상호 병립적인 관계를 가지게 되므로 병립적시스템이라고 불리어진다. 우리의 경우도 기존 상법상 감사는 일본의 경우처럼 독립제 감사체제를 취하고 있었으나, 1999년 감사위원회제도를 전면 도입한 이후 감사와 감사위원회를 강제 또는 선택적으로 허용하게 됨에 따라 그 체계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2) 감사의 종류

(1) 감사목적에 따른 분류

감사는 감사를 실시하는 기본목적에 따라 재무제표 감사, 업무감사, 이행감사 및 포괄감사로 나눈다.

12) 정찬형, 「상법강의(상)(제15판)」 박영사(2012), pp.885.

13)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감사제도”, 상장협 실무전집 vol 32, 2007, pp.43-44.

① 재무제표 감사

재무제표 감사(Audit of financial statements)란 재무제표¹⁴⁾가 사전에 설정된 평가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에 대한 의견을 표명할 목적으로 수행되는 감사를 말한다. 재무제표 감사에서의 평가기준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기준(GAAP;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이며, 자격을 갖춘 감사인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감사기준(GAAS; Generally Accepted Auditing Standards)에 의하여 감사를 하였을 때, 이해관계가 서로 다른 일반 대중이나 사회에 대하여 공정한 견해로 감사의견을 표명할 수 있으며, 따라서 재무제표에 대한 인증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재무제표 감사는 일반적으로 회계감사의 한 영역에 속하는데, 다른 보충설명이 없을 경우에 회계감사는 재무제표 감사를 의미하게 된다.¹⁵⁾

② 업무감사

업무감사(Operational Audit)란 어떤 조직이나 기업의 영업활동 및 업무절차에 대하여 그 능률과 효과를 평가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즉, 사전에 설정된 회사목표 또는 경영절차에 따라 업무가 수행되고 있고 인적·물적자원이 효율적으로 관리되는지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하여 경영진 등에 업무 및 제도개선을 건의하기 위하여 실시하게 되는 것이다. 업무감사는 재무제표 감사와는 달리 그 평가기준이 감사의 환경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그 대상과 범위 또한 상이하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¹⁶⁾

③ 이행감사

이행감사(Compliance Audit)란 어떤 조직이 상위기관 등에서 정한 특정법률, 절차, 의무규정 등을 이행하였느냐를 확인할 목적으로 실시되는 감사이다. 이행감사는 사기업이나 공공기관 또는 정부조직 모두에 적용되는 개념이다. 특

14)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서는 재무제표란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식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15) 이효익, 「회계감사론(제11판)」 신영사(2010년) pp.26.

16) 이효익, 전개서 pp.27.

히, 사기업의 이행감사는 회계담당자의 회사재무관리규정 이행여부, 퇴직급여의 근로기준법 준수여부, 신용대출기관이 정하는 여신관리규정의 이행여부 등 주로 내부감사실에서 실시하는 감사이다. 이행감사의 정보이용자는 주로 상급기관이나 동일조직내의 상급자에 한정되기 때문에 감사보고서의 형태도 다양하다. 17)

감사목적에 따른 감사의 종류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¹⁸⁾.

< 표 1 > 감사목적에 따른 감사의 종류

구분	재무제표 감사	업무감사	이행감사
감사목적	재무제표의 적정표시여부를 결정	업무의 능률과 효과를 평가	법규·규정 사항의 준수 여부를 결정
평가기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주관적	법규·절차·의무 규정의 내용
감사인	독립성을 갖춘 전문감사인, 주로 공인회계사	외부·내부 감사인	외부·내부 감사인
감사보고서 이용자	일반 다수 대중	주로 내부경영진	주로 내부경영진 및 상급규제기관
주된 감사기능	비판적 기능	지도적 기능	감시적 기능

④ 포괄감사

전술한 세 가지 목적을 모두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감사를 포괄감사(Comprehensive Auditing)라고 한다. 포괄감사는 정부조직 및 관련기관과 행정법규 등에 의해 정

17) 이효익, 전계서 pp.27.

18) 이효익, 전계서 pp.28.

부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는 조직을 감사하는 경우에 주로 사용된다. 원래 포괄감사의 의미는 감사의 목적이 한 가지로 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목적을 포괄적으로 수행한다는 뜻에서 비롯되었다.¹⁹⁾

(2) 감사주체에 따른 분류

감사를 수행하는 주체가 외부인인지 혹은 내부인인지에 따라 외부감사와 내부감사로 분류한다.

① 외부감사

외부감사란 피감사인과는 독립된 감사인이 감사를 시행하는 경우를 말하고, 주로 공인회계사와 같은 전문직업인이나 상급감독기관이 시행한다. 외부감사의 특징은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가 감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내부감사보다 공정한 의견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²⁰⁾ 그러므로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은 회계정보는 신뢰성이 높아지고 감사결과로 보고되는 보고서는 인증기능을 가질 수 있는 것으로 본다. 외부감사는 일반적으로 강제성을 가지는 경우가 많으며, 외부감사인은 다수의 이해관계자집단을 조정하고 보호할 책임을 부담한다. 가장 전형적인 외부감사는 공인회계사에 의한 재무제표 감사와 공적감사로 감사원 감사가 있다.

② 내부감사

내부감사란 조직내부의 종업원이나 임원에 의하여 실시되는 감사를 말한다. 내부감사인은 업무감사를 실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일상적으로 내부감사와 업무감사를 같은 뜻으로 받아들이기도 한다.²¹⁾

역사적으로 볼 때 초기의 내부감사인은 재무 및 회계활동과 이와 관련된 재무제표 감사에 비중을 두었으나 이러한 기능은 외부감사인으로 점차 대체되었고, 오늘날의 내부감사인은 오히려 회사정책이나 경영목적을 달성하기

19) 이효익, 전계서 pp.28.

20) 이효익, 전계서 pp.29.

21) 이효익, 전계서 pp.29.

위한 업무조직의 효율성과 이를 수행하는 종업원의 업적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관점에서 내부감사기능이 강조되고 있다.²²⁾

한편, 국제내부감사인협회(The Institute of Internal Auditors)는 기업 내의 경영자들의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내부통제의 적정성과 업무수행의 질을 평가하는 것을 내부감사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조직의 효율성과 업적평가, 즉 자문기능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업무감사의 성격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의 감사제도를 살펴보면, 자본과 경영이 분리되지 않았던 초기의 감사는 회계상의 오류의 발견과 부정 등에 초점을 맞추는 감시적 감사기능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기업의 규모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감사제도의 기능이 발전할 수 밖에 없었는데, 그 배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인회계사와 피감사기업의 직원들 사이에는 친밀한 인간관계를 가지기 어려울 것이고, 기업의 거래에 대한 감사를 하는데 있어서 공인회계사가 회계제도의 입안에 관여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으며 비경제적이기에 공인회계사가 충분히 감사인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이다.

둘째, 많은 경영문제가 복잡하게 됨에 따라 이에 대한 검토와 평가에 있어서 특수한 기술이나 지식을 가진 제3의 전문가가 필요하게 되었다.

셋째, 업무에 관한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관리자와 업무활동을 하지 않은 경영자 간의 의사소통이 필요하게 되었다.

넷째, 회사의 경영관리자는 경영실태관리 자료를 통하여 보고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받을 필요가 증대되었기 때문에 내부감사제도가 필요하게 되었다.

그러나 오류의 발견과 회계 부정 등에 초점을 둔 기존의 회계감사제도는 내부통제조직의 유효성과 타당성을 확보하여 오류의 발생과 부정을 예방하려는 감사유형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이다. 그 이유는 그러한 유형의 감사제도는 내부통제 조직의 정비 및 개선을 확인하는데 중점을 두는 것이었으므로 내부통제조직의 개선이 오류의 발견과 부정보다 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감사기능을 보다 중점을 두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단순히 회계상의 오류에 대한 지적과 회계부정을 목적으로 하던 회계지향형 감사기능이 경영지향형으로 발전하게 되었는데 이는 경영활동의

22) 이효익, 전계서 pp.30.

능률성 및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진화하게 된 것이다.

한국 내부감사의 업무범위에 대해 감사인의 자세와 능력 및 조직의 성격, 그리고 업계의 관행 등을 평가하여 정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설정될 수 있다.²³⁾

< 표 2 > 내부감사 업무 및 내용

감사업무 분야	감사내용
준거감사(compliance)	정보의 신뢰성과 무결점성 등 제반규정의 준수, 자산의 보전
효율성감사(Efficiency)	자원의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사용
효과성감사(Effectiveness)	설정된 목표의 달성

상기 < 표 2 >에서 정보의 신뢰성과 무결점성을 보면, 내부감사인은 업무 및 재무정보의 신뢰성과 무결점성에 대한 확인과 보고에 사용된 방법을 검토해야 함이 중요시 되었다는 것이다. 즉, 내부감사인이 조직의 운영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제반규정 준수를 위해 미리 설정된 시스템을 점검하고, 그에 따른 준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내부감사인이 자산보전의 수단을 미리 검토하고 필요할 때 그러한 자산이 실제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자산의 보전으로 보았다. 그리고 자원의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사용은 경제성과 효율성을 진단하기 위해 사용되는 자산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설정된 목표의 달성이란 업무상 미리 설정된 목표와 실제 목표의 달성에 대한 합치여부를 파악하는 것을 의미한다.²⁴⁾

23) 정민희, 「내부통제 및 내부감사 기능의 이해와 활용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2004, pp.17.

24) 김상웅, 내부감사제도의 이해와 활용을 위한 사례연구, 석사논문, 서울시립대학교, 2006, pp.22.

③ 상법상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사에 의한 내부감사 기능은 지금까지 설명된 업무감사 중심의 내부감사와 그 성격이 다르다. 상법상의 감사는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선임된 자로서 경영자를 감시하는 기능으로서의 감사를 실시한다. 업무담당 이사진 및 이사회에의 업무집행을 감시하는 기능 이외에도 배당가능이익에 대한 산정의 정당성, 재산의 보전상태 등을 감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상의 감사주체에 따른 감사의 종류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²⁵⁾

< 표 3 > 감사주체에 따른 감사의 종류

구분	외부감사	내부감사	상법상 감사에 의한 감사
감사목적	외부이해관계자의 이해조정	경영관리층의 업무보조	주주 및 채권자의 권익 보호
감사인	전문감사인 혹은 상급기관 등	조직내의 전문감사인 (내부감사인)	상법상의 감사
독립성	필수적임	필수적이지 않음	필수적이지 않음
감사보고서 이용자	일반 다수 대중	주로 내부경영층	주주·채권자
감사의 주대상	재무제표 혹은 특정항목(이행감사시)	업무조직의 효율성 및 경영성과	주주에 대한 경영자의 수탁책임
주된 감사기능	비판적 기능	지도·자문적 기능	감시적 기능
법정 강제성	법정감사	임의감사	법정감사

25) 이효익, 전계서 pp.31.

2. 한국 감사제도의 현황

1) 감사제도의 목적

(1) 주주의 이익보호

“주식회사의 주인은 주주”라고 보는 주주주권론은 주식회사법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이론이며, 또한 주주와 회사 임원들이 주주와 회사에 대하여 의무와 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을 설명하는 데 용이하게 이용되는 이론이기도 하다. 많은 학자들은 회사의 소유는 주주이고, 경영진에게는 주주들의 부를 극대화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²⁶⁾ 이는 또한 자본공급자로서의 주주가 투하되는 자본 비율에 따라 완전한 지배를 하고 있는 실질적인 소유자를 의미하는 주주소유권주의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주주중심주의는 회사와 이해관계인과의 계약관계에 따라 주주의 본질이 위치하고 있고, 주주는 고정급여를 제외하고 잔여재산분배청구계약을 체결하게 됨으로써 주주만이 남아있는 위험을 부담하게 되는 것으로 회사의 목적은 주주이익의 극대화에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주주들이 회사의 경영상태를 정확히 파악한다는 것은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주식회사의 경우 더욱 어려울 것이고, 규모가 큰 회사일수록 그러한 현상은 더욱 더 심해지며, 상근이사가 아닌 비상 이사로 회사의 경영상태를 확실히 알기 어려운 현실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경영진을 주주의 재산관리인(trustee)으로 보는 대리인 이론에 의하면, 기업의 소유와 경영이 분리될 경우 또는 경영진의 소유기업에 관한 지분비율이 낮은 경우에는 주주의 목표와 경영진의 목표가 상충되므로 대리인 문제(agency problem)가 발생하게 된다고 한다. 그러한 이론에서는 그 이유에 대해서 주주는 기업가치나 주가를 극대화하려 할 것이고, 경영진은 대부분 매출액과 회사성장의 극대화라는 목표를 가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여기에서 제시한 이론에서는 생산요소의

26) Frank H. Easterbrook & Daniel R. Fischel. “The Economic Structure of Corporate Law”, Harvard University Press, 1996; 서완석, “기업지배구조론에 관한 서설적 고찰”, 「기업법연구」 제27권 제4호, 201, pp.122.

소유자인 주주와 그것을 경영하는 경영진은 계약관계에 속할 수밖에 없으며, 주주는 경영진이 수행하는 회사업무의 적정성 등을 감독하고 감시하는 시스템을 필요로 하게 되었고, 이러한 시스템은 주주가 경영진의 행위를 감독하고 감시하는 데 들어가는 간접비용인 감시비용(monitoring cost)을 발생하게 하는 것이라고 결론을 맺는다. 그리고 회사의 규모가 커질수록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진 대리인을 찾는 현상은 더욱 뚜렷해지고, 더욱이 지배주주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이익극대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소수의 주주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할 수 있으며, 감사제도는 회사 내부 또는 외부인원의 모니터링을 통해 회사의 부당거래 발생을 억제하는 기능을 하게 함으로써 소수주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게 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는 설명이다.²⁷⁾

(2) 채권자의 이익보호

감사제도의 가장 이상적인 취지는 위법사항의 적발 또는 그 시정 뿐만 아니라 건전한 회사의 운영과 발전을 도모하여 주주, 채권자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의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이익을 보호하는 데 있다. 그리고 감사기능의 가장 이상적인 것은 예방기능이며, 내부적인 권고·조정 및 이사와의 협의 등을 통해 회사 내부의 통제기능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작동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위법행위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감사제도의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경영부실 등의 이유로 회사가 폐업하는 경우에 주주들은 유한책임의 원칙에 따라 회사로부터 받는 배당 등을 포함하여 그가 투자한 것을 포기하는 것만으로 그 이상의 다른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으나, 채권자는 회사와 협상을 통해 권리의무를 정하는 동등한 계약을 하게 되므로 주주보다 우선하여 만기가 도래한 채권에 대해서는 회사재산으로부터 변제를 받을 권리를 갖지만, 그 이외의 다른 재산에 대해서는 청구권이나 어떤 이해관계도 갖지 못한다. 따라서 채권자는 주주와 달리 회사의 실적이 개선되어 이익이 증대되더라도 그 이익에 대하여 배당을 받지 못하는 대신, 이자만을 받게 되기에 회

27) *ibid.*

사채산만이 유일한 담보가 되기 때문에 채권과 관련된 위험이 증가되는 경영전략 등에 대해서는 민감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채권자는 그러한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제거할 수 있는 감사제도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채권자는 현실적으로 회사 밖에 존재하는 이해관계자이기 때문에 회사의 경영상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도 없다. 오늘날과 같이 자금조달시장이 잘 발달한 상황에서 일반 투자자들은 주식뿐만 아니라 회사채를 매입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에 대한 채권투자자에 대한 보호도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어지고 있다.²⁸⁾ 그러므로 감사제도는 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며, 분식회계 등과 같은 부정행위를 감시하여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주주뿐만 아니라 회사채권자 또한 보호해야 하는 목적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게 되는 것이다.

(3) 기타 이해관계자의 이익보호

미국이나 영국의 기업경영진은 주주중심주의, 즉 주주이익의 극대화에 노력하고 있지만, 독일의 경영진은 기업의 생존과 장기적인 발전을 중시한다. 따라서 독일의 경우에 주주 뿐만 아니라 종업원, 거래처, 고객 등 일반 대중의 이익도 중시하는 이해관계자주의를 따르고 있다(주주채권론). 이러한 이해관계자주의에 의하면, 감사제도는 주주 및 채권자의 이익 뿐만 아니라 종업원 등과 같은 기타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보호해야 할 목적도 가지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²⁹⁾

경영진의 폐쇄되고 불확실한 기업경영으로 인해 회사가 파산을 하게 되면, 종업원은 물론이거니와 고객, 거래처, 협력하고 있는 기업 등에도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다. 따라서 감사제도는 기업경영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유도함으로써 종업원들에게는 실직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켜 주고, 고객 및 거래처 등에 대해서는 그 기대이익을 보호해주게 되는 것이다.

28) *ibid.*

29) 서성호, 「최신기업법강의」 무역경영사 2015년, 346이하 참조. 서완석,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서설적고찰” 「기업법연구」 제27권 제4호, 2013, pp.121-159.

(4) 기업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적 이익보호

우리는 엔론이나 월드콤 사태를 통해 한 기업이 파산하게 되고 더 나아가 국가적 파장으로 변해 한 나라의 경제를 위태롭게 만들어 놓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똑똑히 보았고, 1998년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게 되면서 직접 경험해 본 바도 있다. 특히, 엔론은 미국의 포춘(fortune)지에 의해 1996년부터 2001년까지 전례 없이 미국에서 가장 혁신적인 기업으로 선정되었고, 비즈니스위크(businessweek)지에서는 올해의 에너지 기업으로 선정한 일도 있었다. 그러나 엔론은 외부에서 보는 시각과 달리 실제로는 2000년도에는 약 10억 달러에 달하는 이익을 부풀리는 분식회계를 저지르는 등 내부적으로 완전히 부패한 기업이었다. 엔론의 최고경영자인 레이는 회사의 도산가능성관련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본인의 보유주식을 매도하고, 외부적으로는 종업원들에게 자사주 구매를 장려하기도 했으며, 회사 임원들의 충고는 무시하고 의사결정을 독단적으로 하는 것을 일삼았고, 회사사정이 악화된 사실 또한 감추었다. 결국 엔론의 발행채권은 시장의 신뢰를 잃어 정크본드(junk bond)³⁰⁾로 전락하였고, 분식회계로 인해 회사에 대한 불신감은 연관된 다른 기업들의 회계자료에 대한 불신으로 확대되어, 결국 미국 주식시장 뿐만 아니라 글로벌 금융경제시장에도 파장을 크게 일으켰다.³¹⁾ 엔론과 비슷한 사태가 한국에서도 있었는데 바로 ‘대우사태’³²⁾가 그러하다.

대우그룹의 주요회사들이 경영의 부실로 어려움을 겪게 되자 이와 관련된 채권은행들은 동반 부실화되고 그에 따라 많은 회사 종업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었다. 이를 통해 본 것은 한 기업의 파산이 주식시장에서 얼마나 큰 파장을 불러 일으키는지에 대해 경각심을 느끼게 하였고, 결국 개인 및 기관투자자의 손실은 고용축소로 이어졌고 그로 인한 소비위축은 다시 생산시장을 위축시키는 악순환을 낳게 된다는 것이었다. 채권은행들이 파산하는 경우에는 예금자들의 금융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고, 장기적으로

30) 고수익 채권(high-yield bond), 열등채(low quality bond)이라고도 하며, 기업의 신용도가 매우 낮아 회사채 발행이 거의 불가능한 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로 높은 이자율과 높은 위험을 특징으로 한다. 세계적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Moody’s)는 신용등급이 Ba1 이하, S&P(Standard & Poor’s)는 BB+ 이하인 경우에 정크본드로 분류한다.

31) Daum백과사전, “엔론 사태란 무엇인가?”(http://100.daum.net/ency_clopedia/print/92xx35800560).

32) Naver지식백과, “대우사태”(<http://terms.naver.com>).

로는 잉여자금의 저축성자산을 건전한 기업여신으로 이어주는 금융시장의 금융중개기능 자체를 마비시킬 수도 있다. 1997년말 한국 외환위기는 종합금융사의 유동성 위기에서부터 시작되었지만 외환지급불능 상태로까지 발전하게 되었고, 수많은 기업의 도산이 결국은 6개 은행의 퇴출로 이어지게 되어 한국의 금융시장과 관련기관들이 극심한 혼란을 야기한 사실이 그러하다.

그러므로 감사제도는 내부고발자(whistle-blower)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등 기업부패를 막는 기능을 수행함과 동시에 경영진이 건전한 경영을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기업가치를 높이는 데 일조할 수 있고, 나아가 도덕과 원칙이 중시될 수 있는 기업환경을 조성하여 내실화된 기업을 만들 수 있으며, 위험한 투자와 불투명한 거래의 관행이 지속될 경우 제동을 걸어주는 견제장치로도 기능할 수 있다. 또한 회사 경영진의 이해상충에 따른 도덕적 헤이현상이 심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경영의 부실에 따른 경영진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제도적인 안전장치를 통하여 심리적 압박을 가함으로써 경영진에게 사전에 부실경영을 막을 수 있는 기능을 하기도 한다는 점 등에서 제도적 의의와 가치를 찾을 수 있는 것이다.

2) 감사의 선임과 해임

(1) 감사의 선임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된다(상법 제409조 제1항). 이것은 주주총회의 전속권한사항이다. 감사의 선임방법은 보통결의에 의하여 선임되고 대주주의 의결권의 행사가 제한되는데, 비상장회사의 경우에는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하고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감사의 선임에서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며, 정관으로도 그 의결권행사 비율을 낮출 수는 있으나 높일 수는 없다(상법 제409조 제2항 내지 제3항). 이는 대주주의 독주를 방지하고 감사의 선임에서 소수주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또한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최대주주와 그의 특수 관계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합계가 상장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

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정관에서 이보다 낮은 주식보유비율을 정할 수는 있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감사 선임의 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상법 제542조의12 제3항).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상장회사가 감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을 상정하려는 경우에는 회사임원 등의 선임을 위한 의안과는 상정을 별도로 하여 의결하도록 되어 있다(상법 제542조의12 제5항).

한편, 주주총회에서 감사의 선임결의가 있음으로 인해 바로 피선임자가 감사의 지위를 취득하게 되지는 아니하고, 주주총회의 선임결의 결과에 따라서 회사의 대표기관이 선임결의로 인해 선임된 감사에 대하여 임용계약의 청약을 한 후 피선임자가 이에 승낙을 함으로써 위임계약이 체결되어 이때부터 감사의 지위를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 그리고 감사의 선임이 끝나면 그 성명 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여 임원변경등기를 2주간 내에 본점 소재지 등 기소에서 해야 한다(상법 제317조 제2항 제8호).

또한, 감독기관의 성질에 따른 상법상 제한이 있는데, 감사는 당해 회사 및 자회사의 이사·지배인 기타 사용인의 직무를 겸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상법 제411조). 이는 감사하는 자와 감사를 받는 자가 동일인이 된다면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제한을 둔 것이다. 그러나 모회사의 감사나 이사 등이 자회사의 감사를 겸하는 경우는 무방하다. 그리고 상장회사 상근감사의 결격사유에 대해서는 상법상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데, 상근감사가 그러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상법 제542조의10).

감사의 인원수에 대해서는 이사와 달리 제한이 없으므로 1인으로 족하지만, 회사의 임의대로 2인 이상의 감사를 둘 수 있음은 물론이다. 상법은 감사에 대해서는 다수결을 전제로 하는 회의체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이사회와 달리 상법상 구속력 있는 회의체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상장회사로서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1,000억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반드시 1인 이상의 상근감사를 두어야 한다(상법 제542조의10 제1항).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에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의 종결시까지

지로 한다.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한다고 하더라도 위 3년의 임기를 단축할 수는 없다(상법 제410조).

감사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이사의 보수와 같이 정관으로 정하거나 주주총회에서 정하여야 한다. 흔히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보수를 총액으로 정하고 각 임원별 보수액은 이사회에 결정에 위임하는데, 감사의 보수를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그리고 상장회사의 경우 주주총회의 목적사항 중 감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을 상정하려는 경우, 이사의 보수결정 의안과는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도록 정하고 있다(상법 제542조의12 제5항).

그러나 위와는 달리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소규모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감사의 선임이 의무적이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감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러할 경우에는 감사의 업무를 주주총회가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상법 제409조 제6항). 이점, 2009년 5월 28일 상법 일부개정법률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³³⁾

(2) 감사의 해임

상법상 감사의 해임사유는 이사의 그것과 같다. 그러므로 임기만료와 위임의 종료사유로 종임하는 것이지만, 주주총회에서 감사를 해임결의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감사는 그의 해임의 부당성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상법 제409조의2). 이는 감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그 지위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에서 그리 정한 것이다. 그리고 상장회사의 경우 그 최대주주 및 그의 특수 관계인,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상장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소유할 경우 그 합계가 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감사 해임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상법 제542조의12 제3항). 그러나 비상장회사의 경우에는 그러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는다. 그리고 회사가 해산하는 경우에도 청산회사의 감사는 여전히 필요하므로 해산은 원칙적으로 감사의 종임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감사의 종임도 등

33) 서성호, “소규모주식회사의 감사제도에 관한 비판적 고찰” 기업법연구(제28권 제4호) 한국기업법학회, 2014, pp.255이하 참조.

기사항이므로 그 사실이 발생되면 변경등기를 해야 한다(상법 제317조 제2항 제8호).

3) 감사의 권한

(1) 업무 및 회계감사권

감사는 이사(대표이사 포함)와 집행임원의 직무집행을 감사할 권한을 갖는다(상법 제412조 제1항). 이는 감사가 회계감사업무를 포함하여 업무집행 전반을 감사할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감사의 업무감사권 범위에 관해서는 위법성감사에 한하는지, 타당성감사를 포함하는지에 관해 학설은 이하에서와 같이 대립되고 있다. 즉, ① 원칙적으로 위법성감사에 한하는데, 상법에 명문의 규정(상법 제413조, 제447조의4 제2항)이 있는 경우에는 타당성감사에도 미친다는 견해,³⁴⁾ ② 원칙적으로 위법성감사에 한하며 예외적으로 타당성감사에도 미치는 경우에는 상법의 명문규정 뿐만 아니라 이사의 업무집행에 현저하게 타당성을 결하는 경우 등에 한하여 영향을 미친다는 견해,³⁵⁾ ③ 이사회에 의한 위법성감사에 공정을 기대할 수 없고 또한 위법성과 타당성은 명확히 구별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법성감사 뿐만 아니라 타당성감사에도 미친다는 견해³⁶⁾로 대립되고 있다. 생각하건대 감사의 권한을 포괄적인 것으로 파악하게 되면 ③의 견해가 타당할 것으로 생각한다.

(2) 그 밖의 권한

상술한 감사의 권한 외에도 감사의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는 이사에 대한 보고요구와 조사권, 자회사에 대한 보고요구와 조사권, 이사회출석과 의견진술, 이사와 집행임원의 위법행위 유지청구권, 이사와 회사 간의 소송에 있어

34) 이철송, 「회사법강의(11판)」박영사(2004년) pp.654, 정동윤, 「회사법(제7판)」법문사(2001년) pp.479, 정찬형, 「제8판·상법강의(상)」박영사(2005년) pp.890, 등 다수.

35) 정희철, 「상법학(상)」박영사(1989년) pp.506.

36) 최기원, 「14대정판·상법학신론(상)」박영사(2003년) pp.940, 이기수·유진희·이동승, 「회사법」박영사(2002년) pp.415.

서의 회사대표권,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청구권, 이사회 소집청구권, 전문가의 도움청구권, 각종의 소권 등이 법제되어 있다.

4) 감사의 책임

감사가 그 임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회사에 대하여 민법상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기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물론이고, 제3자에 대해서도 불법행위에 기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상법 제414조 제1항 및 제2항).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회사에 대한 책임

감사와 회사 간의 관계는 위임관계이므로 감사가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감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상법 제414조 제1항). 여기서 임무해태라 함은 감사의 직무수행에 있어서 위임관계에 따른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감사의 책임은 주주총회의 특수결의로 면제 또는 경감될 수 있고, 또한 책임을 추궁하기 위하여 소수주주(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는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은 이사의 경우와 같다.

그리고 비상임감사이거나 명의만 빌려 준 명목상 감사라 할지라도 위의 책임을 면할 수는 없고, 이사의 책임추궁의 경우에 있어서 이사가 주장할 수 있는 경영판단의 원칙은 감사의 책임추궁에 있어서는 적용될 여지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2) 제3자에 대한 책임

감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이사의 경우와 같다고 할 수 있겠는데(상법 제414조 제2항), 이는 감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하고 그로 인해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이 경우에 감사는 제3자에 대하여 직접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

이다. 이러한 감사의 책임은 상근감사든 비상근감사든 동일하고, 회사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이사나 집행임원이 부담할 때에 감사도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사는 이사 및 집행임원과 연대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상법 제414조 제3항, 제408조의8 제3항).

5) 감사위원회

(1) 감사위원회의 구성

상법상 감사위원회의 설치는 원칙적으로 임의적 사항이다. 회사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감사에 갈음하여 상법 제39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 내의 위원회의 하나로서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하였다. 이처럼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에는 별도의 감사를 둘 수 없다(상법 제415조의2 제1항).

감사위원회는 다른 위원회가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되는 데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되어야 하고, 그 중 사외이사는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상법 제415조의2 제2항).

(2) 감사위원의 선임

감사위원회의 위원은 이사회의 보통결의로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상법 제415조의2 제1항, 제393조의2 제3항). 그러나 주권상장회사로서 감사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되는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회사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을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 경우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상법 제542조의12 제1항 내지 제2항).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할 때는 발행주식 총수(의결권 없는 주식 제외)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상법 제542조의12 제4항). 그리고 주권상장회사가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할 때에는 최대주주, 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가지고 있는 상장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총수가 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 없는 주식 제외)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상법 제542조의12 제3항).

한편, 주권상장회사로서 감사위원회 설치대상이 아닌 회사, 예컨대 자산총액 2조원이하인 회사의 경우는 이사회에서 감사위원을 선임(상법 제393조의2 제2항)하는 것이 아니라 상장회사 특례규정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선임하여야 한다(상법 제542조의 10 제1항, 제542조의12 제1항).

그리고 감사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해서는 상법상 특별한 규정이 없다. 따라서 그에 대한 정관의 규정이 있으면 그에 의할 것이나, 만약 정관의 규정이 없으면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가 이를 정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총회도 이를 정하지 아니하면 이사 지위와 감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도 함께 종료하는 것으로 본다.

또한 회사합병의 경우에도 합병 이전에 취임한 감사위원회 위원의 합병계약서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합병 이후 처음으로 다가오는 결산기의 정기총회 종료일에 퇴임한다(상법 제415조의2 제7항, 제527조의4).

(3) 감사위원의 해임

이사회에서 선임된 감사위원회 위원의 해임에 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총수의 3분의 2이상이 결의 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상법 제415조의2 제3항). 이는 선임과는 달리 해임의 요건을 엄격하게 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한 것이다. 그러나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감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관계로 감사위원회 위원에 대한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이 주주총회에 있다(상법 제542조의12 제1항). 그리고 감사위원회 위원의 해임에 관하여는 별도의 특별규정이 없으므로 이사의 해임의 경우와 같이 특별결의에 의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사외이사가 아닌 (상근)감사위원회의 위원을 해임할 때에는 상장회사에서 감사의 해임과 동일하게 최대주주 등의 의결권이 제한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상법 제542조의12 제3항, 상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4) 감사위원회의 권한

회사가 감사위원회제도를 채택하는 경우 감사는 둘 수가 없고, 감사가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은 감사위원회가 이를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갈음하여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사할 권한을 갖는다(상법 제412조 제1항, 제415조의2 제7항). 이 규정은 감사위원회가 회계감사를 포함하여 업무집행의 전반을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그 밖에 권한으로 감사위원회는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보고에 대한 요구를 하거나 회사의 업무 및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상법 제412조 제2항, 제415조의2 제7항). 모회사의 감사위원회는 자회사에 대한 감사권을 가지며(상법 제412조의4, 제415조의2 제7항),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감사위원회에 즉시 이를 보고 하도록 되어 있다(상법 제412조의2, 제415조의2 제7항). 그리고 감사위원회의 조사권을 효율적으로 행사하기 위하여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도 있고(상법 제412조 제3항, 제415조의2 제7항), 또한 자격주의 공탁(상법 제387조, 제415조의2 제7항),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감사의 보고권(상법 제391조의2 제2항) 및 유지청구권(상법 제402조),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청구권(상법 제412조의3), 이사와 회사 간의 소송에 있어서의 회사대표권(상법 제394조) 등의 권한이 있다.

(5) 감사위원회의 책임

감사위원회 위원과 회사와의 관계는 위임관계에 있으므로 감사위원회 위원이 수임인으로서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연대하여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상법 제382조 제2항, 제414조 제1항, 제415조의2 제7항). 이 경우에 감사위원회 위원이 악의나 중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상법 제414조 제2항, 제415조의2 제7항). 또한 감사위원회 위원이 회사나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이사 또는 집행임원도 그 책임이 있는 때에는 감사위원회 위원과 이사 또는 집행임원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진다(상법

제414조 제3항, 제408조의8 제3항, 제415조의2 제7항). 그리고 감사위원회 위원의 회사에 대한 책임면제 및 경감의 요건과 책임추궁을 위한 소수주주에 의해 제기되는 대표소송에 관하여는 이사의 경우와 같다(상법 제400조, 제403조 내지 제406조, 제415조의2 제7항).

그 밖에도 회사합병 시의 감사의 임기(상법 제527조의4, 제415조의2 제7항), 분할계획서상의 감사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기재(상법 제530조의5 제1항 제9호, 제415조의2 제7항), 분할합병계약서상의 감사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기재(상법 제530조의6 제1항 제10호, 제415조의2 제7항), 대차대조표·사무보고서·부속명세서의 감사(상법 제534조, 제415조의2 제7항) 등에 관한 규정은 모두 감사위원회에 준용된다.

6) 외부감사인

(1) 외부감사인의 선임과 해임

① 외부감사인의 선임

외부감사인의 자격은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회에 등록된 감사반으로 한정된다(외감법 제3조 제1항). 감사의 대상인 회사와 이해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자는 감사인이 될 수 없다(외감법 제3조 제3항). 그리고 회계법인인 감사인은 동일한 이사로 하여금 회사의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4개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업무를 행하게 할 수 없다(외감법 제3조 제4항).

감사인은 때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월 이내에 선임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의 감사인은 동일하여야 한다(외감법 제4조 제1항). 그리고 회사의 감사인 선임은 감사 또는 전문성과 독립성이 확보된 감사인 선임위원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있다(외감법 제4조 제2항). 이와 같이 감사인을 선임한 때에는 그를 선임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총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외감법 제4조 제3항). 주권상장법인은 감사인 선임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지만(외감법 제4조 제2항 단서),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가 직전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다시 감사인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때에는 감

사 또는 감사인 선임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않을 수 있다(외감법 제4조 제6항).

한편,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요청한 경우에 당해 회사의 감사인을 지명하거나 기간 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3개 사업연도 범위 안에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명하는 자를 감사인으로 변경선임 또는 선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외감법 제4조의3 제1항). 증권선물위원회의 이러한 요구에 대하여 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외감법 제4조의3 제2항). 그러나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인 선임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감사인을 선임한 회사에 대해서는 감사인을 변경선임하거나 선정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외감법 제4조의3 제3항). 그리고 회사는 감사인을 선임하거나 변경선임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외감법 제4조의4).

② 외부감사인의 해임

외부감사인은 임기만료 또는 기타 외부감사인 선임계약에서 정한 종임사유로 인하여 종임할 수 있다. 그리고 회사는 직전 사업연도에 당해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를 행한 감사인 외에 다른 감사인을 선임하거나 감사인 해임의 경우에는 감사 또는 감사인 선임위원회에서 전기 감사인 및 해임되는 감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외감법 제4조의2 제2항, 제4조의5 제1항). 회사는 해임되는 감사인이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외감법 제4조의5 제2항).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선임한 때에는 감사인의 보수 및 감사시간에 관하여 미리 감사 또는 감사인 선임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해야 한다(외감법 제4조 제7항).

(2) 외부감사인의 권한과 책임

① 외부감사인의 권한

감사인의 주된 권한은 경영자가 제출한 그 사업연도의 재무제표 또는 연결 재무제표를 감사하는 것이다(외감법 제7조). 그리고 감사인은 일반적으로 공

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외감법 제5조 제1항). 이러한 회계감사기준은 재무제표의 신뢰성 유지와 감사인의 독립성 유지에 필요한 사항 등이며, 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정하되,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외감법 제5조 제2항).

감사인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언제든지 회사 및 관계회사의 회계장부열람권, 회계자료 제출요구권, 업무와 재산상태조사권 등을 갖는다(외감법 제6조 제1항). 연결재무제표를 감사하는 감사인은 그 직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회사 또는 관계회사의 감사인에게 감사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때 회사 또는 관계회사의 감사인은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외감법 제6조 제2항).

② 외부감사인의 책임

외감법 제17조에 따라 감사인이 그 임무를 게을리 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감사반인 감사인의 경우에는 해당 회사에 대한 감사에 참여한 공인회계사에게도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주어진다(외감법 제17조 제1항). 그리고 감사인이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기재로 인해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 감사인은 제3자에게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외감법 제17조 제2항).

감사인이 손해배상책임을 저야 할 경우, 감사대상회사의 이사와 감사도 그 책임이 있는 때에는 감사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외감법 제17조 제4항). 감사인, 이사, 감사의 책임은 청구권자가 당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또는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년 내에 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다만, 이 기간은 외부감사인 선임계약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외감법 제17조 제9항).

이 밖에 감사인, 기타 감사업무와 관련된 자의 부정 및 의무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엄격한 벌칙이 정하여져 있다(외감법 제19조 내지 제21조). 또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으로 칭함)에 의하면 감사

인이 선의의 투자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책임이 있는 감사인, 이사 및 감사 모두가 연대책임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자본시장법 제 170조 제1항).

3. 회계감사의 의의 및 환경변화

1) 일반적인 회계감사의 정의

감사 실무에서 감사란 기본적으로 조사적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바, 감사의 핵심은 증거를 객관적으로 수집하고 평가하는 데 있다. 따라서 과학적 방법론에 입각하여 감사의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각종 증거를 수집 및 평가하는 총괄적인 기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체계적 과정을 중시한다. 그러므로 일반적인 경제 및 회계 등을 포함한 모든 경제활동이 감사의 대상이 된다.

미국회계학회(AAA)³⁷⁾의 기초적 감사 개념 보고서(ASOBAC)³⁸⁾에서 정의한 회계감사는 경제적 사건과 행위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미리 설정된 기준을 얼마만큼 따르고 있는가를 판단하기 위하여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고 평가하며, 그 결과를 이해관계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으로 정의하고 있다.³⁹⁾ 즉, 감사란 경제적 활동 및 여러 사상에 관한 어떠한 주장에 대해 이미 설정된 평가기준과의 일치하는 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 두가지에 대한 증거를 객관적으로 수집 및 평가하며, 그 결과를 이용자들에게 전달하는 체계적인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 정의를 근거로 감사의 개념을 몇 개의 주요한 용어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객관적인 증거의 수집과 평가란 감사하는 단계별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절차이며, 시간 및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 따라서 감사 목적을 충족시킬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감사의 성공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 감사증거란 감사대상이 되는 어떤 정보가 평가기준에 일치하도록

37) American Accounting Association

38) A Statement of Basic Auditing Concepts

39) Simunic, D. *ibid*, pp.161-190.

표시되고 있는가를 결정하는 데 이용되는 모든 자료와 정보를 말한다.

둘째, 감사가 성립하려면 검증이 가능한 여러 형태의 정보가 감사대상으로 직접 존재해야 하고, 감사인이 이러한 정보를 사전에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 기준이 미리 설정되어 있어야 한다. 검증 가능한 정보는 계량화 및 표준화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기업 재무제표, 법인세신고서, 작업시간 또는 생산량보고서 등 여러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대상정보와 미리 설정된 평가기준의 개념을 살펴보면, 경영자들의 주장들을 판단해 볼 수 있는 기준을 말하는데 즉,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GAAP)으로서 기준서, 특정 관련법규 및 각종 세법들의 규정, 그리고 업무감사의 경우 각종 지침과 업무처리규정, 그리고 예산 등을 말한다.

셋째, 자질을 갖춘 독립적인 제3자인 감사인은 미리 설정된 평가기준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결론에 도달하기 위한 충분한 증거의 수집능력 및 증거의 종류와 양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자질 및 능력을 갖추었다더라도 증거에 대한 평가 과정에서 잘못된 편견을 갖지 않아야 하며, 또한 정신적 및 외관상의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만 한다.

넷째, 감사가 완료된 후에 하게 되는 감사결과의 보고는 감사인이 이해관계가 있는 정보이용자에게 감사결과를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감사보고서는 감사의 대상과 목적에 따라 그 성격에 많은 차이가 있으므로, 기본적으로 검증대상이 되는 정보와 평가기준이 상호 일치할 수 있도록 그 여부를 명시적으로 알려 주는 내용이 포함된다.

이러한 일반적인 감사의 정의와 관련하여 한국 “회계감사기준⁴⁰⁾” 200 문단 3에서는 감사의 목적은 의도된 재무제표 이용자의 신뢰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고 한다. 이러한 감사의 목적은 재무제표가 중요성의 관점에서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작성되었는지에 관해 감사인이 의견을 표명함으로써 달성된다. 대부분의 일반적인 목적체계에서 감사의견은 재무제표가 동 체계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되어 있는지의 여부, 또는 진실하고 공정한 관점을 제시하는지의 여부에 관한 것을 표명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

40)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감사기준」, 2012.12.(금융위원회 승인)

2) 회계감사의 목적

회계의 기본적인 목적은 정보이용자가 투자 및 채무 등에 관한 경제적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용자에게 편의(bias)가 존재하거나 잘못된 정보가 제공될 때 이용자는 잘못된 의사결정을 하게되어 손해를 입게 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과정에서 정보위험이라는 문제가 대두된다. 정보위험이란 어떤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하였을 때 이로 인해 이용자가 손해를 입게 될 위험을 일컫는다. 정보위험은 이와 같이 정확하지 않거나 오류가 포함된 재무제표를 정보이용자에게 검증 없이 제공하였을 때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⁴¹⁾ 따라서 그러한 회계정보에 독립적인 제3자에게 신뢰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게 되는 것이다.⁴²⁾

미국회계학회(AAA)의 기초적 감사 개념 보고서(ASOBAC)에서는 독립된 감사인에 의한 재무제표감사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⁴³⁾

첫째, 이해관계자 간의 이해의 대립 : 정보의 제공자와 이용자 사이에 이해가 대립되어 있거나 잠재적인 대립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보이용자는 그들에게 제공되는 정보에 편의가 개입되어 있는지에 대해 관심을 갖는다. 그리하여 가장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제3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감사인을 필요로 하게 되기 때문에 제3자에 의한 회계감사기능이 필요하게 되어지는 것이다.

둘째, 회계정보의 복잡성 : 회계제도의 복잡성때문에 전달되는 정보 또한 복잡해지게 된다. 그리하여 정보이용자가 제공받게 되는 정보의 질에 대하여 확신을 갖기 어려울 수 있으며, 또한 그 정보의 진위 여부를 평가할 만한 전문지식도 없다. 따라서 정보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감사전문가의 의견을 신뢰할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사회가 복잡해질수록 회계감사의 기능이 더욱 필요하게 되므로 감사인의 존재가 더욱 중요하게 되는 것이다.

셋째, 회계정보의 중요성 증대 : 재무제표는 투자 및 경제적 의사결정을 위

41) 김정란, “우리나라 회계감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조선대학교, 2001, pp.10.

42) 신현걸·최창규·김현식, 「IFRS 중급회계」 탐진(2009), pp.8.

43) AAA, American Accounting Association, 1973.

한 유용한 정보이며 또한 중요한 정보로 인식되고 있다. 어떤 정보가 의사결정의 중요한 자료로 이용될 경우에 정보이용자는 그 정보에 오류나 편이가 존재하지는 않는지, 목적에 적합한지 또한 정보가 완전한 것인지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된다.

그러므로 회계감사 기능이 더욱 필요하게 되며, 감사인은 이러한 정보이용자의 요구에 대하여 전문가적 전문성을 가지고 접근하여야 하고 또한 그 기대에 부응하여야 할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

넷째, 이해관계자와 정보원 간의 원격성 : 회계정보이용자와 제공되는 회계정보 사이에 나타나는 시·공간의 제약으로 인한 원격성으로 인해 정보이용자들은 제공받게 되는 정보의 질을 직접 평가하지 못하게 된다. 이에 정보이용자들은 회계감사 기능이 필요하다고 보아 감사인의 존재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현대사회에서는 이해관계자와의 대립, 정보제공자의 잘못된 편의, 자료의 대량화와 복잡성 및 정보의 원격성 등에 대한 요소들의 상호작용 때문에 정보위험이 더욱 높아만 가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고, 또한 이러한 정보가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므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독립적인 제3자의 도움을 받아 이용하고자 하는 정보의 질과 신뢰성을 사전에 확인받을 필요가 있게 된다. 이 때문에 감사기능 및 그 결과에 대한 인증기능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며, 한편으로 감사는 곧 기업이 제공하는 정보에 대한 신뢰성 제고의 필요에서 기인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3) 회계투명성을 위한 감사의 중요성

회계투명성이란 “회계정보이용자들에게 질적 속성이 높은 회계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회계투명성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는 좁게는 기업의 회계투명성 증대방안에 관한 연구들이 있으며, 넓게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회계투명성 평가와 관련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회계투명성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는 다양한 기관에서 정의하고 있으나, 평가방법에 따라서 다르게 정의되고 있다.⁴⁴⁾

IMF는 시장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회계투명성과 수탁책임완수가 모두 확보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데, 여기서 투명성이란 현재 상태, 행위, 의사결정 등에 대한 정보에 접근 및 정보를 이해할 수 있게 만드는 과정을 의미한다. 즉, 투명성이란 기업의 공시측면을 강조하고 있으며, 공시하게 되는 정보는 감사와 통제, 완전공시, 일관성, 적시성, 위험관리 등의 속성을 충족해야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외에도 회계투명성에 대한 학문적인 정의는 이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사용하는 대리변수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⁴⁵⁾

국가의 회계투명성은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평가기관에 따라 국가경쟁력에 대한 정의가 다양하고, 그 평가하는 방법과 평가항목도 다양하다. 국가 경쟁력이란 일반적으로 기업이 다른 나라의 기업들과 전 세계시장에서 경쟁하게 될 때 효율적인 사회구조, 제도와 정책을 제공함으로써 우위를 선점할 수 있게 하는 국가의 총체적인 능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따라서 몇 개의 평가지표로만 계량화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는데, 특히 회계관련 지표들을 살펴보면, 기업경영과 관련된 여러 분야의 하위지표로 평가된다. 그리고 계량적인 지표보다는 비계량적 지표로 측정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예를 들면, IMD(국제경영개발원)의 회계 및 감사분야에 대한 평가는 기업효율분야의 경영행태부문에서 1개의 설문항목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WEF(세계경제포럼) 역시 회계 및 감사부분을 평가하는 항목은 기본요인 중 제도부문의 하위항목을 포함시키고 있다.⁴⁶⁾

최근 우리나라에 대한 국가경쟁력 평가기관들의 평가는 점차 긍정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나 여전히 낮은 편에 속한다. 이는 주요 경쟁국들과 대등한 제도 및 정책에도 불구하고 회계투명성에 대한 낮은 평가로 인한 대내·외적인 인식이 부족한 데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2016년 한국 국가경쟁력은 2015년에 비해 4단계나 낮은 29위로 평가되었다.⁴⁷⁾ 이와 관련하여 회계투명성 지표도 여전히 낮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구체적으로 IMD발표에 의하면, 59국 중에 한국의 국가경쟁력은 22위로 나타났으나 회계투명성은 41위에

44) 정문중, “회계투명성의개선 : 감사 및 감리를 중심으로” 「회계저널」 제13권 제2호, 2004, pp.55-88.

45) 정문중, 전제논문 pp.55-88.

46) 정문중, 전제논문 pp.55-88.

47) 스위스 경영대학원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에서 매년 국가경쟁력 순위를 발표하고 있다.

그치고 있다. WEF에 의하면, 144개국 중 한국의 국가경쟁력은 19위로 높게 나왔으나 오히려 회계투명성은 75위로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회계투명성의 확보가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⁴⁸⁾

IMF 외환위기 이후 정부, 기업, 회계 관련 단체들은 우리나라의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해 국제회계기준의 수용을 추진하는 등 회계제도에 대한 개선을 위해 다양하게 노력하여 왔다. 이러한 노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줄여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 있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경제규모가 커지고 사회가 다변화되면서 정부와 민간기업들 상호간에 사회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할 수 없게 되었고, 그 부족분을 일정부분 민간 비영리법인이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향후 이러한 역할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일환으로 비영리법인의 역할증대와 함께 관련된 법규들도 점차적으로 개정의 노력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특히 회계관련 규정들이 정비되고 있음이 여실히하다.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관련된 법률 및 규칙은 민법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근간으로 사립학교법, 사회복지사업법, 의료법 등의 특별법이 있는데, 그 중 민법은 학술,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가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 또는 사단에 대해 규정하면서도 그 내부조직 및 이해관계자의 보호에 대해서는 자치에 맡기고 있을 뿐이며, 그 이외의 특별법에서는 정책적 목적에 따른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비영리법인에 대한 높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비영리법인에 대한 통계적 자료는 열악한 상황임에 따라, 영리법인과 마찬가지로 비영리법인도 회계투명성이 확보되어야 근본적인 사회적 책임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파악하여,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해서는 회계투명성이 필수 사항이라는 점에서 논의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비영리법인에 대한 실상은 매우 부정적이다. 재정운영의 부실, 지배구조의 열악 및 불투명성으로 인한 신뢰성이 실추되고 있는 등 일부 비영리단체에서 행해지고 있는 취약점이 사회문제로 비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대책도 마련되고 있지 못한 실

48) 김용식, “K-IFRS시행에 따른 경영자와 감사인간의 의견불일치와 감사의견에 관한 연구” 「회계학연구」 제38권 제2호, 2013, pp.81-115.

정에 있다.

생각해보면, 다양한 공익적 활동을 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영리법인들의 회계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아 그에 따른 적절한 사회적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일부 비영리법인에서 벌어진 비리가 마치 전체적인 모습인 것으로 비추어지기도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투명성의 확보는 비영리법인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도 필수적 요소라 할 것이다. 따라서 국가경쟁력 및 사회전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는 외부감사대상이 아닌 공익법인,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도 회계투명성 제고방안이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회계투명성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는 영리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비영리기업에는 관심조차 주지 아니한 문제라 할 수 있다.

회사의 규모가 커질수록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 인해 이해관계 충돌의 우려가 높아지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는 서로 다른 이해관계의 조정을 위한 회계정보의 역할은 중요할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회계정보의 공정성과 객관성의 증대를 위해서 외감법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회사에 대해서 그와 무관한 독립된 외부감사인에 의해 회계감사를 받도록 강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 부채규모, 종업원수 등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주식회사는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를 포함)를 작성하여 그로부터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외감법 제2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외부감사인이 회계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회사가 제공한 회계정보의 객관성과 독립성을 판단하는 준거기준이 된다. 그런데 동 기준이 현재 채택하고 있는 원칙중심의 회계체계에서는 동일한 사안에 대해 경영자들간에 다양한 견해가 존재할 수도 있으며, 그에 따라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서로 다른 회계처리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 즉 다시 말하면, 경영진의 이익에 대한 조정 가능성이 증대되고 그에 따라 회계정보의 위험성도 그만큼 증가하였음을 의미한다. 이는 외부의 감사인 입장에서도 경영자의 이익조정 의도와 동시에 회계정보의 위험증가를 동시에 제한해야 하는 업무의 증가와 더불어 기업경영자의 재량권남용에 대한 제한기능이 필요하

게 되었음을 의미한다.⁴⁹⁾

따라서 회계감사 실무에서는 경영진과 외부감사인의 의견불일치가 더욱 많이 발생할 것이 예상되며, 경영진의 왜곡된 정보로 인해 부적절한 회계감사가 이루어져 감사위험이 증대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그 중에는 경영진이 자신의 의견에 따르지 않는 감사인을 교체하여 자신들의 의견을 관철하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는 결국 회계정보의 왜곡을 심화시켜 회계감사의 부실을 가져오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회계감사인의 독립성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고, 그와 동시에 경영자와 외부감사인의 책임을 합리적인 수준에서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만약 외부감사인이 기업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회계문제를 파악하지 못하고 고의 또는 과실이 존재하는 회계감사를 수행한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한 회사 및 제3자의 손해에 대해서는 감사인의 책임을 부정할 수는 없겠지만 감사실패의 위험은 항상 상존하는 것이라고 하여 감사실패의 위험을 모두 외부감사인에게만 묻게 된다면 이는 손해배상책임의 일반원리에 부합하지 않음은 물론이고, 보다 보수적인 회계감사업무가 진행될 수 밖에 없게 된다. 그렇게 되면 감사보수의 증가와 더불어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킬 우려가 있게 되고, 위험이 큰 회사의 경우에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회계감사를 못받게 되는 극단적인 결과마저 초래하게 될 수가 있다.⁵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불확실성과 추상성으로 인해 기업의 회계처리와 회계처리를 감사하는 외부감사인의 자율성은 대폭 증대되었다.⁵¹⁾ 그러한 주장에서는 그로 인해 회계감사인의 잘못된 판단으로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투자자의 책임추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고, 그러한 경우는 회계감사인의 고의적인 회계부정이나 착오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당연히 인정되어야 하겠지만, 기준의 한계나 경영자의 고의적인 회계부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와 달리 취급 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음에 동감하는 바이다.

49) 김용석, 전계논문 pp.85.

50) 김용석, 전계논문 pp.81-115.

51) 이수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기업법제 개선방안", 박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2014, pp.163.

4) 회계감사의 독립성

감사의 독립성이란 감사절차의 수행과 그에 대한 결과의 평가, 그리고 감사보고서 작성에 이르기까지 감사업무의 전반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객관적이고 정직한 마음을 잃지 않고 공정한 견해(unbiased viewpoint)를 유지할 수 있는 속성을 말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⁵²⁾

감사보고서 이용자들이 이를 신뢰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재무제표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감사인의 법률적인 책임은 물론, 재무보고에 대한 사회적 신망과 전문직업인으로서의 기본적인 책임을 완수하기 위한 감사인의 독립성은 윤리기준인 것이다. 따라서 감사인은 스스로가 감사인으로서의 판단이 다른사람에 의해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뿐만 아니라, 감사업무 수행시 독립성에 의문을 초래할 수 있는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와 관련된 감사에 관여해서는 안될 것이다.

감사인이 독립성을 사실상 유지하기 위해서는 끈은 마음으로부터 공정성을 잃지 말아야 하며, 또한 독립성을 유지되는 것으로 인식되기 위해 타인에 대한 이해관계로부터 독립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독립성을 유지한다는 의미는 사실상 정신적인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을 말하며, 독립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인식된다는 것은 외관상 독립성이 확보되는 것을 의미한다.⁵³⁾

정신적 독립성은 전문가적 판단을 손상시킬 수 있는 요인 등에 영향을 받지 않고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정신적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며, 개인으로 하여금 공정함을 유지하되 성실하게 행동하여 전문가적인 의구심을 발휘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어떠한 경우에도 외부로부터의 간섭이나 자기 주변의 이해관계자에 대하여 편견이 나오지 않게 하고, 진행하는 감사업무를 공정하고 진실되게 하였을 때 정신적 독립성이 유지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정신적 독립성은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이를 현실적으로 확인하거나 입증하기는 곤란한 면이 있다.⁵⁴⁾

외관상 독립성이란 합리적인 제3자가 모든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주변상황

52) 이효익, 전게서 pp.99.

53) 이효익, 전게서 pp.100.

54) 이효익, 전게서 pp.100.

을 고려하였을 때 회계법인 구성원의 성실, 공정 및 전문가적 의구심을 손상시킬 수 있도록 판단하게 만드는 중요한 사실이나 상황을 회피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다.⁵⁵⁾

그렇다면 결국 감사인의 독립성은 스스로 설정한 높은 수준의 자세에 의해 유지되는 것이고 제도적 규제나 사회적 압력에 의해 유지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5) IFRS 도입과 회계감사환경 변화

국제회계기준(IFRS: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은 주로 영국 등 유럽에서 사용 중인 회계기준에 대한 법으로, 기업의 회계 처리 및 재무제표에 대한 국제적 통일성을 높이기 위해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공표하는 회계기준이다. 자본시장의 세계화 추세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단일기준에 의해 작성된 신뢰성 있는 재무정보를 요구하여 왔고, 1995년 EU의 다국적기업으로부터 시작하여 2001년에는 전 세계로 확산되어 기업에 그 사용을 권고해 왔다. 그 결과 2005년부터는 EU 상장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 의무적으로 IFRS가 사용되었고, 그 이후 일본(2005년)과 중국(2007년)도 IFRS를 도입하였으며, 미국의 경우도 2014년 전면 도입키로 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2009년부터 금융업을 제외한 기업들에 선택적 적용을 하게 하였고, 2011년부터는 의무적으로 모든 상장사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를 적용하도록 하였다.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은 재무제표 작성과 감사업무에 기존보다 많은 전문가의 추정과 판단 등을 요구하게 된다. 특히 국제회계기준(IFRS)은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K-GAAP)과는 구별되며, 이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음을 지적하는 연구논문⁵⁶⁾이 발표된 바 있는데, 그 정리된 특징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55) 이효익, 진계서 pp.100.

56) 신성식·양해면, “K-GAAP와 K-IFRS의 차이에 관한 연구”, 「한국경영교육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8, pp.279. ; 황운영,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에 따른 기업법제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2012, pp.97-101.

첫째, K-GAAP의 경우 규정중심의 회계원칙이지만, K-IFRS는 원칙중심의 회계기준이라는 것이다. IFRS가 적용되기 전까지 전 세계 각국의 회계기준은 대부분 각 나라의 산업에 적합하도록 짜여진 실무 중심의 회계원칙이었다. 하지만 많은 나라에서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회계기준을 제정하다보니 나라별, 산업별 실무지침을 하나의 회계기준에 모두 포함시키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IFRS는 재무보고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원칙에 입각하여 내용을 규정하고, 세부적인 계산이나 처리에 대한 방법은 원칙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량껏 허용하게 하는 원칙 중심의 회계기준으로 제정하였다. 따라서 IFRS를 적용하는 회계처리 방법이 보다 넓어져 광범위한 전문가적인 판단이 요구된다고 주장한다.

둘째, 기존의 K-GAAP과는 달리 K-IFRS에서는 연결재무제표가 주 재무제표로 사용된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기말 재무보고는 물론이고 반기나 분기 공시를 할 때에도 연결재무제표로 공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연결대상회사를 결정하는 지배력 기준 및 지분법 대상회사를 결정하는 중대한 영향력 기준 등이 K-GAAP과 약간씩 차이가 있다는 주장이다.

셋째, 기존의 K-GAAP에서 취득원가로 계상하였던 자산과 부채 중 상당한 부분에 대해 이를 공정가치를 인정하지만 그 대부분은 선택사항이므로 기존의 원가법을 적용할 가능성도 있게 된다. 그러나 K-IFRS에서는 공정가치를 적용하는 항목으로는 금융상품·금융부채, 유형·무형자산, 투자부동산, 자산에 대한 손상차손 인식 등으로 제한된다.

그 밖의 주요 차이점으로는 기업의 공시의무가 강화되었다는 점을 들고 있다. 기존의 K-GAAP에서도 감사보고서의 주석사항은 여러 정보를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K-IFRS에서는 이러한 공시규모가 대폭 확대되었다. 기본적인 공시내용이 연결기준으로 바뀌게 될 것이며, 영업부문에 대한 재무정보 뿐만 아니라 공정가치에 대한 정보가 공시되어야 하기에 K-IFRS 상에서는 감사보고서의 분량이 늘어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K-GAAP과 K-IFRS의 차이점은 특히 감사인에게 있어서 감사위험을 증대시켜 감사 업무의 가중을 초래하게 되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⁵⁷⁾ 즉, 회계기준이 변경된다는 것은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감사인에게

더욱 신중한 감사를 요구하는 일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감사인의 감사노력 증대는 감사보수 및 감사시간에 반영되어 나타날 것이므로 이는 사실상 기업 부담이 증대되는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게 된 것이다.

4. 주식회사의 회계감사제도

1) 외부감사대상기준에 관한 법률 연혁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은 법률 제3297호로 1980년 12월 31일에 제정·공포되어 198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법률 제정 당시 외감법 제2조에는 외부감사 대상기업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었다.

“직전사업연도말의 자본금 또는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액 이상인 주식회사는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정부투자기관관리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주식회사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으로 하였다. 그리고 외감법 시행령상 외부감사대상 기업에 대한 자산총액기준은 30억원으로 설정되어 있었으나 이후 물가상승 및 경제성장 등의 이유로 점진적 상향 조정되어 왔다. 1988년, 1990년, 1993년, 1998년의 자산총액기준 상향조정 개정으로 인한 외부감사대상 기업범위 축소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하여 이루어진 조치였다.⁵⁷⁾

이들 개정법률 중 특징적인 것으로는 1998년 외감법 시행령개정을 들 수 있겠는데, 동 개정에서는 자산총액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에 대하여 외부감사를 강제화하였고 이후 2008년 말까지 그 기준은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왔다. 그리고 2006년에는 회계투명성의 확보와 대외신인도를 높이기 위하여 상장·등록법인에 대하여는 자산 규모와 관계없이 모두 외부감사를 받도록 외감법이 개정되었다. 이 같은 변화는 모두 회계투명성이 요구되는 사회적 변화

57) 김용식. 전계논문 pp.81-115.

58) 장금주·강민정·김상순. 전계논문, pp.237-277.

를 반영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2009년 1월에는 외부감사대상 범위의 축소 법안이 입법 제안되어 많은 수의 회사가 외부감사를 면제받게 되어 회계업계를 중심으로 한 반발기류가 확산되었고, 이에 많은 진통을 겪다가 2009년 말에는 자산총액기준(100억원) 이외에 추가로 부채 및 종업원 수 기준을 추가하게 되었다. 하지만 2014년 9월 외부감사대상 범위는 자산총액기준이 100억에서 120억으로 상향조정되면서 다시 축소되기에 이르렀다. 이하에서는 외감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에 따른 감사대상기업에 대한 변천내용이 알기 쉽게 도표로 정리해 두고자 한다.

< 표 4 > 외감법상 감사대상기업의 변천

법률개정연도	감사대상기업의 변천
1980년 12월 31일	자본금 5억원 또는 자산총액 30억원 이상의 주식회사
1988년 4월 4일	자산총액 3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
1990년 3월 3일	자산총액 4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
1993년 5월 27일	자산총액 6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
1998년 4월 24일	자산총액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
2004년 4월 1일	자산총액 10억원 이상인 상장법인·등록법인 및 상장·등록예정법인
2006년 3월 10일	모든 상장법인·등록법인 및 상장·등록예정법인
2009년 1월 6일	자산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
2009년 12월 31일	기존 100억원 기준에 부채와 종업원 수 기준 추가함.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경우로 직전 사업연도 말의 부채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 종업원 수가 300명 이상인 주식회사를 추가
2014년 9월 3일	기존 자산총액 기준 120억원으로 상향 조정

위와 같은 변화를 거쳐 외부감사 대상회사의 수는 꾸준히 변화하여 왔는데, 이하에서는 외부감사대상 기업을 현행 법률기준으로 외부감사 면제대상이 되는 기관 및 기업을 포함하여 도표로 재정리해 두고자한다.

2) 외부감사대상 기준

현행법상 외부감사대상기업의 기준(외감법 제2조,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표 5 > 현행법상 외부감사대상기업

No	외부감사 대상기업의 기준
1	직전 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이 12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
2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이고 부채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
3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이고 종업원수가 300명 이상인 주식회사
4	주권상장법인 및 해당 또는 다음 사업연도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주식회사

현행법상 외부감사면제대상기업의 면제조건에 해당되는 사항(외감법 제2조, 외감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외감규정 제7조)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표 6 > 외부감사 면제대상기업

No	외부감사 면제조건 해당사항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인 비상장 주식회사
2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을 출자한 주식회사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4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5	금융기관으로부터 당좌거래의 정지처분 중에 있는 주식회사. 다만, 회생절차의 개시가 결정된 주식회사를 제외
6	청산중에 있거나 1년 이상 휴업중인 주식회사
7	합병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로서 해당사업연도 내에 소멸될 주식회사
8	금융위가 관리인을 선임한 상호저축은행
9	국세청에 휴·폐업을 신고한 회사
10	금융위로부터 영업인·허가 취소를 받은 회사
11	법원에 의해 주요자산에 대한 경매 또는 압류가 진행 중인 회사
12	서신 또는 전화 등에 의한 연락이 두절인 회사
13	천재지변으로 인한 장부소실 등으로 감사를 받기가 곤란함을 입증한 회사
14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감사인이 감사불능보고서를 제출하는 해당 회사

2013년 10월 금융위원회는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제도 개혁방안에 대한 보도 자료를 배포하고 2013년 11월 공청회를 개최하는 한편, 2014년 1분기 외감법 전면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가 있다. 동 개혁안에는 비상장 회사에 대한 외부감사의 확대안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 추진 배경은 외환 위기 이후 상장회사 중심의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력에 집중하였으나 이에 반해 유한회사 및 비영리법인 등의 경우에는 회계개혁의 사각지대로 남아

투명성의 제고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이다. 그리고 유한회사의 경우는 사원 수 제한의 폐지 및 사원에 대한 지분양도 허용 등의 내용이 포함된 상법의 개정으로 유한회사의 경제적 실질이 소유와 경영의 분리, 유가증권의 발행 등을 제외하고 주식회사와 유사해 지게 되었다.

따라서 유한회사에 대한 규제의 완화로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의 전환 및 유인이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고, 규모가 큰 유한회사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은행 등 이해관계자 범위도 이전보다 넓어질 수 밖에 없으므로 외부감사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논의가 제기되기에 이른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중소기업의 어려운 경영사정 등을 감안하여 외부감사 대상기준을 현행 자산 총액 100억원 이상에서 120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하여 이윽고 2014년 9월 외감법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120억원으로 상향조정되기에 이르렀으므로 현실에 엇박자되는 현상을 초래케 하고 있다.

상기한 금융위원회의 개혁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회계투명성의 제고 및 주식회사의 상장기피 및 상법의 개정으로 유한회사에 관한 제한이 완화되면서 주식회사 형태의 기업들이 유한회사로 전환되는 현상 등의 부작용 발생을 방지하는 방안으로 주식회사에 한정되어 있는 외감법의 규율대상을 외국과 유사하게 유한회사와 비영리법인으로 확대하여 외감법의 명칭을 「영리법인 등의 회계 및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즉, 동 개혁안에 의하면 2011년 상법개정으로 주식회사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해진 일정규모 이상의 유한회사에 대하여 외부감사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이 외에도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의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해 자산총액 1조원 이상인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에 대해서도 회계법인에 의한 외부감사를 의무화하는 내용 등의 상장회사에 준하는 회계감독 규율을 적용할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외감대상기준을 120억원으로 상향조정 한 것에 대하여 회계업계를 중심으로 반발 기류가 확산되고 있는데, 이를 언급해 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먼저, 한국 공인회계사회 회장은 감사비용을 줄이는 것보다 중소기업의 회계투명성이라는 명제가 더 중요하며 외감 대상에서 제외되면 회계투명성이나 기업에 대한 신뢰가 훼손될 가능성이 크고 이는 중소기업을 돕는 것이 아

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⁵⁹⁾ 즉, 외감대상기준 상향 조정은 이해관계자 보호 및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해 외부감사가 유한회사 등 비상장회사에 대하여도 외부감사를 적용한다는 취지와 배치되며, 외국의 경우에도 외부감사의 범위를 축소하는 사례는 보기 드물어 이는 투명성제고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와 동조하여 회계업계는 투명성 제고를 위해 현행 외부감사 기준금액(자산총액기준)은 그대로 유지하되, 최근의 변화된 경제 환경을 반영하여 외부감사대상 기준(부채기준, 종업원 기준)을 합리화하고 ‘매출액기준’을 추가로 반영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3) 주식회사 회계감사제도의 중요성

기업의 성공과 실패는 기업 자체의 문제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국가 경제의 중요한 위치에 존재하기 때문에 국가가 자신의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는 국가의 부채로 인한 위기 또는 디폴트 위기, 즉 국가부도로까지 연계될 수도 있다. 감사제도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오늘날의 기업은 갈수록 대형화 및 글로벌화 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이해관계자들의 수도 한층 증가해 가고 있고, 기업이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그만큼 커져만 가고 있다. 그러므로 주식회사는 단순히 영리만을 추구하는 사경제적 주체로서의 의미뿐만 아니라 공공성을 띤 경제주체로서 인식되기에 이른 것이다. 따라서 근래에 들어서는 특히 대규모 주식회사는 단지 그 구성원인 주주의 이익만 추구할 것이 아니라, 종업원과 소비자, 더 나아가 일반대중에 대한 사회적 책임 등을 다하여야 한다는 것이 강조되고 있다.⁶⁰⁾

그러므로 오늘날 주식회사의 경영에 있어서는 업무집행의 효율화와 적정화가 절실하게 요구되어 지고 있으며, 경영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없는 이해관계자들에게 기업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 등을 올바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는 일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경제적 차원에서

59) 머니투데이, “정부 외감대상 기준 완화에 회계업계 반발” 2013년 11월 25일자 기사.

60) 이범찬·오육환, 「주식회사의 감사제도」 한국상장회사협의회(1997년), pp.1.

만이 아니라 국가의 이미지와 연결된 차원에서도 기업의 공정한 운영은 중대한 관심사가 되고 있다. 작은 규모의 기업인 경우에는 경영진의 양심에 맡길 수 밖에 없지만 더욱 커지고 글로벌화 되고 있는 대기업의 경우에는 무엇보다 그 관리와 경영이 건실하고 공정함이 요구되어지고 더 나아가 시스템을 통한 상시적인 감시체제가 갖추어져야만 기업의 공정한 운영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분식회계나 부실경영의 사례는 상시적인 감시체제의 부재에서 오는 경우가 많으므로 기업 내부적으로도 이와 같은 경영자의 견제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감사제도로 받아 들여지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기업의 재무제표는 경영진이 실적에 대한 성적표임과 동시에 미래의 지속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는 가늠자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재무제표도 독립적인 전문가의 외부감사를 통해 신뢰성이 부여되어야만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재무제표는 잠재적 투자자들에게는 투자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 투자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전달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하는데, 이러한 미래의 투자자들 중에는 국내 뿐만 아니라 국외의 투자자들도 함께 존재할 것이고, 그들은 기업의 투명한 경영과 회계에 대한 신뢰를 상당히 중요한 평가수단으로 삼고 있다. 그러므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감사제도는 국가브랜드 제고를 위한 수단으로도 이용될 수도 있는 것이다.

결국, 주식회사의 감사제도는 기업경영의 건전성과 공정성을 확인하고 점검함으로써 기업의 유지, 발전뿐만 아니라 주주와 회사의 채권자를 비롯한 이해관계자들의 이익 보호, 더 나아가서 국가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중요한 제도라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4) 주식회사의 회계감사 현황

외감법에서는 회계정보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주식회사에 대하여 외부감사를 의무화하고 있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매년 외부감사대상 회사의 현황과 감사인 지정 결과를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한 후 그 내용을 발표⁶¹⁾하고 있다.

위의 자료에 의하면, 2015년말 현재 우리나라의 외부감사대상 회사는

24,951사로 전년 대비 893사 증가(+3.7%)하였다. 이는 당해연도 중 자산 증가 등에 따라 3,851사가 신규로 외감대상에 편입되었고, 자산 감소, 영업활동 중단 등에 따라 2,958사가 외부감사 대상에서 제외된 결과이다.

외부감사대상 회사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외감법 개정에 따라 2015년부터 외부감사대상의 자산총액이 상향조정(100억원에서 120억원으로) 되어 증가율은 감소되었으며('14년 7.7% → '15년 3.7%),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의 외감대상이 각각 141사 및 752사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 표 7 > 외부감사 대상회사 현황(2015년 12월말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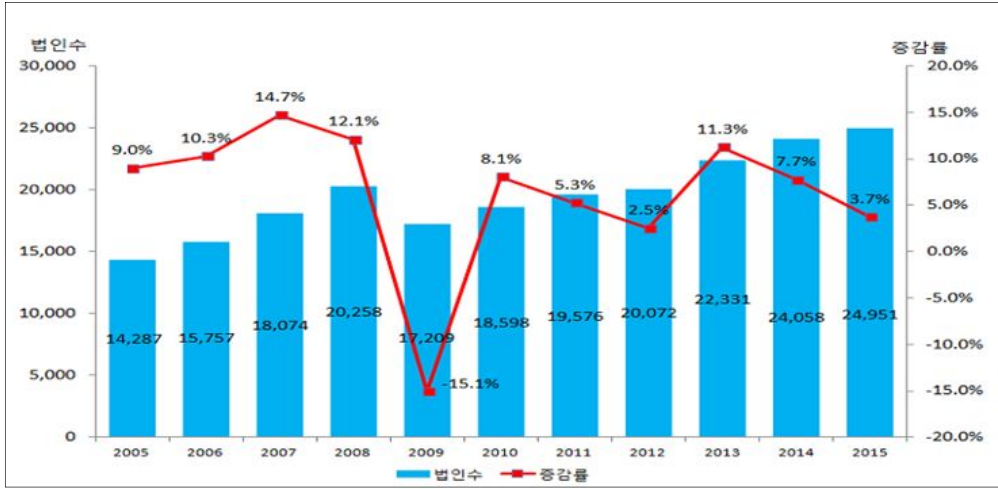
(단위:사)

구 분	상장법인			비상장법인	총 계
	유가증권	코스닥	소계		
2015년	760	1,249	2,009	22,942	24,951
2014년	760	1,108	1,868	22,190	24,058
증 감	-	141	141	752	893

주) 금융감독원, 외부감사대상 지정현황, 2016.

61) 금융감독원, 2015년 외부감사대상 회사 및 감사인 지정 현황, 2016.1.21. 보도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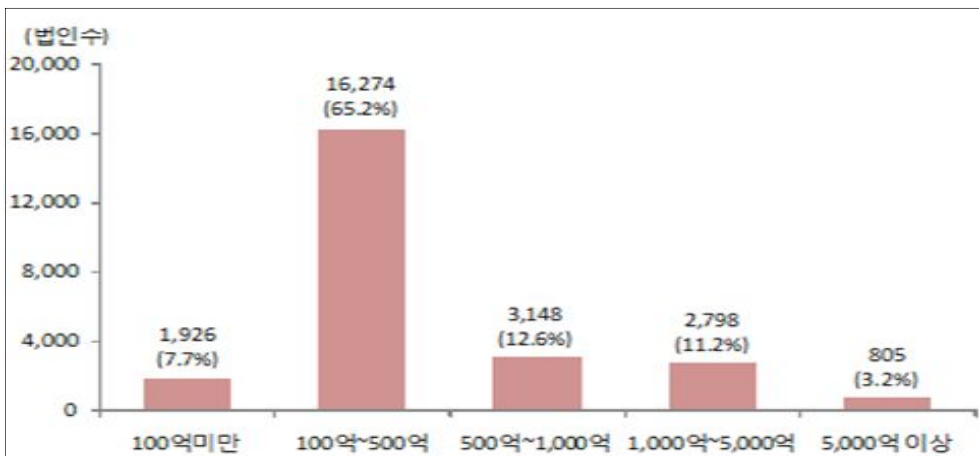
< 그림 1 > 연도별 외부감사대상 회사 추이



- 주) 1. 2009년 외부감사대상 자산총액 기준금액 상향 조정 ('08년 70억원 → '09년 100억원)
- 2. 2015년 외부감사대상 자산총액 기준금액 상향 조정 ('14년 100억원 → '15년 120억원)

이를 자산규모별로 살펴보면, 100억원부터 500억원은 16,274사(65.2%), 500억원부터 1,000억원은 3,148사(12.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그림 2 > 자산규모별 외감대상 회사수



그리고 결산월별로는 12월 결산법인은 23,150사(92.8%), 3월 결산법인은 474사(1.9%), 9월 결산법인은 388사(1.6%) 등의 순으로 나타나 있다.

< 표 8 > 결산월별 외부감사 대상회사 현황(2015년 12월말 현재)

(단위 : 법인수)

구분 \ 결산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총계
주권상장법인	-	-	23	-	2	16	-	2	9	1	1	1,955	2,009
비상장법인	31	31	451	40	56	264	52	118	379	223	102	21,195	22,942
합계	31	31	474	40	58	280	52	120	388	224	103	23,150	24,951
구성비(%)	0.1	0.1	1.9	0.2	0.2	1.1	0.2	0.5	1.6	0.9	0.4	92.8	100.0

주) 금융감독원, 외부감사대상 지정현황, 2016.

Ⅲ. 주요국 감사제도의 분석 및 회계감사제도의 비교·고찰

1. 감사제도 개혁논쟁과 국제적 동향 및 한국의 입장

1) 감사제도 개혁논쟁의 배경

감사제도를 둘러싼 여러나라의 회사법과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기준은 주로 경영자와 주주간의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발생하게 되는 대리인 비용을 해소시키려 노력해왔다. 더욱이 바람직한 지배구조를 가진 기업은 시장 투명성, 책임성, 실행가능성 등이 담보되는 것으로 이러한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었다.

그리고 강력한 기업지배구조의 시스템을 가지게 된 국가는 오랜시간에 걸쳐 경제성장의 혜택을 누리 왔지만, 상대적으로 취약한 기업지배구조를 가진 국가는 심각한 위험에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어 왔다. 기업지배구조개선은 특히 주식시장을 통해 대부분의 자본조달이 이루어지는 국가들에 있어서는 ‘효율성과 성장’을 증대시킬 수 있는 것으로 인식되어 오고 있다.⁶²⁾

자유주의 경제제도 아래에서는 회사가 제3자와의 관계에서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만 규정하고 경영실패 등에 대해서는 회사 자신이 책임을 지게 되므로 회사내부 경영방식이나 내용에 관해서는 세부적으로 규제할 필요가 없다고 할 수 있다.⁶³⁾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국가는 여러가지 이유때문에 감사제도를 통해 회사의 지배구조에 관여할 수 밖에 없다. 주식회사의 성패는 원활한 자본조달에 달려 있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자본조달의 문제는 주주들이 자본시장을 신뢰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제공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고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하는데, 특히 기업지배구조개선 문제의 세계적인 추세는 주주인 투자자를 보호하는데 그 중심을 두고 있다는 점을 볼 때, 자본시장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기업지배구조를 개

62) 서완석, “기업지배구조론에 관한 서설적 고찰” 『기업법연구』 제27권 제4호, 2013, pp.149.

63) 이재용, “주식회사의 업무집행에 대한 감사감독제도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2005, pp.5.

선하는 노력 및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⁶⁴⁾

그러한 면에서 감사제도는 조직에 대한 신뢰성을 유지하고, 담보하는 수단으로 기능하게 한다. 바람직한 지배구조의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회사들은 더욱 더 저렴한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 할 가능성이 있으며, 경영진이 효율적으로 자원배분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투자자들에게 높은 투자수익률을 제공하고, 소송비용을 줄여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노사관계의 향상과 환경보호와 같이 이로운 외부효과인 외부경제(external economy)의 증대도 기대할 수 있도록 해준다. 그리고 바람직한 지배구조가 갖추어진 경우, 금융위기 가능성이 낮아지고, 가령 그러한 금융위기가 닥치더라도 그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할 가능성이 높으며, 효율적인 기업경영을 통해 좋은 이미지를 얻을 수 있게 됨에 따라 기업 가치가 증대되고, 부패가능성이 낮아지게 되어 기업의 발전과 더 나아가 국가의 발전을 높여주게 된다.

감사제도는 이러한 기업지배구조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데, 주식회사에서는 감사제도를 통하여 주주의 이익보호와 채권자의 이익보호를 위해 회사가 투명하고 적정하게 잘 운영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감독하게 된다.⁶⁵⁾

2) EU의 Green Paper

EU의 Green Paper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수많은 은행들이 엄청난 손실을 입은 사실을 통해 감사인이 그러한 고객들에게 적정보고서를 내놓은 것에 대한 의문과 현재의 법적 구조의 적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회계감사법인에 대한 규제강화와 회계감사 시장의 경쟁 촉진을 위한 회계감사제도의 개혁안이다. 동 개혁관련 권고안은 감사법인의 정기교체 의무화, 일괄면허제도 도입, 공동감사 시행 등을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EU의 회계감사제도 개혁에 관한 추진은 회계감사법인들의 업무추진과 관련된 문제점들이 이러한 금융위기 사태를 초래한 원인 중 하나였다는 인식에서 시스템적 위험에 대한 재발을 방지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는 지난 2008년 금융위기가 닥치 시점에 회계감사법인들이 리먼 브러더스

64) 서완석, “주식회사의 감사제도에 관한 연구” 『기업법연구』 제18권 제1호, 2004, pp.27.

65) 최준선, 『회사법(제9판)』 삼영사(2014) pp.574.

등 대형 은행들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였지만 재무제표상의 치명적인 부실상태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는 취약성을 보였기 때문이다.⁶⁶⁾

(1) 감사법인의 정기교체 의무화

EU위원회는 기업의 재무제표에 대한 적절한 평가가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감사법인과 기업 간의 적절하지 못한 관계가 형성되지 않도록 일정기간이 지난 이후에는 감사법인 자체의 변경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특히, 대기업이나 대형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감독당국이 감사법인을 지명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⁶⁷⁾ 이 외에도 회계감사법인이 자신들이 맡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자문 등 감사업무 이외의 경영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하고, 감사보수의 상한선을 미리 설정하며, 중소기업의 회계부담을 완화하는 것에 대한 방안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것은 감사법인의 독립성 확보에 그 주요한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 도입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는 것도 사실이다. 예를 들어, 미국은 Sarbanes-Oxley Act of 2002(이하 SOX법)를 개정하면서 상장회사의 감사법인 교체를 의무화하는 규정에 대한 제정을 금지하는 내용을 법규화 하도록 의결하여 의회가 통과시킨 바가 있고, 영국의 경우도 감사법인의 강제교체를 가장 먼저 논의했던 바, 미국의 영향을 받아서 감사법인 강제교체를 의무화 하는 대신에 FTSE 350 상장기업에 대한 10년 주기 입찰의무화 규정을 5년 주기 입찰의무화로 변경하는 등의 감독규정 개정안을 발표한 바가 있다. 우리의 경우에도 회계법인 강제교체시 감사인의 독립성을 향상시키는 직접적인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하는 보고⁶⁸⁾가 있는 등, 이에 대한 반론이 없지않은 않다.

66) EU 회계감사제도 개혁의 주요 내용, 주간 금융브리프 19권 42호, 2010.10.23, pp.14.

67) EU법안(초안)은 교체주기가 14년부터 25년의 기간으로 정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6년마다 강제교체 의무화”를 시행하고 있고, 미국은 강제교체제도 추진방안만 발표되었을 뿐이다.

68) 권영호, “감사인 교체와 규모가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 「국제회계연구」 제25집, 2009, pp.137.

(2) 일괄면허제도의 도입

EU위원회는 Deloitte Touche Tomatsu, Price Waterhouse Coopers, Ernst & Young, KPMG 등 4대 회계법인이 유럽기업의 약 70%, 대기업의 85%, 영국 기업의 99%에 대한 감사업무를 거의 장악하는 상황에서 회계감사 시장의 과점상태를 완화하기 위해, 회계사와 감사법인이 특정 회원국에 등록하게 되면 소재지나 출신국 등은 전혀 상관없이 역내에서 자유로운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일괄면허제도(European Passport)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이는 회계감사시장의 과점상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규모 감사법인과 회계사들도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여 주고, 회계감사 시장의 경쟁을 유발하여 공정한 감사가 이루어지게 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

(3) 공동감사의 시행

EU위원회는 중소형 회계법인과 대형 회계법인이 같이 감사를 실시하는 공동감사 시행을 제안하고 있다. 이는 중소형 감사법인 및 회계사들의 업무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회계감사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감사능력 제고 등을 도모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다만 이러한 제도의 시행은 비용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책임소재가 명확해지지 못한 문제점이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3) 미국의 PACOB의 Concept Release⁶⁹⁾

미국의 PACOB⁷⁰⁾도 미국 상장회사들에 대해서 회계법인 강제교체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안하는 제도개편문서(Concept Release)를 발표한 바 있다.

69) 감사인의 독립성 및 감사법인의 정기교체

70) 미국 상장법인회계감독위원회(Public Company Accounting Oversight Board: PCAOB)는 2003년 5월에 사베인옥슬리법(SOX법)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미국의 회계법인 감독기관의 역할을 하며 회계법인의 등록 및 조사 등 제반 감독업무 및 회계감사기준 등 감사관련 기준의 제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 제도가 감사품질을 높여 줄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EU와 미국의 양 회계감독기관들이 감사인의 독립성을 확보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이 사실임을 증명하게 되는 것이다.

감사는 회사가 재무적으로 성공했는지의 여부에 대해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에 의해 수행되게 될 때 재무제표를 이용하게 되는 자에게 가치가 있는 것이다. 사베인옥슬리법(SOX법)에는 피감사기업으로부터의 감사인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몇 가지 중요한 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다.

예를 들면, 감사위원회에 감사인의 고용과 그 업무를 감시할 책임을 부여한 것이 그러하고, 또한 감사인에게는 고객에게 일정한 비감사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감사법인의 강제교체를 의무화한 점, 감사인의 독립적인 감사를 위해 PACOB을 설치하도록 한점 등이 그러하다. 그러나 후일 PACOB은 감사인에게 요구되는 독립성,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감사법인의 강제교체라고 판단함으로써, 1970년대 이래 이에 관하여 검토가 이루어진 바가 있다. 그리고 미의회는 GAO(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회계감사원)에 감사법인의 강제교체를 검토하도록 하였는데, 이에 대해 GAO는 SEC와 PACOB가 그러한 것을 요구하는 데에는 어느 정도의 경험이 필요하다고 보고하였다. 이와 같은 GAO의 보고가 있을 후 몇 년이 지나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치게 되면서 반복적으로 감사의 신뢰성이 문제시 되기 시작하였고, 미국에서는 업무입찰제도, 이중감사, 강제교체제도, 감사인의 공시 등의 방법이 제안되고 있다. EU에서는 감사인의 강제교체, 입찰제도의 채용, EU통일 패스포트(European Passport) 등의 방법이 제안되고 있는 상황에 있다.

4) 일본에서의 사외이사제도 도입

2015년부터 일본은 개정된 회사법에 따라 기업에 사외이사 제도가 선택적으로 도입되었다. 즉, 일본의 경우도 외부 전문가인 사외이사가 기업에서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해야 할 시점이 온 것이다. 사실상 일본의 경우에는 오릭스사처럼 사외이사가 전체 이사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기업이 적은 편이다. 하지만 일본 총리가 경제성장전략으로

기업지배구조개혁을 추진하게 되면서 폐쇄적인 보수경영의 기업가들이 사외이사를 대폭 늘리게 되는 등, 사외이사 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사외이사가 많을수록 경영실적도 좋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 사외이사제도 도입의 배경이 된 셈이다.

5) 한국에서의 회계신인도 제고에 관한 논의

2013년 11월 26일에 우리나라에서 열린 제5회 국제회계포럼에서는 한국의 회계신인도에 관한 문제가 중점적으로 다루어졌는데, 금융감독원은 한국의 회계투명성이 낮게 평가되고 있는 원인으로 기업의 내부감시기구인 사외이사과 감사위원회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점, 기업이 재무제표에 대한 작성책임의식이 약한 점, 그리고 회계법인 간의 경쟁 심화로 감사인의 독립성과 감사품질이 저하는 되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회계신인도 제고를 위해 향후 감독제도의 개선 방향으로 ①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강화, ② 감사인에 대한 재무제표 작성의존 관행 개선, ③ 감사인의 가격위주 경쟁에서 품질위주 경쟁 유도, ④ 이를 위한 품질관리감리 결과의 공개, ⑤ 신속한 자발적 수정공시를 유도하는 기업재무제표 심사 등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⁷¹⁾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989년 이후부터 기업이 자율적으로 외부감사인(공인회계사)을 선임하여 재무제표 등에 대한 감사를 받는 ‘자유수입제도’를 운영하면서도 그 안전장치로서 외부감사인 지정제도를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즉, 양질의 감사품질을 제공할 외부감사인을 선임할 동기가 부족하거나, 그동기가 의심스러운 기업에 대해서는 외부감사인을 의무적으로 수용하도록 감사인 지정제도를 운영해 온 것이다. 이러한 지정감사제는 벨기에와 중국 등 일부 국가들에서 각국 회계감사 시장의 경제적·사회적환경에 따라 적합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우리도 이를 수용한 것이다.⁷²⁾

그러나 후진국의 경우에는 미국이나 유럽의 자본시장과 달리 재무정보의 신뢰성에 대한 보상(예를 들면, 저렴한 자금조달비용을 의미함)이 뚜렷하지 않기

71) 유정민, “투명한 회계, 코리아 프리미엄” 「월간 공인회계사」 Vol 247, 2013, pp.18.

72) 정도진, “지정감사제 확대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감사(감사위원)의 대응방안” 「상장회사감사회 회보」 제179호, 2014, pp.2.

때문에 기업의 입장에서는 품질 높은 외부감사인을 선택할 유인보다 저렴한 외부감사인을 선택할 유인이 높고, 따라서 당연히 제 값을 받지 못하는 회계감사는 품질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대기업을 중심으로 기업 부실과정 등에서 분식회계가 발생하여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제고가 요구됨에 따라, 외부감사인 지정기업의 범위를 확대시켰다. 이는 지정감사제 확대에 따라 기업의 외부감사인 선택권도 확대하기 위해 감사인 재지정 요청 사유를 확대시키게 된 것이다.

2. 미국의 감사제도

1) 미국의 감사위원회제도

미국의 회사에는 감사기관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영국에서도 감사라는 기관이 없었는데, 1948년 회사법 개정 이후로 회사의 내부기관으로서 회계감사인이 존재하게 된 반면, 미국에서는 내부기관으로서 감사가 없고 감사위원회가 이사회 내부에 일반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Exchange committee, 이하SEC라 한다)도 감사위원회의 이용을 강력히 권유하고 있으며, 뉴욕증권거래소(New York Stock Exchange)가 1978년 6월 30일 이후에는 상장회사들이 독립적인 1인 이상의 사외이사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요구한 이후로 부터는 규모가 작지 않은 대부분의 회사에서도 감사위원회를 두기 시작하였다.

감사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사외이사로만 구성되어야 하며 임원, 직원 등은 감사위원회의 구성원이 될 수 없으나 이전 임원은 이사회가 인정하게 되면 감사위원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회계감사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외부감사와 회합을 가진다.

일반적으로 외부감사도 회사의 최고경영진에 의하여 선정되는 이상 그들로부터 회계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숨기도록 압력을 받는 일이 얼마든지 가능하게 됨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기업의 최고경영진이 없는 경우 모든 이사가 참석하는 통상의 이사회에서 외부감사에 대한 질문하기 어렵고 중요한 질문

을 하게 됨으로 숨겨진 사실을 밝혀낼 수밖에 없다.

이렇듯 미국은 이사회가 경영감독기능과 업무집행기능 등을 수행하지만, 실제 회사의 업무집행은 집행임원이 담당하게 되고, 이사회는 독립된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경영감독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그러한 이사회 감독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그 하부기관으로서 감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면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경영감독과 감사를 하는 일원화된 형태로 감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미국의 감사위원회제도는 주(州) 회사법상으로는 Connecticut주를 제외하고는 강제되지는 않으나, 회사의 업무에 대한 감독기능을 수행할 이사회가 그 역할을 다하지 않음으로 해서 업무집행을 담당하고 있지 않는 독립된 사외이사 등이 주축이 되어 업무집행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 이전보다 매우 엄격하게 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있어왔다. 이를 반영하여 증권거래위원회 등이 공개된 회사에 대해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는 독립된 감사인을 지명하게 되고 이러한 감사인과 감사업무를 협의하는 사외이사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설치해 줄 것을 권고하였던 것에 영향을 받아 1970년대부터는 감사위원회가 크게 증가하였다.

미국은 최근에 법률협회의 「회사지배구조에 관한 원칙(이하 ALI원칙이라 한다)」에서 이사회 경영진으로부터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과 감사위원회의 직무와 역할에 관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규정을 두게 되었고, SEC규칙을 개정하면서 감사위원회의 직무와 독립성 확보를 위해 관련되는 정보공시의 요건을 대폭 강화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SEC는 외부회계 감사인의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감사인독립규칙(Revised Auditor Independence Rule)을 마련하였다.

2) 미국법률협회(ALI)의 감사위원회에 관한 규정

(1) 감사위원회의 설치

미국의 ALI의 원칙에 있어서는 이사회 감독기능을 강화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이사회 내부에 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 위원회에는

감사위원회(audit committee), 지명위원회(nominating committee) 보수위원회(compensation committee)등의 위원회로 분류된다. 이 가운데 ALI의 원칙 제 3편은 감사위원회를 주(州) 회사법에서 입법화 해야 할 것을 제안하고 있고, 감사위원회의 설치가 필요한 회사는 대규모 공개주식회사 형태로 한정하고 있다.(ALI의 원칙 제3.05조).

주(州) 회사법으로는 Connecticut주를 제외하고 감사위원회의 설치가 강제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뉴욕증권거래소(New York Stock Exchange)는 1977년 이후에 상장회사에 대해서는 경영진으로부터 독립된 이사들로만 구성되어 있고 그 이사들이 위원회 구성원 자격으로 독립적인 판단을 하는 것을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하는 감사위원회의 설치와 그 유지를 요구하였다. ALI의 원칙 제3.05조에 따라 감사위원회의 설치가 요구되는 큰 규모의 공개주식회사의 수는 대체적으로 거래소에 상장되어진 회사의 수와 비슷하다. 미국증권거래소(American Stock Exchange)와 나스닥(NASDAQ)에서도 감사위원회의 설치를 권고 또는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거래소 등의 권고로 인해 오늘날 감사위원회의 설치는 공개주식회사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관행으로 되어 있다.

한편, 미국기업원탁회의 보고서(Business Roundtable statement)에서는 감사위원회를 포함하여 세가지 종류의 이사회 내 위원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중 감사위원회는 모두 비경영진으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미국법조협회가 마련한 「회사이사지침서(Corporate Director's Guide Book)」와 「감독위원회보고서(Report on Overview Committees)」에서는 이사회 내의 위원회가 가지는 중요성과 감사위원회의 경영진으로부터의 독립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실태를 보더라도 대부분의 공개주식회사에서는 감사위원회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2) 감사위원회의 운영과 기능

대규모 공개주식회사에 설치가 필요한 감사위원회의 근본적인 기능은 이사회의 감독에 대한 역할을 보충하고 지원하는 것이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ALI의 원칙 제3.05조는 “모든 대규모 공개주식회사(ALI의 원칙 제1.24

조)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과정과, 그 내부통제 뿐만 아니라 그 내부 통제 및 회사의 외부회계감사인에 대해 독립성을 일정하게 심사함으로써 이사회에 감사기능(ALI의 원칙 제3.02조)을 보충하고 보조하기 위하여 감사위원회를 가져야 한다”고 정하였다. 그리고 “감사위원회는 최소 3인의 구성원이 필요하고 이 구성원은 회사와 어떤 고용관계도 가지지 아니하며 과거 2년 이내에 회사와 고용관계가 없던 이사이어야 하고, 구성원의 과반수는 상급직행임원과 중요한 관계(ALI의 원칙 제1.34조)를 가지고 있는 자 이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ALI의 원칙 제3.05조는 우선 감사위원회의 직무에 대한 재무제표의 작성과정과 그 내부통제 심사, 회사의 외부회계감사인의 독립성에 대해 정기적으로 심사하고, 회사의 내부감사인과 외부감사인 간의 대화를 토론의 장으로 제공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일반적인 직무를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감사위원회의 직무에 대해서는 ALI의 원칙 제3A.03조에 회사의 실무관행상의 권고로 정하고 있다. 주 회사법상의 입법화에 의하여 설치강제되어 지는 대규모 공개주식회사의 직무에 대해서는 ALI의 원칙 제3A.03조에 열거하고 있는 직무내용을 강제하는 것은 아니고, 또한 구체적인 직무내용이 ALI의 원칙 제3A.03조의 직무내용과 일치할 필요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LI의 원칙 제3.05조는 감사원칙의 구체적인 직무내용을 표시하는 지침이 된다고 할 수 있다.

ALI의 원칙 제3.05조가 규정하고 있는 감사위원회의 일반적인 직무를 이사회 자신이 직접 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하지만 실제로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보다 정상적이다. 그에 대해서는 재무제표의 작성과정과 내부통제,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등에 대한 면밀한 심사와 심오한 토론이 필요하며, 회사의 재무제표는 경영진의 업적과 직접 관련되므로 이를 토의하는 토론의 장이 필요한데 이는 많은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가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곤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감사위원회제도를 채택하여 이에 맡기는 것이 보다 효과적 일 수 밖에 없다. 또한 외부 회계감사인이 감사하는 과정에서 경영진의 구속을 받지 않고 독립적이며 효과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도 독립의 감사위원회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예컨대, 경영자로부터 독립한 감사위원회가 외부회계감사인의 선임과 해임 및 보수 등의 중요한 결정에 있어서 역할을 다함으로써 외부 회계감사인이 경영자에게서 독립하여 감사의 직무를 효과적이며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외부회계감사인과 경영자는 특별한 관계가 아닌 사외이사가 대화를 일상적으로 할 수 있어야 외부 회계감사인이 그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이를 위하여 독립된 감사위원회가 양자 사이의 토론의 장을 마련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다. 이 밖에도 독립의 감사위원회는 회사내부의 감사담당부서의 객관성을 강화할 수도 있다. 회사내부의 감사담당부서가 경영자에게만 보고를 하고 이사회나 그 위원회에게는 아무런 접촉이 없는 경우에는 경영진의 반대에 직면할 수도 있고, 그로 인하여 경영진의 승인을 얻을 수 없게 될 수 있다. 감사위원회를 이용하는 것은 그러한 저항을 개선하고자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므로 회사 내부의 감사담당부서가 적절히 감사위원회와 관계를 가지는 것 자체는 내부감사 담당부서의 지위를 강화하고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감사위원회는 경영자에 대한 이사회 감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요한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는 바, 이를 위해서 감사위원회 구성원의 경영자로부터 독립성의 확보가 보다 중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감사위원회의 구성원은 경영자 직위로서의 사용인이나 상급집행임원을 겸하는 이사로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ALI의 원칙 제3.05조에서는 경영자인 집행임원 또는 사용인이기도 한 이사가 감사위원회의 구성원이 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또한 감사위원회의 구성원의 자격에 대해서 상급집행임원과 중요한 관계를 가진 이사를 제한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최근 감사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을 지금보다 더욱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바이다. 즉, 주식시장에 대한 감독기관, 회계제도의 관계자 및 기업경영자들로 구성되어진 위원회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이 자격이 부족한 경우나 또는 경영진과의 사적인 관계로 인해 그 기능을 발휘하기 어려운 사례를 감안하여 그 자격에 대해 강화하려는 의지를 담은 건의서를 작성한 바 있다. 이에 의하면, 지난 5년 이내에 본인과 배우자 또는 자녀가 당해 회사 및 그와 관련된 회사에 근무한 사실이 있게 되면 감사위원회에 소속

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당해 회사와 관계회사로부터 이사보수와는 별도의 다른 보수를 받고 있는 사람도 역시 감사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당해 회사와 거래하고 있는 회사의 관계회사, 주주 또는 임원인 이사도 감사위원이 될 수 없다. 나아가 감사위원 가운데 최소 1인은 회계 또는 재무경력을 지녀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3) 감사위원회의 구체적 직무

감사위원회제도는 대규모 공개주식회사에 대해서는 그 설치를 강제할 수 있으나(ALI의 원칙 제3.05조), 소규모 공개주식회사는 회사의 실무상 관행에 따른 설치를 권고하고 있다(ALI의 원칙 제3A.02조). 이는 소규모 공개주식회사는 대규모 공개주식회사에 비해 공공성이 약하고 경비부담을 완화시킨다는 관점에서 그 설치를 회사의 판단에 맡긴다는 것이다.

ALI의 원칙 제3.0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사위원회의 일반적인 직무를 보충하기 위하여 ALI의 원칙 제3A.03조에서는 감사위원회의 구체적인 직무를 나열하고 이것을 실무관행으로 실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이 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ALI의 원칙 제3A.03조 (a)항은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외부 회계감사인으로서 채용될 회계법인을 추천할 수 있어야 하고, 또한 그 회계법인의 해임 제안도 아울러 심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외부 회계감사인의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이 (a)항은 그 다음의 (b)항에 의하여 보충되고 있는데, ALI의 원칙 제3A.03조 (b)항에서 감사위원회는 외부회계감사인 보수, 독립성, 계약기간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감사위원회는 외부회계감사인에 대한 독립성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정도와 외부 회계감사인이 감사와 관련없는 업무를 수행하는 정도를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둘째, ALI의 원칙 제3A.03조 (c)항에서는 감사위원회는 상급 내부감사임원에 대한 임명과 교체를 심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내부통제의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ALI의 원칙 제3A.03조 (d)항에서는 감사위원회는 외부회계감사인, 이사회, 그리고 상급 내부감사임원 상호간의 의

사소통경로로 활용되어야 한다고 하고 있는데, 이 기능은 외부회계감사인의 독립성과 회사내부감사인의 객관성을 강화한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

셋째, ALI의 원칙 제3A.03조 (e)항에서는 감사위원회는 외부 회계감사인의 감사의 결과에 대한 감사보고서, 관련된 서신, 외부회계감사인의 감사와 관련된 권고사항에 대한 경영진의 대답, 내부감사의 중요 보고서, 그리고 이 보고서에 대한 경영진의 대답을 심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감사위원회가 이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데는 외부회계감사인의 협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리고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중요한 문제를 외부회계감사인과 같이 심사하게 되는데, 감사위원회는 감사계획의 목적, 감사절차, 감사의 범위, 감사팀의 배치, 내부회계감사인과 외부회계감사인간의 책임에 대한 분리 등에 관하여 외부회계감사인 및 상급 내부감사임원과의 토론을 통해 외부회계감사와 내부회계감사의 계획과 그에 따른 범위를 검토하게 되는 것이다.

넷째, ALI의 원칙 제3A.03조 (f)항에서는 감사위원회는 재무제표와 관련되어 있는 외부회계감사인과 관련된 증명서류, 보고서, 심사서, 의견서 그리고 경영진과 외부회계감사인 사이의 중요한 사항들을 심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다섯째, ALI의 원칙 제3A.03조 (g)항에서는 감사위원회는 외부회계감사인 및 내부회계감사임원과 협의를 통하여 회사내부통제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감사위원회는 회사내부통제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감사의 범위와 감사계획에서 발생되게 되는 여러 문제들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감사위원회는 내부감사임원으로 하여금 어려운 문제를 지체없이 제기하도록 하고, 숨겨둔 민감한 문제들을 이끌어내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섯째, ALI의 원칙 제3A.03조 (h)항에서는 감사위원회는 여러 가지의 문제가 외부회계감사인, 중요상급임원에 의해 제출되었을 때 재무제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감사, 회계원칙, 실무관행 등에 관한 중요한 변경과 기타의 중요한 선택의 문제를 검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회계사는 전통적이며 일반적으로 승인된 회계원칙에 의하여 확정한 범위 내에서 회사가 재무제표의 작성과정에서 적용하는 회계원칙과 관행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회사를 대표하는 경영진이 이러한 선택을 대신하는 경우가 많

다. 감사위원회의 감독과 감사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감사위원회가 이러한 경영진의 선택을 검토할 필요가 있게 된다. 따라서 경영진은 자신이 선택한 회계원칙과 관행을 감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감사위원회는 최종승인을 얻기 위해 이를 이사회에 제출할 수도 있게 된다.

이상과 같이 ALI의 원칙 제3A.03조는 감사위원회의 직무를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규정하고, 이것을 ALI의 원칙 제3.05조 및 ALI의 원칙 제3A.02조에 의하여 설치된 감사위원회의 구체적 의무로 채택할 것을 제안하고 있는 것이다. 또 ALI의 원칙 제3.05조나 ALI의 원칙 제3A.0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사위원회의 직무에 관한 추상적·일반적 원칙과 ALI의 원칙 제3A.0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체적인 직무내용과의 관계에서는 후자가 전자의 감사위원회 직무에 대한 일반원칙을 보충하게 되며 이것을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감사위원회의 의무로 구성한 것이다.

3) 미국 감사제도의 특징 및 시사점

(1) 특징

미국의 감사위원회제도는 주(州) 회사법상으로는 Connecticut주를 제외하고는 특별히 강제되어 있지 않지만, 회사의 업무집행에 대하여 감독기능을 수행하게 될 이사회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업무집행을 담당하지 않고 있는 독립된 사외이사 등을 중심으로 업무집행에 대한 책임에 대해 종전보다 매우 엄격하게 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일어나고 있었으며⁷³⁾, 또한 SEC 등이 공개회사에 대하여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는 독립감사(auditor)를 지명하고, 이러한 감사와 감사업무를 협의하는 것을 업무로 하는 사외이사로 구성된 감사위원회의 설치를 권하였던 점에 영향을 받아 1970년 대부터 감사위원회의 수가 크게 증가하였다.⁷⁴⁾

미국에서의 이러한 제도는 회사법에서 발전한 것이 아니라 SEA에 의해서

73) American Law Institute, "Principles of Corporate Governance : Analysis and Recommendations", ALI, VOL. 1, 1994, pp.104.

74) 정찬형, 「상법강의(상)」 제16판, 박영사, 2013, pp.1035.

1940년대부터 발전되어 왔고, NYSE, NASDAQ, AMEX 등의 거래소들도 이의 설치를 주장해 왔으며, 1870년 전국적인 증권거래소와 증권업협회 등의 자율규제기관(SROs: Self-Regulatory Organizations)에서 처음 채용되었다. 이처럼 미국의 경우에는 각종 거래소의 운영규칙과 SEA에서 감사제도가 발전해온 측면이 있다.

그러므로 미국의 SEA Rule 제10A-3조의 규정에 따라 상장회사는 모두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며, SOX법에 따라 증권관련법 및 SOX법의 적용을 받는 회사도 모두 감사위원회의 적용을 받는다(SOX법 제2조).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사 전원으로 구성되어진 이사회가 감사위원회와 동일하게 취급되며 감사위원회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된다. 따라서 이사회가 구성되지 않은 회사는 감사위원회 관련 법제는 적용되지 않는다.⁷⁵⁾

미국 기업의 감독기구인 감사위원회는 이사회가 가지고 있는 경영감독기능 가운데서 그 일부의 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하는 것이고, 일반적인 경영감독에 대한 의무는 여전히 이사회가 가진다. 위원회의 구성원이 아닌 이사는 원칙적으로 위원회를 신뢰하였다는 것으로 책임을 면할 수 있으나, 이에 더해 신뢰에 필요한 조건을 갖추게 되면 개인책임을 완전히 면할 수 있다. 감사위원회는 대부분 독립의 사외이사로 구성되며, 주요 거래은행의 현직 또는 집행 임원은 원칙적으로 감사위원회의 구성원이 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감사위원회의 구성원 중 적어도 1명은 재무에 대한 전문능력이 요구되고, 다른 구성원도 기본적인 재무에 관한 서류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다.

선임절차에 관하여는 사외이사 위주로 구성된 지명위원회가 관여한다. 기능에 관해서는 대부분이 비상근의 사외이사로 구성된 감사위원회가 스스로 조사활동을 하게 되는데, 회사내부의 부정을 발견하기가 어렵다고 한다. 오히려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 사내감사 및 경영진으로부터 정보를 입수하게 되고 관계자에게 질문의 방법을 통해 문제점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는 것을 중요한 임무로 하고 있다.⁷⁶⁾

75)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감사제도”, 2007, pp.29.

76) 강희갑, “미국의 주식회사의 감사위원회제도에 관한 최근 동향과 그 시사점”, 「상사법연구」 제20권 제4호, 2002, pp.5-6.

한편, PACOB은 2004년 3월에 감사기준 제2호(Auditing Standard No.2)를 공표하면서 외부감사인이 경영자가 작성한 내부통제보고서에 대한 감사는 물론이고, 이와 별도로 직접 내부회계통제시스템에 대해 평가하고, 그 결과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는 소위 직접보고(direct reporting)제도를 규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비용과 감사비용이 증가한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PACOB은 이를 의식하여 2007년 5월 24일에 새로운 감사기준 제5호(Auditing Standard No.5)를 발표하여 감사인의 감사절차를 완화함으로써 감사비용의 적정화를 도모하였다. 또한 PACOB은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평가를 위험에 근거하여 수행할 것을 제안하면서 하향식(Top-Down) 접근방법을 적용함으로써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및 평가 수행시 재무제표 왜곡 위험이 존재하는 계정과목에 대한 통제만이 아니라, 그러한 위험이 비교적 적은 계정과목에 대한 통제가 과도하게 설정되었는지에 유의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접근방법의 제도화와 내부통제시스템구축 및 운영에 따른 기업부담완화를 위해 SEC는 경영자 수행평가 시 불필요한 절차의 간소화를, 그리고 PACOB은 감사인의 감사절차를 대폭 축소하고, 프로세스별 감사절차를 폐지하여 위험 및 중요성 관점에서의 감사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불필요하고 중복적인 감사절차를 간소화하려 하고 있다.

(2) 시사점

미국의 감사제도의 두드러진 특징은 감사제도에 있어서 독립성 및 투명성 확보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면서도 내부통제에 있어서 과도하게 세부적인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및 운영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의 문제와 인력 자원 낭비의 문제를 고려하여, 위험평가에 기반한 내부통제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이다. 평가방법에 있어서도 위험기반(Risk-based) 접근방법과 하향식(Top-down) 접근방법을 적용하려 하는 점에 그 특색이 있다고 할 수 있다.

3. 독일의 감사제도

1) 독일의 감사제도 의의 및 문제점

독일 주식법은 주식회사에 필요한 기관으로서 주주총회와 이사회 그리고 감사회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이들 각 기관의 권한에 대해 수평적으로 분배함으로써 기관들 상호간의 권한에 대한 존중과 협력을 통해 각 기관들의 고유한 기능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점이 특징인 것이다. 여기에서 감사회란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필요적 감독기관이며 그 주요업무는 이사의 업무에 대한 집행을 감독하게 하는 필요적 상설기관인 것이다. 그리고 감독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감사회에 이사의 선임과 해임권을 동시에 부여하고 있다. 또한 이사와 회사 사이에서의 일반적인 거래나 이사의 경업에 대하여 승인하거나, 회사가 이사에 대하여 신용을 제공하는 경우 등에는 감사회가 회사를 대표할 수도 있다. 특히 주식회사의 경우 뿐만 아니라 주주도 주주총회에서 결산승인을 통하거나 또는 소수주주권의 행사에 의해 이사의 행위를 감독할 수도 있지만, 이것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감사회가 독일 주식회사의 기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으로 위치하고 있는 것이다.⁷⁷⁾

따라서 독일의 감사회란 감독기관(주식법 제111조) 및 인사기관(주식법 제84조)이기도 하며, 대표기관(주식법 제112조)으로서의 기능도 수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독일주식회사의 경우 정관에서 감사회의 권한에 관한 특별한 규정을 둘 수 있도록 한 점(주식법 제111조 제4항 2문)과 감사회의 연도결산서승인권(주식법 제172조)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감사회란 순수한 감독기관 성격 보다는 오히려 경영에 대한 전반에 걸쳐 총괄적 기능을 수행하는 최고의 기관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이런 의미에서 독일의 감사회는 기업의 회계감사기구 보다는 기업의 정책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설정하고 이를 통해 이사회와 함께 비판적으로 토론하여 바람직한 기업의 정책을 결정하는데 협력하게 하는 하나의 운영기구라고 할 수 있다.

77) 전삼현, “독일감사회의 본질에 관한 소고” 『법학논총』 제16집,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06, pp.31.

그 밖에도 감사회는 근로자의 경영참가를 가능케 하는 공동의사결정제도 실현의 장으로서 단순한 회사의 업무집행에 대한 감독기관이 아니라, 경제민주주의 실천적 기구로서도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실무상으로는 이러한 감사회의 근로자 경영참여로 인해 대리인 비용을 높일 뿐만 아니라 기업의 지배구조 효율성을 낮게 한다고 하는 지적도 표출되고 있다.⁷⁸⁾ 특히 이러한 지적중에는 기업의 경영자를 초빙함에 있어서 능력있는 최고의 경영자를 초빙하는 것에 장애요소가 되고 있다는 지적들이 있다. 이는 독일의 감사회제도가 제 기능을 잘 하고 있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로 근로자대표의 감사회 참여를 언급하기도 한다.

이러한 근로자 경영참여로 인하여 지적되는 구체적인 문제점으로는 첫째, 기업의 의사결정의 신속성이 요구되는 사안에 대해서도 이해근로자들의 동의를 얻어야만 하기 때문에 경영상에 필요한 공장의 이전이나 공장폐쇄, 직제 변동 등에 있어서 의사결정기간이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여 탄력적인 경영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둘째, 노동조합, 직원 또는 이해관계인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얻고 있는 자가 최고경영자로 승진될 가능성이 높아 독일의 주식회사 최고경영자들은 전문성에 비해 정치력이 뛰어나야 하는 상황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공동결정제도로 인하여 주주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권과 경영진에 대한 통제권 등이 희석되어 자본시장이 고루 발달하지 못하고, 경영자에 대한 자본시장의 통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자본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통제장치인 시장통제가 독일에서는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어서 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인위적인 방법을 쓸 수 밖에 없다는 지적들이 많다. 더욱이 기업의 인수와 합병시에도 근로자의 의사결정이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하여 경영자를 통한 통제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⁷⁹⁾

넷째, 외국투자자들은 공동결정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독일자본시장에 직접 투자하는 것을 매우 반대하고 있는 사실들이 자주 지적되고 있다. 독일은 현재까지 외국자본이 독일자본시장에 유입된 양이 독일 자본이 외국자본시장

78) 전삼현, 전게서, pp.32.

79) Baums, "German Government Panel On Corporate Governance"-Summary of Recommendations - in : Company Law Reform in Germany, Institut für Bankrecht, 2002.

에 투입된 양에 비해 항상 적었다는 점에서도 이러한 지적들이 설득력을 갖는 이유가 되고 있다.⁸⁰⁾

2) 독일감사제도의 특징

(1) 이원적 감사제도

독일의 주식회사의 경우는 미국과는 달리 업무집행과 감독에 있어서 독립된 이원적 감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업무집행은 이사회가 하고 감독은 별개의 독립된 감사회가 하는 것이다. 이처럼 독일은 업무집행기관과 감독기관 사이에 상호견제를 통해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감사제도는 감독기관이 이사회보다 상위기관이며 동시에 감독기관이라는 점에서 의견상으로는 일원적 감사제도보다 나은 경영투명성이 확보되고, 이사회와 감독기관 사이의 충돌을 회피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제도로 인식될 수 있다.⁸¹⁾

특히, 미국식의 일원적 감사제도는 이사회 구성원들 사이에 정보소유와 업무집행에 대한 권한이 각기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사들은 연대책임을 진다는 점에서 불합리하다고 보는 반면에 이원적 감사제도의 경우에는 이사회와 감사회간의 책임구분이 명확하게 된다는 점에서 의견상 합리적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술한 바와 같이 감사회의 효율성이 낮다는 비판들이 일어나고 있었고, 현실적으로도 독일기업들이 불투명한 경영으로 인한 부실 경영사태가 최근에 자주 발생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독일은 감사회 내에 미국식 위원회제도를 도입하려 하는 등의 법제도 개선을 한 바가 있다.⁸²⁾ 즉 1998년 KonTraG을 제정하여 기존 감사회 내에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그 결과 현재는 기업들의 대부분이 감사회 내에 위원회를 두고 있는 실정이다. 그 위원회의 중

80) 전삼현, 전게서, pp.32.

81) 전삼현, 전게서, pp.38.

82) 독일의 경우 1990년대 대기업을 비리와 도산이 증가함에 따라 기업분야에 있어서 감독과 투명성제고를 위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류로는 감사위원회, 재정위원회, 인사위원회, 투자위원회, 결산위원회 등을 들 수 있도록 하였으며, 특히 인사위원회는 모든 회사들이 설치하고 있는 상황에 있다.

(2) 공동결정제도 운영의 장

독일기업의 감사회는 주식법과 더불어 경영조직법 및 공동결정법 등에 대한 특별법에 의해서도 구성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독일에서는 감사회의 구성은 근로자 경영참여를 전제로 하는 특별법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고, 그 운영 및 권한 등에 대해서는 회사법인 주식법이나 유한회사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특히, 경영조직법이나 공동결정법이 적용되게 되는 기업들은 주주대표에 대한 감사뿐만 아니라 근로자대표에 대한 감사들로 구성되기 때문에, 근로자가 회사의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제된 점에 특이성이 주어진다. 이러한 공동결정제도의 특징은 근로자를 회사의 정책결정과정에 참여시켜 자본과 노동의 상호협력을 제고하고 회사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리고 공동결정제도가 어떠한 기능을 하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어 왔다. 공동결정제도가 갖는 기능과 관련하여 일반적인 논점은 4가지로 압축된다. 그 첫째로는 공동결정제도가 기업의 자본과 노동관계를 협력관계로 이끌어 주는 기능을 한다고 하는 관점이다. 그리고 둘째로는 공동결정제도는 자본가와 경영자의 기업지배권을 감독하는 기능과 자본력을 통제하는 기능을 갖는다고 보는 관점이다. 셋째로는 공동결정제도는 기업의 민주화를 실현시키는 기능을 한다고 보는 관점이다. 넷째로는 공동결정제도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어서도 종속적 지위보다는 자주적 지위로의 변화를 주도하는 기능과, 또한 객관적인 지위에서 주체적인 지위로 변화시키는 기능을 하게 되며, 이러한 기능에 대해 기업의 주체가 자본가로부터 근로자에게 이전되게 되는 커다란 기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관점이다.

3) 독일감사제도의 흐름

상술한 바와 같이 독일식의 감사제도는 노사화합을 통해 상당히 안정된 회사경영이라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자본시장의 형성에 가장 큰 요인인 투자를 유발시키는 어려운 단점이 있다. 이전에는 이러한 단점에도 불구하고 독일은 그런대로의 안정된 산업구조를 유지하여 왔고, 또한 세계경제시장에서 상당한 성장과 지위를 차지해 왔다. 그러나 오늘날 미국식의 자본시장중심의 경제체제로 세계시장이 주도되는 현 시점에서 독일의 주식회사 및 감사제도는 상당히 큰 의미의 변화를 모색하고자 하고 있으나 30년 가까이 노사협회의 하에 움직였던 주식회사 제도를 일시에 개혁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독일이 새로운 세계경제질서 속에서 거듭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주식시장 중심의 주식회사 제도로 재정비되어야 할 것이고, 아울러 노사동권적 사고⁸³⁾에 의거한 회사지배체제를 전면적으로 재검토 해야 됨이 과제로 남는다. 1998년 주식법 개정을 통해 독일도 주식시장이 중심이 되는 주식회사체제로 전환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독일감사회제도를 끝까지 고수함으로써 여전히 주식법 개정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한편, 독일의 주식법 개정 시 논의가 되었던 미국식 감사위원회 제도에 대한 찬성과 비판의 견해에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지적되었다. 즉, 독립된 사외이사로 구성된 감사위원회에서는 이사들의 업무집행을 감독하게 되고 공정하고 투명한 회사경영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미국의 감사위원회는 임의적 성격이 강하고 또한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었어도 회계감사에 치중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것은 미국의 감사위원회가 관련법을 통하여 감사위원회의 권한과 의무에 대해서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감사위원회는 비용의 지출이 많지만 실질적인 기능이 없는 추상적 기관으로 전락할 수 있는 위험이 크다는 것이 그것이다.

독일은 여러차례에 걸쳐 현재의 근로자경영참여로 인해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독일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며 자본시장을 육성하기 위해 자본시장에

83) 기업이란 자본가와 노동자로 구성되므로 이들의 법률상 지위도 동일하여야 한다는 사상이다. 즉, 주주대표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 노동자대표감사는 노동조합에서 동수를 선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한 육성법 등을 제정하였으나, 독일경제의 회복에 대한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는 근로자 경영참여가 허락되지 않은 미국식의 이사회 위원회제도를 감사회에 도입하게 함으로써 전혀 조화가 되지 않는 미봉책적인 법제도 개선작업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부분이기도하다. 그러한 비판 속에는 본질적으로 근로자경영참여를 전제로 하는 현행 독일식의 이원적 감사제도로는 더 이상 독일경제의 부흥을 기대할 수 없다는 뼈아픈 지적도 내려지고 있는 상황에 있다.⁸⁴⁾

4) 독일 감사제도의 특징 및 시사점

(1) 독일 감사제도의 특징

독일 감사제도에 있어 주식법은 업무집행기관과 감사기관을 엄격히 분리하고 있으며, 그 권한을 강행법적으로 분배하는 것과 두 기관의 독립성을 유지시키기 위해 제도적인 기초를 마련하고 있으나, 기업실무에서는 이러한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아니하고 있는 현실이다. 감사회의 실질적 운영은 주식의 소유구조로부터 영향을 받게 되는데 이는 대주주가 존재하고 있는 회사나 가족회사의 경우등과 같이 주식소유가 집중된 회사의 경우에는 지배주주 자신이나 그의 대리인이 감사회의 구성원이 되는 것이므로 감사회는 중요한 업무집행에 대한 동의권이나 이사의 인사권 등을 토대로 이사에 대해 법이 부여하고 있는 권한 이상의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주식분산도가 높은 회사의 경우, 주주에 대한 이사의 독립성이 강하므로 감사회의 지위는 상대적으로 약화된다. 이 경우는 이사회가 주주총회에 제출하는 감사후보자의 결정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기 때문에 감사회의 영향력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독일의 주식회사는 업무집행기관과 감사기관이 법적으로 엄격히 분리되어 있는 이원제 형태를 취하고 있다. 주식법은 효과적인 업무감사를 위해 감사회에 이사의 인사권과 중요한 업무집행에 대한 동

84) 전삼현, 전게서 pp.50-51.

의권, 그리고 결산서의 승인권 등을 부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감사회는 이사의 업무집행에 대한 감사기관으로서의 기능 뿐만 아니라 경영의 관리적 기능도 같이 수행하므로 감사회는 이사회와 함께 회사의 운영기관으로써 함께 하고 있다. 따라서 독일의 감사회는 미국의 이사회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써 이해되기도 한다.

그리고 감사회를 통하여 노동자(종업원)의 경영참가를 가능하게 하는 공동결정제도가 실시되고 있다는 점에 특징을 가진다. 주식회사의 경우에 상시 2,000명 이상의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으며 공동결정법에 의한 노사동수의 감사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공동결정제도의 목적은 기업의 정책결정 과정에 노동자를 참가시킴으로써 기업의 목적을 실현함에 있어서 자본과 노동의 협력을 유지하려는 독일식 기업지배구조의 기본골격을 구성하게 하는 것이다. 이 밖에도 독일은 자본시장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덜 발달되어 기업의 자본조달 측면에서 볼 때 자본시장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기업지배구조상에서 은행의 역할이 아주 중요시 되고 있다. 따라서 주식투자가 전면적으로 허용되는 독일 은행은 기업의 대출기관인 채권자로서의 지위와 대주주의 지위를 동시에 갖고 주주총회에서도 강력한 의결권을 행사하여 기업경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 특색을 가진다.⁸⁵⁾ 이 때 은행은 기업경영에 대한 감사기능을 수행함과 동시에 기업의 재무위기시에는 자금수혈 등의 지원을 결정하게 된다.

(2) 시사점

독일 감사제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무엇보다도 공동결정제도인 것이다. 이는 주식법을 단체법적 시각에서 보아 주주는 단지 대기업의 공동소유자로 취급될 뿐 자본시장의 투자자로 보지 않는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부터 비롯 된다고 판단된다.

독일은 업무집행기관과 감독기관 사이에 상호견제를 통해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그러나 미국의 일원적 제도와 달리 감독기관이 이사회보다

85) 권순희, “미국과 독일의 기업지배구조와 최근 동향에 관한 비교검토”, 「상사법연구」 제 21권 제4호, 2003, pp.191.

우위적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일원적 제도보다 경영투명성이 보다 확보되고, 이사회와 감독기관 간의 이익충돌의 가능성을 낮출 수 있으며, 이사회와 감사회 간의 책임구분이 명확해지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⁸⁶⁾

우리의 경우 기업경영에 있어서 부담으로 작용되고 있는 노동문제와 관련하여 노동자의 경영참가형 감사제도의 구축에 독일의 감사제도는 시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생각된다.

4. 일본의 감사제도

1) 감사관련 제도의 연혁

일본의 감사관련 제도는 1890년 상법전에서 처음으로 나타난다. 감사는 이사의 업무집행에 대한 회계감사 및 감사권한을 가지는 주식회사의 필요상설기관이라는 큰 틀로 운영되어 왔으며, 이러한 일본의 법제도는 우리나라의 상법 근간에 많은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된다.⁸⁷⁾

당시의 감사제도는 일본고유의 삼권분립형태인 주식회사 기관구조의 일축을 담당하며 회사의 경영기관인 이사의 직무집행에 대하여 회계감사권과 업무감사권을 가지고 상시 감시·감독하는 주식회사의 필요적 상설기관으로 설계되었다. 이러한 감사제도는 미국의 수권자본주의제도 및 이사회제도도입이 이루어진 1950년(昭和 25年)의 상법개정부터 이후 재개정이 이루어진 1974년(昭和49年)의 상법개정이전까지를 제외하고 4반세기 동안 큰 변함이 없이 유지되어 왔다.⁸⁸⁾

이후, 이러한 일본의 법제는 한국의 상법제정에 있어서는 물론이고 중국의 상법제정에 이르기까지 많은 영향을 주며 아시아법제형성의⁸⁹⁾ 기초를 다지며

86) Gary Gorton, Frank Schmid, "Class Struggle Inside The Firm: A Study of German Codetermination", NBER Working Paper 7945, 2000.

87) 서성호, "일본 회사법상 주식회사의 감사제도에 관한 고찰" 「한국비즈니스리뷰」 제4권 제3호, 2011, pp.128.

88) 徐聖浩, "株式會社における監査役制度の研究", 早稻田大學大學院·法學博士學位論文, 2001, pp.2.

89) 서성호, "회계감사인 법책임에 관한 연구" 「기업법연구」 제15집, 2003, pp.37.; 서성호·윤주환, 「(신정판)기업법」, 무역경영사, 2011, pp.172. ; 서성호·김진환, "주주의 유한책임과

발전되어 왔으며, 근래에 들어와서는 특히 2005년 독립 회사법의 제정으로 주식회사제도의 기관구조형태가 다양화되는 가운데 감사제도 또한 복잡·다양화되어가는 형상을 보이고 있다.

1974년 상법 개정 시에는 감사의 직무권한 강화 및 지위보장, 공인회계사감사의 도입과 같은 제도가 도입되었는데, 감사의 직무권한은 회계감사 이외에 업무감사로 다시 확장되었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 등에 관한 상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자본금을 기준으로 회사규모에 따라 감사의 유형을 달리하였다⁹⁰⁾

2005년 7월 26일에는 기존의 상법이라는 틀에서 벗어나 새로이 「회사법(법률 제26호)」이 제정되었는데, 기존의 상법 제2편(회사)를 분리하여 별도의 새로운 법률로 편제되는 한편, 기존의 유한회사법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 등에 관한 상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등을 이 새로운 회사법에 흡수시키는 형식을 취하였다.

2) 감사관련 제도의 일반

현행 일본의 주식회사 제도에서는 경영기관과 감독기관의 선택이 다양하게 인정되어 주식회사의 유형이 매우 다양하게 되었다.⁹¹⁾ 새로운 회사법상 감사기관으로 회계참여(accounting advisors), 감사(auditors), 감사회(board of auditors : 감사 3인 이상으로 구성된 회의체 기관), 회계감사인(accounting auditors), 감사위원회(audit committee) 등을 선택적으로 구성하여 기관구조체계를 갖추는 것으로 되어 있다.

(1) 회계참여

회계참여는 재무제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및 그 밖의 재무서류) 및 연결

채권자보호에 관한 고찰” 「기업법연구」 제24권 제3호, 2010, pp.138.

90) 주식회사의 외부감사 등에 관한 상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 도입되어 회사의 자본금을 기준으로 자본총액이 5억엔 이상의 대회사와 자본총액이 1억엔 이하인 소회사로 구분하여 대회사는 감사 및 회계감사인에 의한 감사가 병행되었고, 소회사는 기존과 같이 감사의 업무를 회계감사로 제한하였다. 동법은 2005년 회사법 제정시 폐지되었다.

91) 서성호, 전개논문 pp.136.

재무제표를 이사와 함께 작성(회사법 374조 제1항)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사 및 지배인(집행임원 포함) 등 사용인에 대해서 회계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 있다(회사법 제374조 제2항). 회계참여가 될 수 있는 자는 공인회계사(certified public accountant) 또는 회계법인(audit firm), 세리사(세무사 : certified public accountant) 또는 세리사법인(세무법인 : tax accountant corporation)으로 제한된다(회사법 제333조 제1항).

회계참여제도를 둔 이유는 중·소규모 회사의 회계장부 및 그 계산서류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리고 감사, 회계감사인 및 회계참여의 직무상 특징을 보면, 감사와 회계감사인은 이사가 작성한 회계장부 및 그 계산서류를 회사와는 독립적인 위치에서 감사를 하는 반면, 회계참여는 업무집행을 하는 이사와 같은 자격으로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점에서 이들과 기본적으로 다르다. 일본 회사법상 주식회사의 기관유형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⁹²⁾

92) 서성호, 전제논문 pp.136.

< 표 9 > 일본 회사법상 주식회사기관의 유형

구분	공개회사	비공개회사	해석
대회사	① 이사회+감사회+ 회계감사인	① 이사회+감사회+ 회계감사인	공개회사로서 대회사인 경우 강제 적용되고 있음
	② 이사회+위원회+ 회계감사인	② 이사회+위원회+ 회계감사인	
	(해당없음)	③ 이사회+감사+회계감사인	
		④ 이사+감사+회계감사인	
기타	⑤ 이사회+감사회+회계감사인	⑤ 이사회+감사회+회계감사인	대회사가 아닌 경우 대회사에서 강행되는 제도를 임의 선택할 수 있음
주식회사	⑥ 이사회+위원회+ 회계감사인	⑥ 이사회+위원회+ 회계감사인	
	⑦ 이사회+감사+회계감사인	⑦ 이사회+감사+회계감사인	
	⑧ 이사회+감사회	⑧ 이사회+감사회	
	⑨ 이사회+감사	⑩ 이사회+감사(회계감사한정가능)	
	(해당없음)	⑪ 이사회+회계참여	감사 병행설치 금지 (회사법 제327조제2항)
		⑫ 이사+감사+회계감사인	
		⑬ 이사+감사(회계감사한정가능)	
		⑭ 이사	주주총회의 경영감독 중시

(2) 감사와 감사회

감사는 이사(회계참여설치회사의 경우 회계참여 포함)의 직무집행을 감사하고(회사법 제381조 제1항), 감사는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그리고 감사는 언제든지 이사와 회계참여 및 지배인 그 밖에 사용인에 대하여 사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고, 또한 회사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한 상황을 조사할 수가 있다(회사법 제381조 제2항).

감사회(Board of Company Auditors)를 둔 회사는 감사 3인 이상으로 회의체를 구성하여야 하고, 이 감사회의 절반 이상은 사외감사이어야 한다(회사법 제335조 제3항).

감사회제도는 감사기능의 충실 및 강화를 목적으로 1993년의 구·상법특례법의 개정에 의해 사외감사제도의 설치강제와 더불어 제도화된 것이다. 당시에는 감사 3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1인은 사외감사로 하여야 한다고 정했으나, 2001년 12월의 상법 등의 개정에 있어서 이사의 책임 일부면제 및 한정제도와 주주대표소송에서의 화해제도를 도입하게 됨에 따라, 감사기능 강화의 필요성 차원에서 감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과반수이상은 사외감사로 선정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내용은 2005년 회사법 제정 시에도 그대로 반영되었다.

현행 일본의 회사법상 감사의 임기는 최초 선임된 지 4년 내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시까지로 되어 있고, 비공개회사의 경우는 정관으로 감사의 임기를 10년으로까지 정할 수도 있다(회사법 제336조 제1항 및 제2항). 감사의 임기는 4년까지 보장받은 것이 되므로 이어나 회계참여의 임기인 2년보다도 장기에 해당되어 감사의 독립성이 확보된 것으로 보고 있다.⁹³⁾

(3) 회계감사인

회사법상 대회사 또는 위원회설치회사는 회계감사인(공인회계사 또는 감사법인)을 두어야 한다(회사법 제327조, 제328조). 회계감사인은 회사의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연결재무제표를 감사하고, 감사보고서(accounting audit reports)를 작성하여야 하며, 회계장부 및 관련 자료 등을 조사 및 복사할 수 있다(회사법 제396조 제1항 및 제2항).

회계감사인은 공인회계사(Certified Public Accountant) 또는 감사법인(Audit Firm)이어야 하며, 회계감사인으로 선임된 감사법인은 구성원 중에서 회계감사인의 직무를 총괄할 자를 지명하여 회사에 통지하게 된다(회사법 제337조 제1항 및 제2항). 회계감사인의 결격사유로는 ① 공인회계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 할 수 없는 경우, ② 회사의 자회사, 이사, 회계참여, 감사 또는 자회사의 집행임원으로부터 공인회계사 또는 감사법인의 활동이외의 일로 지속적인 보수를 받는 경우(보수를 받는자의 배우자 포함), ③ 감사법인의 사원중 절반이상이 상기 ① 또는 ②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회사의 회계감사인으로 선임될 수 없다(회사법 제337조 제3항).

93) 서성호, 전계논문 pp.128.

회계감사인의 임기는 선임된지 1년 이내의 정기주주총회까지이며, 정기주주총회에서 특별한 결의가 없는 한 계속되는 것으로 한다(회사법 제338조 제1항 및 제2항). 회계감사인은 언제든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해서 해임될 수 있으며, 회계감사인에서 해임된 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에 대해 해임에 따라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회사법 제399조 제1항 및 제2항).

일반적으로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회계감사인이 해임되나,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주주총회가 아닌 감사가 회계감사인을 해임할 수 있다. 이를 확장하게 되면, 감사회를 설치한 회사인 경우나 감사회,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회사의 경우는 감사위원회가 각각 감사를 대신하여 회계감사인을 해임할 수 있음이다(회사법 제340조 제1항, 제4항 및 제5항).

회사의 감사나 감사회, 감사위원회가 해임을 결정할 경우 해임 요건을 판단할 때 감사 등의 자의적인 판단이 가미될 경우 회계감사인의 독립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지배구조 측면에 매우 우려될 만한 사항으로 판단된다.

(4) 감사위원회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그 구성원은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정해진다. 감사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는 사외이사로 구성되어야 하는데, 감사위원은 집행임원, 회계참여, 지배인 및 그 밖에 사용인을 겸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회사법 제400조).

감사위원회는 이사, 집행임원, 회계참여의 업무집행을 감사하고,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회계감사인의 선임과 해임 및 그와 관련하여 제출되는 주주총회 안건내용을 검토할 권한을 갖고 있다(회사법 제404조 제2항).

회계감사인은 주주총회에서 선임 또는 해임되기는 하지만(회사법 제329조 제1항, 제339 제1항),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는 감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게 되므로 그 사이에 이사회가 개입하여 그 결정된 의안에 수정 등을 가할 수는 없는데, 이것은 회계감사인의 독립성 담보를 위해 이사회가 개입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설계된 것이다. 특히, 감사위원회와 회계감사인은 감사활동을 같이 수행해야 하는 기관이라는 점에서 밀접한 관계를 가져야 하므로, 회계감사인의 인사에 있어서도 전적으

로 감사위원회의 의견을 반영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견해가 주도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우리와 기업사회적 배경이 유사한 일본에서 특히 비영리법인에 대한 특수감사제도가 운영되고 있음에 따라 본 논문의 취지에 입각하여 약간의 검토를 해 두고자 한다.

3) 비영리 법인에 대한 특수감사

(1) 비영리법인의 운영

일본에서는 2008년도 법인제도 개혁을 통해 일반법인이 공익성 인정절차를 거쳐서 될 수 있는 공익법인이 존재하는 형태로 재편하였고,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개념 역시 공익법인과 일반 법인중 비영리형 법인으로 분화되었다. 비영리법인 중 공익법인에 대하여 세제상의 혜택을 주는 규정들이 만들어졌다. 따라서 법인세의 면제대상인 공익법인은 일반재단법인, 일반사단법인(비영리법인), 학교법인, 공익사단법인, 공익재단법인 및 일본 구 민법 제34조의 법인, 사회복지법인, 종교법인, 공공법인에 포함되지 않는 각종 사업단을 통틀어 지칭하게 되었다. 이후 예를 들면, 종교단체의 경우는 종교법인법으로 해당 단체의 회계보고를 의무화하게 되었는데, 성직자에 대한 특별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지만 실제로 저소득자가 많아 세금을 내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또한, 일본은 NPO(Non-Profit Organization)법인에 대한 정보공개 및 감독 규정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다. NPO법인이란 1998년도에 시행된 「특정비영리활동촉진법」에 의거하여 법인격을 얻은 ‘특정 비영리활동법인’을 말한다. 따라서 일정요건을 충족하고 국세청장의 인정을 받은 특정 비영리활동법인을 NPO법인으로 부르고, 이들에 대해서는 기부금에 대해 세제상 우대조치를 해 주고 있다. NPO법에서는 NPO법인의 정보 보고 및 검사(NPO법 41조), 개선 명령(NPO법 42조), 설립인정의 취소(NPO법 43조)에 대한 규정과는 별도로 NPO법인에 대한 폭력관련단의 참여를 배제하는 일환으로 경찰청장관, 경시총감, 도도부현 경찰본부장과 관할청 등과의 사이에 의견청취의 수단도 규정하고 있다. 인정NPO법인이 되기 위해서는 공익적인 활동에 관한 요건,

public support test, 운영조직·경리의 적정성 요건, 정보공개적 적정성 요건, 사업활동의 적정성 요건, 설립 후의 경과연수 요건, 부정행위 등 금지요건, 관할청의 증명요건 등을 통과하여야 한다. 운영조직·경리의 적정성 요건에서 인정 NPO법인은 회계에 대해서는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고, 녹색신고법인과 동등하게 거래기록과 장부를 보존해야 하며, 부적정한 경리를 실시하지 않아야 하며, 운영조직 및 경리에 대한 일정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2) 비영리법인의 회계기준

미국과는 달리 일본은 비영리법인별로 별도의 회계기준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미국은 회계기준에 대하여 비영리법인의 유형별로 회계지침 등을 정하지 않고, 모든 비영리법인에 적용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회계기준서를 제정하여 그에 따르는 일원적 접근방법(FASB의 비영리회계기준서)을 취한다. 그러나 일본은 비영리법인에 대해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이 아닌 병원, 교회 등으로 각각 구분하여 별도의 기준을 제정하여 운영하는 다원적 접근방법을 취하고 있다.

그에 반해 우리나라에서는 「비영리조직의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지침서」⁹⁴⁾가 존재하고 있는 동시에 각 유형별로도 다른 회계기준이 있으므로 미국과 일본의 절충 형태를 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본은 1972년부터 비영리법인·공익법인의 회계기준인 공익법인회계기준을 제정하여 운영하다가, 2009년 4월 내각부의 ‘공익인정등(等) 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공익법인회계기준’을 제정하게 되었다. 회계기준과 그 주석은 공익법인회계기준에서, 별표와 각종양식 등은 공익회계법인 회계기준 운용지침에서 정하게 되어있다. 1998년에 도입된 NPO법인의 회계에 대하여는 회계전문가, NPO단체, 정부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NPO회계기준책정위원회’가 주도하여 2010년 7월에 ‘NPO회계기준’을 제정하도록 하였다. NPO법인은 공익법인에 비하여 소규모 단체가 많으므로 공익법인 회계기준보다 쉬운 수준의 회계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의료기관의 경우에도 별도의 회계기준을 제정하여 운용되고 있다.

94) 한국회계연구원, 「비영리조직의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 지침서」, 2003.

(3) 비영리법인 회계정보의 공개

일반재단법인이나 일반사단법인은 사원과 채권자에 대해서만 정보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으나,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재무제표와 사업보고서 등을 사업연도의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공익인정등(等)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주된 사무소에 그것을 비치하여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공익법인으로부터 각종 보고서 등을 제출받은 ‘공익인정등(等) 위원회’는 그 정보에 대해서 웹 사이트에 올려놓고 열람을 신청하는 일반인들에게 공개하고 있다.

정보공개에 있어서도 지분 있는 사단의료법인, 특정의료법인, 특별의료법인은 사원, 채권자에게 공개의무가 있다. 특히 사회복지법인은 사업보고서를 사무소에 비치해두어 이용자가 이용하기 쉽도록 정보공개의무가 부과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민간단체가 국세청으로부터 비영리법인에 관련된 정보를 받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게 되고 그에 관한 정보를 공개한다. 그러나 일본은 모든 비영리법인의 정보를 총무성이 정리하여 공표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음이 특색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정부나 민간단체의 비영리법인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활동은 극히 미약한 상황이다. 미국의 경우는 IRS에 제출되는 신고서의 자료가 가이드스타(Guidestar) 등을 통해서 공개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높은 수준의 정보공개가 이루어지고 있고, 일본의 경우도 국가소관 공익법인에 대해 업무, 재무 등에 관한 자료를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자료 공개를 권장하고 있다. 이렇듯 전체 비영리단체의 정보공개 수준을 비교하여 보면 우리나라와 일본은 그 형식에서 유사한 반면, 미국과 비교한다면 아직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정보공개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우리나라와 일본은 관할청에서 가산세 또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방식을 취하고 있지만, 미국의 경우는 IRS에서 비영리면세단체를 관리 하기 때문에 벌금(penalty)이 부과된다는 점이 차별화되고, 부과방식에 대해서도 일률적인 금액이 부과되지 않고 위반기간이 경과할수록 부담액이 증가하는 형태이며, 이로 말미암아 자발적인 시정효과가 있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음이 특이점이다.

(4) 비영리법인에 대한 외부감사

일본에서는 자산이 100억엔 이상이거나 부채가 50억엔 이상 또는 수지결산액이 10억엔 이상인 비영리법인은 공인회계사 등에 의한 외부감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그리고 정부기관으로부터 1천만엔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대학은 외부감사를 의무화하고 있다.

4) 감사의 권한 및 자격

(1) 감사의 직무권한

감사의 직무권한에 관하여 회사법 제381조에서는 먼저 「감사는 이사(회계참여설치회사에 있어서는 이사 및 회계참여)의 직무집행을 감사한다. 이 경우에 감사는 법무성승의 정함에 따라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회사법 제381조 제1항)고 하여 감사의 일반적인 직무를 규정한 후, 다음으로 「감사는 언제든지 이사와 회계참여 및 지배인 그 밖의 사용인에 대하여 사업의 보고를 요구하고, 또한 감사설치회사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한 상황을 조사할 수가 있다」(회사법 제381조 제2항)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감사설치회사의 자회사에 대해서도 사업의 보고를 요구하고, 또는 그 자회사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조사할 수가 있다」(회사법 제381조 제3항)고 함으로써, 이사 등에 대한 보고청구권과 재산상황의 조사권 및 자회사조사권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감사의 자회사조사권과 관계하여 회사법 제381조 제4항에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자회사는 모회사 감사의 보고요구 및 조사권에 대한 거부를 행사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위의 법문에서 처럼 감사는 이사(회계참여설치회사에 있어서는 이사 및 회계참여)의 직무집행을 감사하는 것이 주된 임무이고, 여기에서 직무집행이란 원칙상 회계감사와 업무감사를 포함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그러나 회계감사인을 설치하지 않는 비공개회사 중 감사회를 두지 않고 복수의 감사를 두는 회사① 이사회를 설치함으로써 감사회를 설치할 수 없으나 개별적

으로 복수의 감사를 선임하는 회사, ② 이사회를 설치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감사회를 설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감사를 두는 것도 강제되어 있지 않으나 오히려 감사를 선임하고 있는 회사)의 경우는 정관으로 감사의 권한을 회계감사에 한정시키는 것도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다(회사법 제389조 제1항).

이에 관해서는 앞서 밝힌 바와 같이 1950년 상법개정 전에는 감사의 직무권한은 회계감사뿐만 아니라 업무감사를 포함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1950년 개정상법으로 이사회가 도입됨에 따라 감사의 직무권한은 회계감사에 한정하는 것으로 축소되었다가 1960년 후반부에 들어와 산양특수제강사건을 필두로 하는 거대분식결산 사건들이 사회문제화 되어 감사의 권한강화가 요구되어짐에 따라 감사제도의 강화차원에서 이루어진 1974년 개정상법에서 감사의 직무권한을 다시 업무감사로까지 확대시키는 조치를 취하게 되었는데, 이처럼 감사의 권한을 다시 강화할 필요가 있었던 것은 문제의 주된 원인이 대규모회사의 분식회계에 기인된 것이라는 인식이 강하게 나타났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1974년에 제정된 상법특례법에서는 대규모회사(자본금 총액이 5억엔 이상 또는 최종대차대조표상의 부채총액이 200억엔 이상인 회사)의 감사 강화에 집중시켜 대규모회사는 감사에 의한 감사외에도 회계감사인의 감사를 의무화하는 한편, 소규모회사(당초에는 자본금 1억엔 미만인 주식회사로 설정된 이후, 1981년 개정으로 자본금 1억엔 미만이고 부채총액이 200억엔 미만인 주식회사로 변경됨)의 경우는 감사의 권한을 개정 이전과 같이 회계감사에 한정되는 것으로 정함에 따라, 중규모회사(자본금총액이 1억엔 이상 5억엔 미만, 부채총액이 200억엔 미만인 주식회사)에서는 감사에 의한 감사만이 의무로 되어지면서 감사는 회계감사뿐만 아니라 업무감사를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주식회사가 자본금총액과 부채총액을 기준으로 3가지유형의 감사체제를 갖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형태의 일본의 회사법상 감사제도의 틀이 이후 회의체 기관인 감사회제도의 도입으로 변형되어졌다가 2005년의 (신)회사법제의 탄생을 시점으로 상기한 회계참여 및 이하에서 설명하는 감사위원회제도의 선택적인 도입에 따라 더욱 복잡 다양화되어 진 것이다. 그러나 입법전체에 있어서 한 가지 명확한 기준은 변함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대기업의 경우는 선택적

이면서도 감사기능의 강화라는 차원이, 중소기업의 경우는 선택적이면서도 좀 더 자율성을 보장하는 차원의 이중적인 기준이 채택되고 있으면서도 전반적으로 감사의 실효성과 효율성에 집중되어 있음이 그것이다.⁹⁵⁾

(2) 감사의 자격

감사는 기본적으로 이사의 자격등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회사법 제335조 제1항). 그러므로 자연인에 한정되어 법인은 감사가 될 수 없음은 물론이고, 미성년자와 그 법정대리인, 일정한 범죄를 저지른 자도 감사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개개의 회사사정에 비추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정관의 정함에 따라 그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공개회사의 경우는 감사가 주주이어야 함을 정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리고 감사는 당해회사 또는 자회사의 이사, 지배인 그 밖의 사용인, 당해회사 및 자회사의 회계참여(회계참여가 법인의 경우에는 직무집행자) 또는 집행임원을 겸해서도 안 된다(회사법 제335조 제2항, 제333조 제3항 제1호, 제327조 제4항).

한편, 감사회설치회사의 경우에는 감사는 3인 이상으로 하되, 그 중의 과반수이상은 사외감사가 아니면 안 되는 것으로 하고 있다(회사법 제335조 제3항). 이 감사회제도는 대규모회사에 있어서 감사제도의 충실 및 강화를 목적으로 한 1993년의 구·상법특례법의 개정에 의해 사외감사제도의 설치강제와 더불어 제도화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다.

(3) 감사의 임기

감사의 임기는 선임 후 4년 이내에 종료하는 사업연도 중의 최종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시까지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회사법 제336조 제1항). 공개회사가 아닌 회사의 경우는 이사와 회계참여의 경우와 같이(회사법 제332조 제2항, 제334조 제1항) 정관으로 감사의 임기를 10년 이내에 종료하는 사업연도 중의 최종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시까지로 연장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회사법 제336조 제2항). 이처럼 공개회사가 아닌 회사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

95) 서성호, 전개논문 pp.136 이하 참조.

(2년)와 회계참여(2년) 보다도 감사의 임기를 길게 법정한 것은 감사의 지위를 강화하여 그 임무의 독립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감사의 이러한 임기는 이사나 회계참여의 경우와 달리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해서도 단축시킬 수 없다(회사법 제332조 제1항 단서, 제334조 제1항과 비교). 그러나 임기 만료 전에 퇴임한 감사의 후임으로 선임된 감사의 임기에 관해서는 이러한 원칙의 예외로 정관으로 퇴임한 감사의 잔여임기의 만료까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회사법 제336조 제3항), 임기 중이라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해 언제든지 해임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회사법 제339조 제1항, 제343조 제4항, 제309조 제2항 제7호).

그리고 법률 또는 정관의 정함에 의한 임기만료전이라도 정관변경에 의하여 감사를 둔다는 뜻의 정관을 폐지하는 경우와 위원회설치회사가 되는 경우에는 감사의 임기는 당해 정관변경의 효력이 생기는 때에 만료되고(회사법 제336조 제4항 제1호, 제2호), 또한 정관변경에 의해 감사의 감사범위를 회계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는 뜻의 정관의 정함(회사법 제389조 참조)을 폐지하는 경우에도 당해 정관변경의 효과가 생기는 때에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하였으며(회사법 제389조 제3호), 더욱이 공개회사가 아닌 회사가 정관변경에 의하여 공개회사가 되는 경우에도 당해 정관변경의 효력이 생기는 때에 감사의 임기가 만료되는 것이다(회사법 제389조 제4호).⁹⁶⁾

5) 일본 감사제도의 특징 및 시사점

(1) 감사제도 특징

일본 기업지배구조는 종업원 중시형의 지배구조가 조금씩 주주 중시의 방향도 가미되어가는 식으로 바뀌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일본고유의 구조

96) 이점, 법문언상으로는 회사법 제10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이 폐지된 경우만을 정하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입법취지로부터 파악하게 되면, 모든 종류주식에 양도제한의 정함이 있는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회사에서 그 일부 또는 전부의 종류주식에 대하여 양도제한의 정함을 폐지하는 것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규정은 정관의 정함으로 임기가 신장된 경우에 공개회사로 전환하는 정관변경 후에도 그 신장된 임기를 유지한다고 하는 것은 적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련된 규정일 것이다.

를 바로 버릴것으로는 보이지는 않으며, 오히려 경영투명성 확보와 시장규율이라는 보편적 요소에 맞추어 꾸준히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이는 위원회 설치회사가 늘어나고 사외이사제도가 강화되는 등의 성과가 가시화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감사회를 유지하는 기업에서도 집행임원제를 도입하거나 사외이사제를 강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일본과 한국이 서로 유사해지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일본의 감사제도는 영미식 일원적 시스템과 독일식 이원적 시스템중 어느 시스템에도 속하지 않는 중간적 형태인 ‘병립적 시스템’이라는 점에 특이성이 있다. 즉 경영을 담당하는 이사와 경영에 대한 감사를 하는 감사가 모두 주주총회에서 선임된다는 것에서 감사하는 기관과 감사를 받는 기관이 대등하고 병립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기업경영(업무집행)에 대해서는 감사에 의한 감사와 이사회 감독이 중첩적으로 이루어지는 체제이기 때문이다.⁹⁷⁾ 그리고 일본의 감사제도에 대한 법률규제는 기업규모에 따라 차별화되어 있음이 특색이다..

또한 감사회제도의 강화는 물론이거니와 이사회 경영감독 기능도 강화되어 이사회 기능이 감독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더하여 외부 모니터링 기능과 달리 업무 집행에 능동적인 사내 모니터링 기능도 강화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최근에는 독립이사에 관한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감사의 독립성 측면도 강조되고 있음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하겠다.

(2) 일본감사원의 독립성 관련 관심사

최근 일본에서는 국회의 헌법조사위원회가 내각수상들에 대한 시정조치 및 권고가 실행되지 못하게 되어 있어 회계감사원의 재정통제 기능에 한계가 많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이는 회계감사원의 권한 미흡으로 국회의 행·재정

97)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전개논문 pp.44.

통제가 미흡하다는 지적과 변상책임 요구 및 이해관계자의 심사요구에 대한 심사결정 등 재판적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그 권한을 명기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⁹⁸⁾

또한, 국회에서의 결산심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결산에 대한 예산과의 연계가 미흡하며, 성과감사의 수행시 정치적 중립성을 신중히 고려하되 감사원 독자적 가치판단은 정책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배제하고 있어 정책의 변화를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회계감사원의 직원은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을 통해 채용됨에 따라 행정부의 한 기관으로 간주되고 진출된 재무성출신의 관료들이 사무총국의 차장 등 중요한 직책에 임명되어 회계감사업무를 지휘하고 있는 실정이고, 회계감사원의 인건비가 재무성의 예산심의 및 인사권도 공무원 채용규정에 의해 제약을 받아 회계감사원의 정원(인사)을 완전히 독립적으로 운영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그리고 이중예산제도 도입을 통해서 예산의 독립성은 보장받고 있으나 실제로는 내각의 다른 행정기관과 크게 다르지 않게 재무성의 심사를 받아서 예산을 확보하고 있고 예산사용에도 항목별로 제한받고 있다는 지적도 있어, 이러한 문제점들이 종합되어 일본 감사원의 독립성과 관련하여 관심사로 주목받고 있다.

(3) 시사점

일본의 감사제도 역시 투명성과 독립성 측면이 강조되고 있는 점은 어느나라와 다를 바 없다고 본다. 그러나 일원적 체제와 이원적 체제 중 어느 한쪽으로 기울지 않고 있으면서, 감사제도의 강화와 이사회와 감독기능을 모두 충실화하는 것에 중점이 맞추어져 검토되고 있음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를 하겠다. 그러나 위원회설치회사 등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은 국제경제 논리에 의해 변화되는 모습으로 비추어져 여러 가지 형태로 작용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98) 감사연구원, “해외 감사원의 감사제도 연구”, 2014, pp.40-44.

5. 중국의 감사제도

중국은 아직 통일된 상법전이 없기 때문에 중국에서 회사와 관련된 법률중 가장 중요한 법은 회사법이라고 볼 수 있다. 중국 회사법상에 회사의 유형은 주식유한회사(이하 “주식회사”라고 한다)와 유한책임회사(이하 “유한회사”라고 한다)로 구분된다.

주식회사의 조직기구는 주주총회, 이사회, 감사회와 경리(經理)가 있다. 주식회사의 내부감독에 대하여 1993년 중국 회사법은 감사회의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으로 하였고, 감사회 외에는 2001년 이사회에 독립이사제도를 새로이 도입하였다. 2005년 개정된 회사법에서 상장회사는 독립이사를 두어야 하고, 이의 구체적인 운영 방법에 관해서는 국무원(國務院)에서 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상장회사의 독립이사제도 도입을 입법적으로 확정하였다. 따라서 중국의 주식회사 감독기관은 주주의 감독권⁹⁹⁾ 외에 상장회사의 경우 감사회와 이사회내의 독립이사제도가 공존하고 있고, 기타 비상장회사의 경우에는 감사회만 두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중국 감사제도에 대한 내부인 통제, 회계감사제도, 법인감사제도의 도입에 관한 최근동향을 순차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내부인 통제

중국 중앙정부는 2013년 11월 12일 공산당 제18회 삼중전회(三中全會)에서 국유기업과 국유자산에 대한 개혁내용이 포함되어진 「중국 공산당 중앙정부의 전면적 심화개혁 일부 중대문제에 대한 결정(이하 “중대문제의 결정”이라 한다)」을 공포하였다.¹⁰⁰⁾

99) 주주의 감독 기능에 대하여 중국 회사법 제33조(株主의 査閱權) “주주는 회사정관, 주주회의 기록, 이사회의 결의, 감사회의 결의 및 재무회계 보고서를 열람하거나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 또한, 주주는 회사의 회계장부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주주가 회계장부 열람을 요구할 경우에는 회사에 서면으로 신청하고 그 목적을 설명해야 한다. 회사는 주주의 회계장부열람요구에 부당 목적이 있어 회사의 합법적 이익에 손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경우, 그 열람신청을 거절할 수 있으며, 동시에 주주의 서면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내에 주주에게 서면으로 답변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회사가 열람을 거절할 경우, 주주는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출하여 회사의 열람허용을 요구할 수 있다.”

이 중대문제의 결정 중 일부는 국유기업의 개혁에 대한 전반적인 구상 발표와 최초로 국유기업 개혁의 핵심 목표인 혼합소유제경제(混合所有制經濟)¹⁰¹⁾의 개념을 제기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제18회 삼중전회에서 명확히 혼합소유제경제의 발전이 제기된 이후 이 문제가 주목받게 되었다.

이어서 2013년 11월 21일에는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國有資產監督管理委員會, 이하 “국자위”라고 한다) 연구센터의 추쉬핑(楚序平) 주임이 인터뷰를 통해, 더 많은 국유경제와 여타 소유제경제를 혼합소유제경제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허용하고, 혼합소유제경제로의 적극적인 발전은 새로운 국유기업 개혁의 핵심과제라고 밝혔다. 혼합소유제의 발전은 현대화 대량생산 수요에 부합하며, 혼합소유제 경제에서만 효율적으로 국유자본의 견인력을 확대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고, 또한 “100%를 가지고 100%를 이끌어 낸다면 이는 결국 1에 불과하지만 1%를 가지고 99%를 이끌어 낸다면 이것이야말로 능력이고 각종 소유제의 상호촉진 및 공동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앞으로 더 많은 국유경제가 혼합소유제경제로 전환되는 것을 허용해 2020년경에는 대다수 국유기업이 지분다원화를 실현함으로써 특수한 분야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유기업이 혼합소유제기업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하면서, 국유자본은 필요에 따라 절대주주, 상대주주, 참여주주를 실시해 우선주, 자사주와 같은 형식을 시행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이 혼합소유제경제가 제기된 이후에 “국퇴민진(國退民進)”의 소리가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예컨대, 공유제가 주체로 된 기본적인 경제제도에 악영향이 미치지 않겠느냐는 우려의 소리와, 회사를 혼합하는 과정에 국유자산유실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우려의 소리가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현재 혼합소유제기업들의 제일 큰 문제는 혼합소유제기업의 회계감사

100) 중국의 상장회사는 국유기업으로서 기업혁신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내부인 통제(內部人統制, internal control)의 문제, 국유주(國有株: 국가가 소유한 주식)의 “일주독대(一株獨大)”의 현상이 보편적이다.

101) 혼합소유제란 정부 지분 일부를 민간자본에 매각, 지분 구조를 다각화함으로써 경영에 시장의 기능강화를 접목시킨 제도이다. 민간 지분을 최대 30%까지 허용하고 정제유 판매 사업 분야에 민간자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혼합소유제는 국유기업에 편중된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가 경제를 건진하게 발전시키려는 취지에서 나온 정책이다. 즉 한 소유제 구조 중에 국가(國家)소유, 단체(團體)소유 등 공유제(公有制)경제 외에 개인(個人), 사영(私營), 외국인투자(外國人投資) 등 비공유제(非公有制)경제도 포함해야 한다.

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에 있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중국 국영 기업에 국유자산유실문제의 방지 그리고 내부인 통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의 개정, 회사지배구조, 회계감사제도의 도입, 내부감독시스템의 개선 외에 회사 채권자의 감독도 매우 필요하다는 것이다. 즉, 독일의 경우, 은행이 회사의 감사회에 참석하고 회사를 감독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과 같이, 중국에서도 회사의 최대 채권자로서의 은행이 회사를 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매우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으로 풀이 된다.

2) 회계감사제도

(1) 회계감사제도 의의

2013년 5월 7일에 중국 증감회 및 중국 재정부(財政部)와 미국의 PACOB이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하였다. 따라서 중국 증감회는 2013년 7월 9일에 미국의 협조요청에 따라 미국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일부 중국회사의 회계 원본을 준비하여 미국에 제공하였다. 이와 같은 MOU 체결은 중국 국제 회계감사의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현행 중국 회사법 제163조 규정에 따르면, 회사는 법률, 행정법규 및 국무원 재정주관부문의 규정에 따라 당해 회사의 재무제도와 회계제도를 수립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회사법 제164조에 의하면, 회사는 회계연도가 종료될 때 재무회계보고서를 작성하고, 법률에 따라 회계사사무소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법률, 행정법규 및 국무원 재정부서의 규정에 의거하여 재무회계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감사는 “회계감사제도”의 필요상설기관과 차이가 있음이다.

또한, 회사가 회계감사업무를 수행하는 회계사를 고용하거나 해임할 경우에 회사정관의 규정에 따라 주주총회, 주주회의 또는 이사회에서 결정하고, 회사의 주주총회, 주주회의 또는 이사회가 회계사사무소의 해임을 표결할 경우, 회계사사무소의 의견 진술을 허용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회사법 제169조). 그리고 회사는 고용한 회계사사무소에 대해 진실하고 완벽한 회계장

부, 재무회계보고서, 회계증빙 및 회계자료를 제공해야 하고, 제공을 거절하거나 은닉 또는 허위로 날조해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였다(회사법 제170조). 이 규정에서는 회사법 제164조에 규정한 감사와 다른 감사제도를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법정성, 전문성, 상설성, 외부성을 가진 회계감사제도로 볼 수 있다. 또한 이 회계감사제도는 중국의 회사지배구조에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동 규정은 회사에 대한 본질적 감사는 회사지배구조의 일부도 볼 수 있다고 한다. 그러므로 이 감사제도를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면 중국감사제도에 유익한 보충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2) 감사회 제도

① 감사회의 구성

중국 회사법 제51조 제1항은 유한책임회사가 감사회를 설치하는 경우는 그 구성원은 3인 이상이어야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회사법에서는 주주가 비교적 적고 규모가 작은 유한책임회사는 1인 또는 2인의 감사만을 두고 감사회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회사법 제117조에 의하면 주식회사의 경우는 감사회를 설치하여야 하고, 그 구성원은 3인 이상이어야 한다. 감사회는 주식(위원장) 1인을 두어야 하고, 부주식(부위원장)을 둘 수 있다.

또한 감사회 주식과 부주식은 전체 감사의 과반수로 선출한다. 감사회 주식은 감사회 회의를 소집 및 주재한다. 감사회 주식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이거나 수행하지 않을 때에는 부주식이 감사회 회의를 소집 및 주재한다. 부주식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수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반수의 감사가 공동으로 선출한 1인의 감사가 감사회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그리고 이사, 고급관리인원은 감사를 겸임할 수 없다. 회사법 제52조의 유한회사 감사의 임기에 관한 규정은 주식회사의 감사에도 준용된다.

감사회는 중국 회사법 제51조, 제117조 규정에 의해 주주대표와 일정한 비율의 종업원대표로 구성된다. 이는 상장회사의 경우 “경영자지배”의 현상이 쉽게 일어나기 때문에 중국 회사의 관리구조를 주주총회, 이사회, 감사회 그

리고 경리별로 구별하고, 각 구조의 기능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회사 운영에 실효성을 보장하고자 한 조치였던 것이다.

② 감사의 자격

중국 회사법 제51조, 제117조 규정에 따라 이사, 고급관리인원은 감사의 지위겸임이 금지된다. 또한 회사법 제146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감사의 자격을 소극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즉, 민사행위능력이 없거나 민사행위능력을 제한받는 자, 부패, 재산남용, 재산침점(財産侵占) 또는 사회주의 시장경제질서를 교란시키는 혐의로 형사 처벌되고 집행기간의 만료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범죄로 인하여 권리를 박탈당하고 집행기간의 만료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파산한 기업의 이사와 공장장, 경리를 담당하면서 해당 기업의 파산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자로 해당 기업의 파산절차가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위법행위로 영업허가서가 말소되어 폐업된 기업의 법정대표자를 담당하면서 그에 대한 개인책임이 있는 자로 해당 기업의 영업허가서가 말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사적으로 비교적 큰 금액의 채무가 있으면서 상환 기일에 도달하였는데 상환하지 못한 자 등이 있다.

그리고 회사가 앞의 규정을 위반하여 감사를 선임 또는 위임하는 경우에는 무효가 되고, 감사가 임기 내에 위의 경우에 해당하게 되면 회사는 감사의 직위를 해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감사가 임기기간 내에 위의 경우에 해당하게 되면 직무를 해제하고 해임하여야 하며, 이때는 새로운 감사를 선임해야 한다. 이러한 소극적인 제한 외에도 감사의 자격과 관련된 이사, 고급관리인원의 친족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의 회피 여부, 그리고 감사가 복수회사의 감사위원인 경우 담당 제한 등의 문제가 제기 될 수 있으나 이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다. 그리고 법인이 감사회의 위원으로 선임될 수 있는지 여부도 문제가 되고 있으나 역시 이에 관한 명확한 규정도 없다.

③ 감사의 선임

종업원 참여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감사회는 주주의 이익을 대표하므로 주주총회에서 감사를 선임한다. 주식회사의 발기설립 시에는 발기인이 감사를

선임할 수 있고, 모집설립 시에는 창립총회에서 감사를 선임한다. 유한회사의 감사는 회사 정관으로도 규정할 수 있고, 법원도 선임할 수 있다. 종업원 참여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감사회는 주주대표와 종업원대표로 구성하고, 주주대표는 주주총회에 선임하며, 종업원 대표는 회사의 종업원들이 민주적인 방식으로 선임하게 된다(중국 회사법 제51조, 제117조). 이 경우 감사회는 회사와 종업원의 이익을 모두 대표한다.

한편, 중국 회사법은 감사의 선임과 관련된 규정은 있지만, 감사 선임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 감사의 지명은 직접적으로 감사회 구성원의 특성과 소양에 관련이 있다. 하지만 감사회는 이사회와 분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선임된 감사는 대부분이 내부감사로 되어 있고, 각종의 행정업무를 겸임하는 경우가 다수이다.

④ 감사의 임기

중국 회사법 제52조는 감사의 임기를 3년으로 하고 임기가 만료되면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감사의 임기가 만료되었으나 다른 감사를 선임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감사가 임기 내에 사직해서 감사회 인원수가 법정 인원수보다 낮은 경우에는 새로운 감사가 선임될 때까지 연임된다.

감사의 선임 자격은 이사와 같지만, 이사, 고급관리인원이 감사를 겸임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감사에 대한 해임 원인과 방법도 이사와 기본적으로 비슷하다. 즉,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나 선임 자격을 상실해서 해임된 경우 등이다.

그리고 감사의 임기와 이사의 임기가 같은 경우와 감사의 연임 문제에 대하여 견해가 대립된다. 일반적으로 감사회의 임기는 이사회와 같거나 비교적 긴 경우가 많다.¹⁰²⁾ 하지만 감사의 임기가 지나치게 길 경우 회사감독기관으로 회사의 상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장점이 있겠지만, 중립적인 시각에서 주주와 회사의 이익보호라는 감사 본연의 역할을 하기 보다는 현 경영진간의 이익에 편승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사의 임기보다 긴 임기보장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102) 楊文珠, “股份有限公司監事會制度的重構”, 博士學位論文, 對外經濟貿易大學, 2005, pp.56-57.

감사의 해임에 대하여 감사회 또는 감사회를 설치하지 않는 회사(유한회사)의 감사는 회사의 이사, 고급관리인원의 업무집행행위를 감독하여 법률, 행정법규, 회사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를 위반하는 이사, 고급관리인원에 대한 해임안을 제안 또는 제기할 수 있다(회사법 제53조 제2항).

(3) 감사회의 권한과 책임

① 감사회의 권한

회사의 발전에 따른 회사규모의 확대는 그 통제의 필요성을 증대시킨다. 중국 회사법 제53조는 감사회 또는 감사의 일반적인 권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감사회 또는 감사회를 설치하지 않는 회사의 감사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즉, ㉠ 회사 재무의 검사, ㉡ 이사, 고급관리인원의 회사직무를 집행·감독하고, 법률·행정법규 또는 회사정관 위반한 이사, 고급관리인원의 파면과 건의, ㉢ 이사, 경리의 행위가 회사의 이익에 손해를 초래할 때, 그 행위의 시정요구, ㉣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제의, 이사회가 본 법의 규정에 따라 주주총회를 소집 및 주재하지 않을 경우, 주주총회의 소집 및 주재, ㉤ 주주총회에 제안 제출, ㉥ 본 법 152조 규정에 따른 이사 및 고급관리인원에 대한 소송 제기, ㉦ 회사정관에서 규정한 기타 권한 등이 있다. 또한, 회사법 제54조는 감사의 질의제안권(質詢建議權)과 조사권(調查權)을 규정하고 있는데,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이사회 결의사항에 관하여 질의 또는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감사회 그리고 감사회를 설치하지 않는 회사의 감사는 회사 경영상의 문제점을 발견하면 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수 있고, 필요할 때에는 회사의 부담으로 회계감사를 요청할 수도 있다.

2005년 회사법은 1993년 회사법의 규정에 비해 감사의 권한을 확대하여 감사회(감사)의 감독 기능을 강화시켰으며, 현행 중국 회사법 제118조는 동법 제53조, 제54조의 유한회사 감사회의 권한에 대한 규정은 주식회사의 감사회에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감사회의 책임

감사회의 책임의 범위는 각 나라별로 법계(法系)와 회사지배구조에 따른 차이가 있게 된다. 대륙법계의 회사법상 감사의 의무와 책임에 대한 규정은 주로 민사법에 기원을 두고 있고, 기타 규정은 주요 회사법과 기타의 법률에서 기원한다. 중국의 경우는 회사법 제6장에서는 감사 등 고급관리인원의 의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감사의 충실의무는 충성의무(忠誠義務; Duty of Loyalty)와 성실의무(誠信義務; Fiduciary Duty)라고도 볼 수 있지만, 감사는 회사에 대하여 충실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집행하여야 하며, 회사와 자신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경우 회사의 이익을 우선해야 된다는 것이다. 종전의 충실의무는 수탁인의 선관의무의 한 내용으로 법적 의무라기 보다는 도덕적 의무 정도로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충실의무의 가치가 재조명되어 중국에서도 회사법 제147조의 규정으로 입법화 하게 된 것이다.

일반적으로 감사는 회사의 경영관리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회사와의 이해가 상충되는 경우는 비교적 적지만, 회사와 주주의 이익보호의 관점에서 감사의 충실의무에 대한 규정을 이해할 수 있다. 감사의 충실의무 내용으로는 불법적인 소득의 금지(중국 회사법 제147조 제2항), 경업금지(競業禁止)의무, 자기거래금지(自我去來禁止)의무, 회사의 영업비밀 보장 의무 등을 내용으로 한다.

대륙법계의 선관주의의무와 비견되는 것으로 영미법계의 근면의무(duty of diligence care and skill)를 들 수 있다. 감사의 근면의무는 회사의 위임관계에 수반되는 관리의무라고 볼 수 있는데, 중국 회사법상에는 명확한 규정은 없고 실무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의무로 감사는 업무집행에 있어서 자신의 지식과 경험에 따른 주의의무를 부담하고, 성실하게 회사의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중국 회사법 제149조는 이사, 감사, 고급관리인원이 회사업무집행시 법률, 행정법규 또는 회사 정관을 위반하여 회사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감사는 불법행위를 한 경우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것으로 풀이 되고 있다.

감사는 회사법 제149조에서 규정한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유한책임회사의 주주 또는 연속 180일 이상 단독 또는 합계로 회사의 주식을 1% 이상

보유한 주주는 서면 형식으로 감사회나 감사회가 설치되지 않은 유한책임회사의 감사에게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하도록 청구할 수 있게 하고 있다(회사법 제151조 제1항). 만약, 이사회 또는 상무이사가 소송제기를 거절하는 경우 또는 급한 상황에 따라 신속히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경우로 인하여 회사가 중대한 손해를 입을 때에는 주주들은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이는 감사에 대한 민사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중국의 주주대표소송제도의 법제화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3) 중국 감사제도의 특징 및 개선점

(1) 중국 감사제도의 특징

2010년까지 중국 국유기업이 통제하고 있는 중국내·외의 상장회사는 336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¹⁰³⁾ 이러한 규모에도 불구하고 관련제도와 시장체계가 완비되지 못한 이유로 감사회의 독립성 부족의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형편이다. 주요 문제점으로 다음과 같은 지적들이 제기되고 있다.

첫째, 대주주가 자신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를 감사회의 구성원으로 추천하여 감사위원의 독립성을 저해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 둘째, 감사위원의 독립된 공간 부족의 문제가 있다는 점. 즉, 중국의 많은 회사에서는 감사회(감사)에 독립된 사무실을 제공하고 있지만, 작은 회사인 경우에는 사무실을 특별히 제공하지 않고 회의할 때마다 장소를 빌려서 쓰는 경우가 다수이다. 셋째, 감사위원의 책임으로 직무충실도가 떨어지며 이는 격려문제(보수문제)로 이어진다는 점. 넷째, 감사위원의 자격과 인원수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 중국 회사법 제146조는 감사의 자격에 대한 소극적 규정만이 존재하여 감사위원의 자격에 관한 적극적 요건의 불비, 감사위원의 합리적인 구성을 위한 인원비율의 조정 등의 난점이 있다. 다섯째, 감사회의 사후(事後)감독체계의 문제점 등이다.

중국 회사법 제53조, 제118조, 제55조, 제119조는 감사회의 권한과 회의제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에도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거

103) 창신연. “중국 주식회사 감사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가천대학교, 2014. pp.184.

른된다. 첫째, 감사회는 이사와 경영진의 업무집행권에 대한 감독권이 있으나 업무집행권을 감독하는 권리만 존재하고 위법행위유지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 둘째, 감사회의 재무감독권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미비하여 재무감독권에 대한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점. 셋째, 감사회의 감독권행사를 공동으로 하여야 하는 점에서 의사결정의 신속성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다는 점. 넷째, 감사회의 소집절차와 기한에 관한 규정이 정관으로 위임되어 있어 규정의 명확성이 요구된다고 하는 점. 마지막으로 감사회의 출석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고, 감사회에 출석하는 인원수의 비율과 절차 그리고 절차 위반시 결의의 법률적 효력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등이다.

그리고 중국 회사법 제148조 제5항에서는 이사, 고급관리인원에 대한 경업 금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감사에 대한 경업금지 의무에 대하여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또한 법적 책임과 관련하여 감사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면서 법률, 행정법규 또는 회사 정관에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감사의 불법행위로 인한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규정하고 있는 것인데, 여기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직무를 이행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 대한 책임 등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다.

그리고 중국 회사법 제122조에 따라 상장회사는 독립이사를 두어야 하고, 그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 규정에 의하면 중국은 상장회사에 있어서는 미국의 독립이사제도를 도입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겠으나 중국 회사법상 감사회와 독립이사의 권한 범위를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감사회와 독립이사 간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현상이 초래된다. 이러한 특징과 더불어 감독기능의 실효성과 중복되는 기구의 운영으로 운영자금이 증가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다.

중국 회사법 제53조에서는 감사회(감사)의 권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그 행사 방식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따라서 감사회의 결의 방식과 관련하여 1인 1표의 원칙에 의한 권한행사가 확립되어야 하고, 감사회의 회의기간 외에도 감사의 본연의 업무감독권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업무감독권의 실효성 있는 보장을 위해서는 회

사의 경영상황(구체적인 재무제표의 내용, 관련 회계보고서 등)에 대해 보고를 요구할 수 있어야 하고, 감사회의 감독권한의 범위는 경영진의 합법성에 대한 감독뿐만 아니라 합리성 즉 경영판단이 요구되는 부분까지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2) 중국 감사제도의 개선점

중국의 감사제도는 먼저 감사의 평가제도를 확립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비종업원감사에 대한 평가의 경우에는 주주가 비종업원감사의 후보자를 추천하고, 감사에 관한 평가체계를 수립하여야 할 것임을 의미한다. 그리고 평가기준을 통일적으로 규정하여 재직기간 동안의 직무 수행상황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이러한 평가결과는 주주의 비종업원감사에 대한 연임추천(連任推薦), 전임추천(轉任推薦), 추천여부의 근거가 될 것이다.

종업원감사에 대한 평가의 경우에는 상장회사의 종업원대표총회에서 종업원감사의 추천, 선임, 평가 등 관리방법을 수립해야 한다. 따라서 종업원감사가 정기적으로 종업원대표총회에 업무상황을 보고할 수 있는 제도를 둘 필요가 있다. 이러한 종업원감사의 임기기간동안에 업무수행 상황에 대한 평가결과는 종업원대표총회의 종업원감사 추천과 조정 여부의 근거가 될 것이다.

중국은 상장회사 규칙의 완비와 개선으로 감사회의 규범성을 더욱 확보할 필요가 있다. 특히, 회사 재무에 관한 리스크 조기경보시스템의 발전과 회사 정보시스템을 설치함에 따라 감사회의 효과적인 감독을 위하여 과학기술과 감독수단이 제공되게 되었으므로 감사의 전문적지식과 감사회의 감독절차의 과학화, 기술정보화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한편으로 중국에서는 현재 회계감사업무의 중요성이 갈수록 부각되고 있다. 중국 회사법 제169조에서 회사는 회계사무소(회계사)를 초빙해서 회사의 회계업무를 감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회계감사는 아직 중국회사의 조직기구에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회계감사의 업무는 회사경영에 있어 이미 일부가 되어 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한다면, 회사의 경영관리에 있어 정확한 회계정보와 경영정보의 제공이 이루어 질 수 있는 구조개선의 선행은 감사회의 감사업무수행의 기초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 전문성과 외부성을 가

지는 회계감사제도의 강화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회사지배구조에 있어 회사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담보하기 위해 회계감사업무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에 따라 이미 한국과 일본의 경우에서처럼 회계감사업무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을 참작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6. 한·미·일 비영리법인에 대한 회계감사제도 비교

1) 비영리법인의 운영

일본과 미국의 경우, 비영리법인에 대한 일정한 자격요건 테스트를 통해 면세자격을 부여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비영리법인에 대한 자격이나 유지요건에 대한 평가가 없는 실정이다.

미국은 면세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설립정관이나 실질적인 운영상태를 정밀하게 검토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각 관할부처에서 비영리법인으로 인가를 받으면 세제상 혜택이 따라오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비영리법인의 인·허가에 대한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지속적인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

미국 세법은 제501조 제(c)항에서 연방소득세가 면제되는 비영리 면세단체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이중 국세청으로부터 제501조 제(c)항 제(3)호의 단체로 인정되면 연방소득세를 면세뿐만 아니라 기부자들의 기부금을 자선기부금으로 인정한다. 제501조 제(c)항 제(3)호에 해당하는 면세단체는 “종교, 자선, 과학, 공공안전점검, 교육, 문학, 국내와 국제아마추어 스포츠 진흥, 아동 및 동물의 학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립·운영되는 법인, 기금이나 재단으로서 순수익이 주주 또는 개인에게 귀속되지 않아야 하고, 그 주된 활동으로 인해 입법에 영향을 미치는 로비활동이나 정치활동을 하지 않는 단체”로 정의하고 있다.

IRC 제501조 제(c)항 제(3)호의 단체는 공공자선단체와 민간재단으로 구분되는데, 이는 단체의 활동에 있어서 공적관여 수준에 의해 구분된다. 면세자

격을 얻기 위해서는 공익성 테스트를 만족시켜야 하고, 이는 조직테스트 및 운영테스트로 이루어진다. 조직테스트는 해당 기관이 제501조 제(c)항 제(3)호에서 언급된 목적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면세목적에 해당되는 것은 자선, 종교, 치안점검, 과학, 교육, 문학, 전국 또는 국제 아마추어 스포츠에 대한 활성화, 아동 및 동물학대 방지가 있다. 운영테스트는 면세자격요건과 관련하여 기본적인 단체의 기능을 보는 것이며, 실질적인 사업활동에 역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관리규정에 나타난 것만으로 모든 요건을 만족할 수는 없다. 면세지위를 인정받은 면세공익단체의 경우에는 매년 IRS에 규정된 양식에 의해 단체의 활동상황 및 재정상태 등을 보고하게 되어 있으며, 면세지위에 합당한 활동을 하였음을 증명해야 하고 연차보고서를 공개하여야 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것들을 위반할 경우 면세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미국의 비영리병원은 크게 공공비영리병원과 민간비영리병원으로 구분된다. 미국병원에서는 이사회가 감시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으나, 이사장은 친인척 등이 아니며 세습되지도 않는 특징이 있다. 모든 병원은 자격부여와 관련된 여러 측면에서 제3자의 감독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정보공개나 제3자 평가가 세밀하게 이루어져 경영투명성을 도모하고 있다. 그리고 종교단체의 경우에는 종교법인에 대한 특별법을 두고 있는 주와 비영리법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식을 두는 경우로 나뉘어 진다.

특별법을 두고 있는 주로는 뉴욕주, 일리노이주, 메릴랜드주를 예로 들 수 있다. 성직자에 대한 과세는 근로소득세 납부형식 보다는 일종의 퇴직연금 납부방식에 더 가깝다. 또한 미국의 연방세법은 성직자에게 소득세 성격이 아닌 사회보장기금을 내도록 유도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의 경우 비영리법인에 대한 관리·감독 및 규제내용은 주로 국세청(IRS)에서 맡고 있지만, 일본의 경우에는 주무관청이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는 주무관청이 사후관리를 하되 비영리법인에 대한 사후규제 및 가산세제도와 정보공시제도 등의 도입으로 국세청도 일정부분 담당하고 있다. 그러한 결과 우리나라의 비영리법인은 미국과 일본과는 달리 주무관청과 국세청으로부터 이중 감독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게 된다.

2) 비영리법인의 회계기준

미국에서는 일반적인 비영리법인의 경우 재무회계기준위원회(FASB)¹⁰⁴⁾가 정해 놓은 회계기준을 따르고 있는 반면, 정부가 설립했거나 관리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은 정부회계기준위원회(GASB)¹⁰⁵⁾가 정한 회계기준을 따르게 된다.¹⁰⁶⁾ 미국은 1993년 이전에는 비영리법인을 위한 회계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지만, 1993년에 FASB가 새로운 회계기준을 마련하여 비영리법인에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FASB가 제정한 ‘Statement of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SFAS)’ No. 117 등에서 비영리조직의 회계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SFAC 제4호는 비영리조직의 재무보고 기본 목적으로 자원배분과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의 제공, 서비스와 서비스 제공능력의 평가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경영자의 수탁책임 및 업적평가에 유용한 정보의 제공, 채무, 순자산, 경제적 자원 및 이들의 변화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SFAS 제117호는 외부보고목적으로 작성하게 되는 재무제표와 이들 재무제표가 최소한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는 내용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대차대조표는 비영리조직의 자산, 부채, 순자산을 합계하여 표시하며, 순자산의 부를 사용제한에 따른 구분에 의해 구분하되 각각 총액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은 단일의 종교단체 회계기준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비영리조직 일반에 대한 회계기준서를 조정하여 종교단체에 적용하고 있다. 즉, 미국의 종교단체에 대해서 별도의 회계기준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민간비영리조직에 적용되는 FASB의 비영리회계기준서들을 따른다. 주(state) 및 지방정부의 경우에는 정부회계기준위원회(GASB)에서 제정한 회계기준에 의하여 회계보고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1999년 제정된 GASB statement No.34에 의거하여 지방 정부는 통합재무제표를 발생주의에 의한 회계보고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일본의 경우에는 공익법인회계기준에 영리법인의 보고방식을 반영하

104) 재무회계기준위원회(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FASB)

105) 정부회계기준위원회(Government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GASB)

106) 김완희·정창모·전규안·송옥렬·남해경, “비영리조직의 회계투명성 제고방안”, 「한국회계학회 기타자료집」 Vol. 2013 제4호, 2013, pp.16-54.

게 하여 일반인들의 이해가능성을 높이고자 복식부기를 의무화 하였지만, 우리나라는 「비영리조직의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지침서」의 선택적 적용으로 인해 비영리법인에 대한 회계정보는 복식부기와 단식부기가 혼재되어 산출되고 있다.

회계처리기준에 있어서도, 우리나라는 사학기관이나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등이 별도의 회계처리기준을 두고 있기는 하지만, 통일된 회계처리기준이 없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면세혜택을 받는 비영리법인들 사이에도 회계양식에 있어서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고 이들의 고유목적에 대한 달성정도를 합리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움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비영리조직의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 지침서」가 있으나, 현행 지침서는 비영리조직의 회계실무와는 거리가 있다. 따라서 비영리법인에 대한 통일되고 일관성 있는 회계처리기준의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며, 회계감독기준도 그에 따라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공익법인의 공익성에 대한 부분과 고유목적사업의 달성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대안도 함께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3) 비영리법인 회계정보의 공개

미국의 경우, 세법 제501조 제(a)항에 따른 종교단체가 아닌 모든 면세단체는 Form 990(Return of Organization Exempt From Income Tax), 990-EZ 또는 990-PF를 국세청(IRS)에 제출하거나 Form 990-N을 통해 전자신고(electronic notice)를 해야 한다. Form 990 등에는 순자산, 비영리법인의 수입과 지출, 제공한 프로그램, 이사회 구성원 성명과 보수를 받고 있는 이사회 구성원, 재무제표 등을 비롯하여 해당 비영리법인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를 포함하도록 되어 있다. 2005년에는 IRS가 특정 면세단체에게 2006년부터 전자신고를 의무화 하게 하는 시행규칙을 발표하였고, 여기에서는 자산이 1억 달러를 초과하게 되는 면세단체는 Form 990의 전자신고에 대한 것을 의무화 하였다. 전자신고에 대한 의무조항은 2007년부터는 총자산이 1천만 달러를 초과하게 되는 면세단체로 확대되었으며, 민간단체와 자선신탁에 대해서 Form 990-PF를 신고할 것을 의무화하였다.

소규모 면세단체(총수입이 50,000달러 이하)에 대해서는 매년 Form 990-N

을 통한 전자신고서를 의무화하였고, 종교단체 등을 제외하고 총수입이 50,000 달러 이상이며, 990-N을 제출하지 않는 단체는 990이나 990-EZ에 의해 신고해야 한다. 만약 면세단체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벌금을 부과하며, 신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한 경우나 신고서 내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누락시킨 경우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그러므로 Form 990-N, Form 990-EZ, Form 990 등의 순서로 보고되는 정보량이 많아진다. 따라서 IRS에 제출된 비영리 단체의 신고서 자료는 Foundation Center와 가이드스타(GuideStar) 등을 통하여 공개되고 있다.

가이드스타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무료 공공정보 서비스, 유료서비스를 통한 기부를 원하는 단체의 상세정보 제공, 감독과 인가를 위한 연방이나 주 또는 지역정부의 시스템관리, 이러한 서비스의 유지 및 배포 등에 관한 파트너십에 대한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비영리법인을 평가하는 단체가 비영리법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게 함으로써 기부자들이 기부단체를 선택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 그리고 Charity Navigator라는 비영리분야의 평가기관이 비영리기관 재정상태의 평가를 위해 등급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2006년 타임지가 선정한 미국 최고의 웹사이트 50에 선정되기도 하였으며, 연 400만명이 넘는 기부자가 Charity Navigator를 이용하여 기부를 실천하고 있다. 모든 이용자는 비영리기관의 지역, 이름, 기관의 유형, 재정규모 등에 따라 비영리기간에 대한 검색이 가능하다. 재정평가 이외에도 단체 기부자의 정보보호정책 여부, 경영자의 연봉, 손익계산서, 미션 등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전국자선연맹(Wise Giving Alliance)과 같은 비영리단체가 전국자선단체의 조사프로그램을 통해 자선기관에 관한 엄격한 규정을 만들어 권고해 주고 있고, 각 자선단체들에 대한 자세한 조사를 통해 보고서를 발간하기도 하고 기부금 관련 의사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정보를 필요한 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제공되는 정보를 살펴보면 자선단체의 재정상황이나 및 기금모금, 경영, 홍보활동 등에 대한 평가 결과, 자선기관의 활동 및 프로그램, 기부금 운영 상황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와 같이 미국에서는 비영리법인의 국세청 신고자료와 다른 각종 자료들을 국세청, 민간기구, 비영리단체들이 직접 외부

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하여 일반인이나 시민단체에 의한 자율적인 통제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비영리의료기관의 경우에는 정보공개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주민에 대해 수행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 다만 세법 제501조 제(c)항의 비과세조직들은 단체의 홈페이지에 간단한 재무내용을 공개하게 하여 주민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공익법인이 재무제표와 사업보고서 등을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내에 ‘공익인정등(等)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그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공익인정등(等) 위원회’는 공익법인으로부터 각종 보고서를 제출받아 그 정보를 웹사이트에 올리고 열람을 신청하는 일반인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영국의 가이드스타 등도 자선사업감독위원회로부터 잉글랜드와 웨일즈 지역의 약 16만개의 비영리법인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받아서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자산가액 5억원 이상이거나 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종교제외)은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내에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결산서류 등을 공시하게 된다.

미국의 경우는 민간단체 등을 통하여 비영리법인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시하고 있으며, 일본과 우리나라는 공익성이 높게 요구되는 일부 비영리법인에 한하여 적극적인 정보공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비영리법인은 어느정도의 세계혜택을 받고 있으므로 다른 법인보다 재산의 관리와 운영에 대한 투명성이 적합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감시 및 감독활동은 예산과 인력상의 한계가 있으며, 비영리법인의 자유로운 공익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미국이나 영국처럼 민간시스템을 확대하여 운영하는 방안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겠다.

더불어 우리나라의 비영리공익법인의 경우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규정한 자산가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 등은 공인회계사에 의한 외부감사를 받게 되어 있으므로 국세청 공시서류에 감사보고서의 첨부를 의무화하는 공시에 대한 개선방안도 함께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4) 비영리법인에 대한 외부감사

비영리법인에 대한 외부감사현황을 살펴보면, 미국에서는 연방정부에게 \$30만 이상 재정지원을 받은 기관들은 정부가 지정하여준 감사관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거나, 공인회계사 등과 계약을 통해 정부감사기준에 입각한 감사의 실시 및 보고를 하도록 한다. 비영리의료기관의 경우에 회계감사에 관해서는 주(州) 수준에서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다.¹⁰⁷⁾ 또한 미국 지방정부의 경우에도 외부감사인의 감사범위는 통합재무제표와 더불어 회계별 재무제표를 포함하는 기본재무제표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외부감사에 있어 적용할 감사기준은 감사원이 제정한 정부감사기준(GAS)이 있다. 한편, 지방정부의 외부감사인의 선임과 감사보수의 결정에 대하여 GASB 등 기관의 참여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에서는 자산이 100억엔 이상이거나 부채가 50억엔 이상 또는 수지결산액이 10억엔 이상인 비영리법인은 의무적으로 공인회계사 등에 의한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정부기관으로부터 1천만엔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대학들도 외부감사를 의무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해 비영리공익법인의 경우에는 자산가액이 100억원 이상에 해당되는 때에는 공인회계사에 의한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공익법인이 동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별다른 제재사항이 없으므로 대부분 공익법인이 회계감사를 받지 않은 경우가 많다. 2014년 국세청에 등록된 우리나라 법인은 550,472개이며, 이 중 2014년말 현재 외감법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기업은 24,058개로 약 4.3%만이 외부감사대상이다. 즉, 우리나라 전체 법인의 약 96% 이상이 외부감사 대상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에서는 이해관계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음을 보여준다. 우리나라에서 일부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회계기준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외부감사를 실시하기 어려운 점도 허다하다. 그러므로 비영리법인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비영리법인에 대한 외부감사의 활성화법제가 마련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107) 미국에서 비영리법인은 외부감사 이외에 3인 이상의 사외이사로 구성된 감사위원회(audit committee)를 두어야 한다.

7. 우리나라 회계감사제도의 문제점

1) 회계감사제도의 특징

(1) 회계감사제도 특징

우리나라의 감사제도의 중요한 특징은 감사기능을 전담할 필요적 상설기관으로서 감사를 두는 것과 동시에 감사를 대체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회사의 선택에 따라 이사회 내에 감사위원회를 별도로 둘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외감법에 의하여 회계감사를 하는 외부감사인, 임시적 감사기관인 검사인, 내부통제제도상의 준법통제기준의 준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준법감시인(준법지원인)도 제도화 되어 있다는 점이다.

한편,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우리만의 독특한 제도인 감사 및 감사위원 선임에 있어서의 의결권 제한제도(이른바 단순 3% rule 및 합산 3% rule)는 한국 법만의 독특한 점이다. 이는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할 때, 보통결의로 선임하게 되므로 대주주의 영향력이 절대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며 이를 실제적으로 견제하기 위해서는 감사의 중립성이 요구되는 바이다.

감사 선임시에 대주주의 영향력을 억제하도록 하여 감사로 하여금 대주주의 영향력에 있는 경영진들의 업무집행을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여, 소액주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함으로써 상장법인에 있어서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제정이유를 설명하고 있지만 헌법에서 보장하는 재산권(헌법 제23조)을 침해하는 면이 있으며, 헌법상 평등의 원칙(헌법 제11조)을 위반하는 것이라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주주에 대한 차별적인 취급을 위해서는 제한에 대해 뚜렷한 목적과 합리적인 기준이 존재하여야 한다는 비판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2) 회계감사제도의 문제점

(1) 회계정보 작성자 측면의 현황 및 문제점

우리나라에서는 지금까지 영리법인의 지배구조와 관련된 제도의 개선 노력은 계속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대표적인 사례를 들어보면, 사외이사제도 도입, 감사위원회제도 도입, 외부감사인의 감사보수와 감사시간 및 비감사용역 현황 공시, 감사인의 선임에 대한 절차 개선, 기업지배구조모범규준 제정,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등이다. 반면에 비영리법인에 대한 지배구조는 그동안 관심사항이 아니었으나, 최근들어 많은 비리사건에 연류되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비영리법인의 지배구조를 살펴보면, 일부에서는 비영리법인의 이사회가 형식적이고 명목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¹⁰⁸⁾ 이는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전문성과 대표성을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되기보다는 설립자와의 가족관계이거나, 다른 종류의 연고나 친분관계에 있는 사람을 많이 선임되고 있기 때문이다. 비영리법인의 지배구조를 구성하게 되는 이사회와 사무국의 관계가 모호한 경우도 있다. 특히 이사회와 사무국의 최고책임자의 역할이 중복되거나 구분이 모호하게 되는 경우가 대표적인데, 비영리법인의 의사결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원인으로 작용되고 있다. 그리고 내부감사는 형식적 역할에 그치고 있어서 실질적인 내부감시기능이 부재한 상황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내부감사의 선임방식이 형식적이고 비전문가가 임명이 되는 것이 현실이고 보면, 문제의 심각성은 더한다.

비영리법인에서 횡령사건이나 기부금 관련 문제가 종종 발생하는 것은 내부통제제도가 결여되었기 때문이다. 영세한 비영리법인은 외감대상인 주식회사와 같이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검토대상이 될 수 있는 수준의 내부통제제도를 갖추는 것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러나 최소한의 내부통제제도를 갖추게 되면 법인 내부의 공금유용이나 횡령사건 등을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영리법인의 존재 의미를 살릴 수 있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비영리법

108) 한동우, “사회복지 조직의 거버넌스와 투명성”, 「한국회계학회 기타자료집」 Vol. 2012 제10호, 2012, pp.14-34.

인의 경우는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외부감사를 받는 경우에도 감사인의 선임에 문제가 있고, 감사인의 독립성 훼손마저 우려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예를 들면, 일정규모 이상의 학교법인은 학교법인으로부터 독립된 회계법인이나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를 별도로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학교 출신 공인회계사 등에 의한 감사수입의 관행으로 인해 감사인의 독립성 상실 등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복지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조직의 지배구조에 대한 정립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기존의 관심대상이었던 영리법인을 포함하여 모든 비영리법인에 대한 지배구조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최근 사회복지법인은 이사회를 구성할 때 ‘공익이사제’를 도입(사회 복지사업법 개정)해야 한다는 등의 사회복지법인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조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2) 회계정보 이용자 측면의 현황 및 문제점

영리법인의 경우에 회계제도의 개선은 회계정보 당사자인 기업과 검증자인 감사인 위주로 하여 왔으나, 비영리법인은 공공성의 이유 때문에 수요자 중심의 회계제도 개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회계정보의 생산자인 비영리조직이 준용할 일관된 회계기준의 부재뿐만 아니라 생산된 회계정보를 일반국민들이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이 매우 낮다. 누구나 쉽게 원하는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을 높여야 하는 것 또한 문제이다.

현재 비영리법인에 대한 재무제표 공시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자산가액 5억원 이상이거나 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종교제외)은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내에 국세청 홈페이지에 올리는 방법으로 결산서류 등을 공시하게 하고 있다. 이 경우 공시서류로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해당 공익법인등의 대표자, 이사, 출연자, 기부금모집 및 지출명세, 소재지와 목적사업에 관한 사항, 그리고 주식보유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다. 또한 국세청 홈페이지에 제공하는 정보는 2009년 4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으며, 국민 및 기부희망자에게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검색기능과 지역의

특정유형 공익법인을 세분화하여 검색가능 하도록 하고 있다.

공익법인이 국세청장의 공시요구나 오류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결산서류 등의 공시대상에 대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5억원 미만인 공익법인과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등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은 공시의무에서 제외되고 있다.

(3) 회계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지금까지 회계제도 개선의 노력은 영리조직 위주로 진행되어 다른 분야의 회계투명성 부분은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금융위원회 소관 영리조직을 제외하고 대다수의 경우는 관련 부처와 이해관계자들의 관심부족, 전문성 미비 등의 이유로 규제시스템이 체계적으로 구축되지 못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실효성도 미흡하다. 최근 정부회계 및 공공기관 등에 대한 회계투명성의 문제인식이 커지고 있고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은 지속되고는 있으나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사회 각 분야별로 회계제도를 담당하는 소관부처가 달라 개별법으로 별도 규정하고 있으나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회계시스템은 각 분야별 특성을 고려하여 신뢰성 있는 재무보고가 될 수 있도록 공통된 목적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소관 부처가 달라 체계적인 규제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어렵다. 그리고 현재는 국가 전체적으로 회계투명성을 총괄하는 총괄기구가 없다는 것도 문제된다. 각 부처에서 회계관련 제도의 도입을 위해 외감법 등을 현재는 준용하고 있으나, 회계기준이나 감독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각 분야별 특성에 잘 맞는 규제시스템의 도입이 미흡한 실정이다. 회계기준의 기본원칙을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계와 감사전문가들에 의해 재무보고 목적이나 환경에 맞는 제도의 개발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그 과정에서는 관련된 부처와 각 기관과의 협력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회계 및 감사전문가들이 회계와 외부감사의 기본원칙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외감법의 경우에도 중소기업과 비상장 대기업에 대한 회계제도가 대부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어 차별성이 없다. 이점에서 비상장 대기업은

상장기업에 준하는 회계제도를 적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고, 중소기업은 회계 투명성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3) 한국회계기준의 문제점

최근 비영리기관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지만 비영리기관의 회계기준에 대하여는 국가마다 개념이 다르고 또한, 한 국가 내에서도 통일된 정의가 없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에서의 비영리조직이란 이윤을 추구하지 않는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준공공 및 민간조직을 총체적으로 지칭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비영리법인은 민법을 근간으로 하고 있으며, 또한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토대로 구성되어 있다. 이밖에 사립학교법, 의료법, 사회복지사업법 등의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도 비영리법인의 지위를 갖게 된다. 그러나 이들 비영리법인에 대한 일반적인 회계기준이 없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으며, 단지 2003년 한국회계기준원이 제시한 「비영리조직의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 지침서」가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러한 지침서는 비영리조직의 회계실무와 괴리가 크며, 따라서 실무적용시에는 지침서보다 개별법령에 규정된 회계기준에 의거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를 구체화 하면, 사학기관,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은 별도의 회계기준을 두고 있지만, 종교·장학, 학술·문화 등 다른 공익법인들은 회계처리기준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사학기관은 재무회계규칙(교육인적자원부령 1969), 의료기관은 회계기준 규칙(보건복지부령 2003),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은 재무회계 규칙(보건복지부령, 1988), 그 밖의 기관은 비영리조직의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 지침서(한국회계기준원, 2003)에 의해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학교법인, 의료기관, 사회복지법인 등 특수목적에 의한 회계규정과 회계기준원 지침서간의 서로 상충되는 회계용어, 회계정보의 공시 및 해석 등으로 인해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전체 법인의 약 96% 이상이 감사대상이 아니다. 더욱 큰 문제는 특정법인의 경우 이해관계자에게 많은 영향을 줄 수 있음에도 외부감사를 받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다. 현행 외부감사대상은 외감법에 의해 주식회

사에만 한정하고 있다. 영리법인의 경우에도 외감대상인 아닌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등은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다. 그러나 국민생활 및 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관 등은 회계투명성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위한 외부감사가 반드시 필요한 입장에 와 있다.

이하에서는 비영리단체에 대한 외부감사대상과 근거법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현재 상장법인은 2015년부터 감사전(前) 재무제표를 한국거래소의 KIND제출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의무에 대한 제도는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 책임에 대해 분명히 하고 감사인의 회계감사 기능을 더욱 강화하려는 목적에서 도입(외감법 제7조 제3항)되었다.

앞으로는 12월 결산 비상장법인 중 직전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인 회사는 2016년부터 금융감독원에 감사전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하며,¹⁰⁹⁾ 회사는 감사인에게 감사전 재무제표를 제출기한(예:개별재무제표는 주주총회 6주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표 10 > 비상장법인의 재무제표 제출 내용

구 분	세부 내용
제출대상	◆ 직전사업연도말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 비상장법인
제 출 처	◆ 금융감독원 DART접수시스템
제출서류 (감사전 재무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① 재무상태표, ②(포괄)손익계산서, ③자본변동표, ④현금흐름표, ⑤주석 ◆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연결기준 ①~⑤를 동일하게 제출

109) 금융감독원 2016년 1월 29일 보도자료 인용, <http://www.fss.or.kr>

< 표 11 > 재무제표 제출기한

구 분		제출기한*
개별(별도) 재무제표 (K-IFRS 또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		정기총회 6주일 전
연결 재무 제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적용	정기총회 4주일 전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

주) * 회사가 법정 기한 이전에 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동시에 금융감독원에 감사전 (연결)재무제표를 제출 하여야 함

**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중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 후 70일 이내

외부감사인과 금융감독원에 동시에 제출하는 감사前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및 주식,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사는 연결재무제표도 제출해야 하며, 금융감독원의 DART접수시스템(<http://filer.fss.or.kr>)에 접속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우편 등 오프라인 접수는 불가하다.

이는 그간 다수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업무를 외부감사인에게 의존하려는 잘못을 바로 잡아 회계오류 검증기능을 강화시켜 회계정보의 신뢰성이 제고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금융감독원은 감사보고서 공시가 완료된 이후 회사가 제출의무 재무제표를 모두 기한내 제출했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것으로 강화되고 있다. 또한 접수받은 감사前 (연결)재무제표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으나, 미 제출시에는 검찰에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외감법 제20조 제3항 제6호).

4)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문제점

(1)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대상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해서 외감법에서는 “회사(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로서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천억원 미만인 회사는 제외한다)는 신

퇴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과 공시를 위하여 일정한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운영하는 조직을 갖추어야 한다”¹¹⁰⁾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의는 일본이나 미국의 재무제표에 관한 내부통제제도와 유사하다. 회사는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과 공시를 위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갖추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는 직전 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이 1천억원 미만이면 제외 된다.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갖추어야 하는 회사는 외감법상 모든 상장법인과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이처럼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적용대상을 기업의 규모나 특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단편적으로 외감법 적용대상 기업으로 규정한 것은 현실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내부통제를 법적으로 강제하는 이유가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 상장기업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비상장기업의 경우에는 내부통제의 운영방법 및 보고방식을 각각의 경영목적에 따라 자율적으로 적용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2) 내부회계관리제도 유효성 평가주체의 문제점

내부통제의 유효성과 평가 근거기준을 미국과 일본에서는 증권거래위원회 또는 금융청 등 정부기관에서 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위원회 및 회계감사기준위원회 등 민간단체에서 제정하고 있는 차이점이 있다. 그리고 외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 평가는 내부회계관리자가 담당하고 있고, 내부회계관리자의 운영실태보고에 대해 감사(감사위원회 포함)가 평가 또는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외감법 제2조의2 및 제2조의3). 내부회계관리제도는 회계정보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매우 중요한 장치이다. 특히 외부감사와 관련된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가 부실한 경우에는 회계정보의 신뢰성에 큰 타격은 물론이고 외부감사인의 부실감사 가능성을 증대시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110) 외감법 제2조의2 제1항

IV. 주식회사의 조직변경관련 사례 및 개선방안

1. 서언

1) 주식회사 조직변경관련 사례현황에 대한 개관

우리 상법은 주식회사(Stock Company), 유한회사(Limited Company), 합자회사(Limited Partnership), 합명회사(General Partnership),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 등 5가지 유형의 회사만을 인정하고 있다. 유한회사는 본래 주식회사와 마찬가지로 사원이 자신의 출자금액을 한도로 책임을 부담하는 물적회사에 속하지만, 주식회사와는 달리 인적 유대를 중시하는 기업으로 소규모의 폐쇄적인 기업에 적합한 형태인 것으로 법제되어 있다. 따라서 물적회사 중 대다수의 회사는 주식회사를 선택하는 경향이 전통적으로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2014년 현재 법인종류별 등록정보를 보면, 전체 55만여 법인 중 주식회사의 비중은 94.6%(52만 개)¹¹¹⁾로 나타났고, 유한회사의 비중은 4.5%(2만5천 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유한회사가 급증하는 추세에 있다는 언론의 보도가 나오고 있다.¹¹²⁾

동 보도자료에 의하면, 해외 고가 브랜드들이 경영실적 공개 등을 피할 목적으로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조직변경 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미국 브랜드 마이클코어스 제품을 수입·판매하는 주식회사 시몬느에프씨는 최근 기존 고객에게 고객 개인정보를 유한회사 마이클코어스코리아에 이전한다고 하는 문자를 보냈다. 현재 마이클코어스 국내 판권은 상기 시몬느에프씨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현재 국내 백화점과 면세점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마이클코어스 제품은 시몬느에프씨가 들여온 제품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미국 본사와 판권계약이 종료되면 상기 마이클코어스코리아가 직접 판매하는 형태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다. 마이클코어스코리아 관계자는 “앞으로 중간 에이전시를 거치지 않고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 국내의 고객에게

111) 국세청, 2015년 국세통계연보.

112) 문화일보, 2015년 12월 04일자 보도자료.

좀 더 다양한 상품과 보다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실상은 마이클코어스코리아의 법인형태를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즉, 규모적인 입장에서 보면 마이클코어스코리아는 주식회사의 형태로 설립되어야 할 터인데 주식회사가 아닌 유한회사 형태로 법인이 설립되었기 때문이다. 기존 마이클코어스 제품의 국내수입업체인 시몬느에프씨는 주식회사였으므로 외부감사대상기업이기도 하였으나, 새로이 설립된 마이클코어스코리아는 유한회사 형태를 취하고 있으므로 외부감사를 받을 필요도 없고 경영실적 등에 대한 공시의무 또한 없게 되었다는 이유에서이며, 이는 결국 해마다 많은 이익을 내는 외국계기업이 ‘쥐꼬리 기부금’과 “본사에 대한 과잉 배당금”에 관한 논란의 대상에 휩싸여 여론의 뭇매를 맞던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것 때문이기도 하다.

구찌와 루이비통도 그러한 이유에서 주식회사형태로부터 유한회사형태로 조직변경을 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샤넬과 에르메스 국내 법인도 모두 유한회사 형태를 취하고 있다. 사원이 회사 출자금액을 한도로 책임을 지게 되는 유한회사는 외부감사대상기업이 아닌 관계로 매출과 영업이익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감사보고서에 대한 제출 의무가 없다. 지난 1991년 국내에 진출한 루이비통코리아는 주식회사로 있다가 2012년말 갑자기 유한회사로 조직변경함으로써 이런 의심을 사게 된 케이스에 해당되고, 프랑스 화장품기업인 시슬리 코리아도 유한회사로 조직변경하여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게 된 케이스에 해당된다. 실제로 휴렛패커드, 한국마이크로소프트 등을 포함해 2013년말 기준 유한회사는 21,336개로 2010년말 16,998개 보다 약 25.5%가 증가했다.

김지홍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에 따르면, “투자자 모집 등 경영상 주식회사가 유한회사보다 유리한 것이 더 많아 비중이 높아지는 것”이라며 “해외 본사는 주식회사 형태로 운영되면서 국내에서는 유한회사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국내에서 감감이 경영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한 바가 있다. 또한 그는 “해외 고가 브랜드 업체들이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조직변경 하는 것은 정보공개를 하지 않겠다는 것 외에 다른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지적하고, 하루 빨리 외감법을 개정해 주식회사뿐만 아니라 유한회사도 외부감사

대상기업으로 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 바가 있다.¹¹³⁾

금융위원회가 유한회사와 비영리법인을 외부감사 대상에 포함시키고 대기업 비상장회사의 회계감독 수준을 높이려는 것도 이들 기업들이 외부감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금융위원회는 주식회사와 경제적 상황이 유사해진 일정 규모 이상의 유한회사와 비영리법인에 대한 외부감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¹¹⁴⁾

그나마 우리나라 주식회사는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구제금융을 지원 받은 외환위기 이후 회계투명성 면에서 일정 부분 개선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유한회사, 비영리법인, 비상장 주식회사의 경우는 감시망이 제대로 닿지 않아서 회계감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으며, 주식회사 중에는 아예 외부감사를 받지 않으려고 상장을 회피하고, 심지어 주식회사로 있다가 유한회사로 조직변경 하는 경우까지 발생되고 있다.

2011년 상법이 개정되면서 사원 수(50명 이하)와 지분 양도 제한이 폐지된 유한회사는 사실상 주식회사와 유사해 졌고, 상당 수의 유한회사는 주식회사 이상의 규모를 보이고 있다. 그러한 이유에서 주식회사와 마찬가지로 자산총액이 120억원 이상인 유한회사는 외부감사를 의무화하기로 금융위원회는 결정했다는 것인데, 그리하면 2013년말을 기준으로 약 2,200여개의 유한회사가 외부감사 대상기업으로 선정 될 것으로 추정된다.

외국의 경우에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와 마찬가지로 외부감사 대상기업으로 되어 있다. 미국은 상장 주식회사 및 자산 1천만 달러 이상, 주주 500명 이상 장외등록회사가 모두 외부감사 대상이고, 영국과 독일은 소규모 회사를 제외한 거의 모든 회사가 외부감사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유한회사와 함께 대학, 병원, 각종 사회단체 등 비영리법인은 체계적인 회계기준이 없어 외부감사의 사각지대로 지적되었는데, 이러한 비영리법인도 회계감독이 강화되어가는 추세에 있다.

또한 회계처리가 멋대로 이뤄지고 감사도 미흡한 기부금 단체, 각종 조합에서는 운용비 유용 및 횡령사건 등이 발생할 소지가 크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는 회계처리 기준이 천차만별이어서 다른 비영리법인과 비교하기 어

113) 문화일보, 전계보도기사 참조.

114) 연합뉴스, 2013년 10월 28일자 보도기사[박상돈 기자 : kaka@yna.co.kr].

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대형 비상장주식회사도 상장회사와 똑같은 규제를 받는다. 단순히 비상장이라는 이유만으로 완화된 회계감독과 규율을 적용받고 있어 분식회계 등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그동안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상장 여부만이 아니라 경제적 비중 등 기업의 실질적인 모습을 고려해 합리적인 회계감독 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비상장 대기업을 상장기피 현상과 주식회사의 유한회사로의 조직변경 같은 부작용을 차단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해결로 입법개정을 서둘러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 표 12 > 유한회사의 규모별 현황

(단위 : 개)

구 분		사업연도			
		2010	2011	2012	2013
자 산 총 액	5,000억원 이상	35	34	35	32
	1000억원 ~ 5,000억원	271	304	390	505
	500억원 ~ 1,000억원	291	334	418	507
	200억원 ~ 500억원	452	507	589	649
	100억원 ~ 200억원	279	367	473	536
	50억원 ~ 100억원	450	493	585	738
	20억원 ~ 50억원	1,279	1,470	1,672	1,901
	10억원 ~ 20억원	1,936	2,114	2,277	2,491
	5억원 ~ 10억원	2,884	3,040	3,216	3,312
	5억원 미만	9,121	9,373	9,858	10,665
합 계		16,998	18,036	19,513	21,336

자료) 한국공인회계사회 통계자료(2014년)

2) 외감법 개정에 관한 논의

2014년에는 김태호의원이 대표로 「외감법 일부개정법률(안)」¹¹⁵⁾이 발의된 바가 있었다. 현행법은 외부감사의 대상을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주식회사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한회사의 경우 외부감사를 받을 의무가 없고 감사보고서의 제출 대상에서도 제외되고 있다. 더욱이 최근 「상법」의 개정으로 유한회사에 관한 제한이 완화되면서부터 주식회사 형태의 기업들이 유한회사로 조직변경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한 차원에서 입법발의된 것이다.

조직변경한 사례에 있어서는 한 사업연도의 영업이익이 수백억원에 이르는 곳도 있으나 외부감사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채권자 등의 이해관계인이 회사의 재무상태를 확인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었다. 그러므로 현재의 외감법 법령에서부터 유한회사를 포함시키는 형태로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 그리하여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유한회사도 외부감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유한회사의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고 이해관계인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한편, 현행법은 비상장 주식회사는 회사의 규모가 크더라도 비상장이라는 이유로 상장회사에 비하여 훨씬 완화된 회계감독 규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비상장 대기업의 회계투명성이 미흡한 실정이며, 이에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비상장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상장회사에 준하는 회계감독 규율을 적용받도록 함으로써 비상장 대기업의 회계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2014년 발의된 외감법 일부개정안은 나름 의미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다.

2. 주식회사의 조직변경관련 사례와 문제점

1) 우리나라 회사의 현황

2014년 12월 현재, 국세청 통계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에 설립되어 있는 회사의 수는 총 550,472개사로 나타나 있다. 그러나 상법상에 규정되어 있는 5종

115)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9026, 김태호 등 11인), 2014.1.

류의 회사 모두가 설립되어 존재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2011년에 법제된 유한책임회사를 제외한 합명회사·합자회사·주식회사·유한회사가 설립되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전체 550,472개의 회사 중에서 합명회사는 797개사로 전체의 0.1%를 차지하고 있고, 합자회사는 3,447개사로 전체의 0.6%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식회사는 520,938개사로 전체의 94.6%를 차지하고 있고, 유한회사는 25,290개사로 전체의 4.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¹¹⁶⁾

2) 회사의 회계규정

(1) 회사편의 회계규정

상법의 회사편에서는 주식회사, 유한책임회사, 유한회사의 회계에 관한 특별규정을 두고 있다. 주식회사와 유한책임회사의 경우는 특별히 회계에 관한 별도의 절을 두어 회계처리에 대하여 매우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¹¹⁷⁾

① 주식회사의 회계규정

주식회사 회계는 상법과 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회계의 관행에 따라야 한다(상법 제446조의2). 여기에서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것’이란 외감법 제2조에 의한 외부감사 대상 회사의 경우에는 외감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회계기준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이라 약칭함)」 제2조에 의한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회계원칙, 또는 위에 해당되지 않는 회사 등은 회사의 종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중소기업청장과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고시하는 회계기준 등을 의미하는 것이다(상법시행령 제15조).

주식회사의 회계원칙에 관한 규정의 변화는 기업회계처리기준의 국제적인 회계규범의 변화에 꾸준히 대응하면서 발전하여 왔으나, 상법 회계규정은 법규범의 특성상 이러한 것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기업회계처리

116) 국세청, 국세통계연보(2015)

117) 이진호, “상법상 회사의 회계처리기준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2014. pp.15-16.

기준과 상법의 회계규정 사이에 상당한 괴리가 발생하게 되었다.

결국에는 상법의 회계규정이 사문화되어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게 되는 원인이 되었고, 따라서 2011년 개정상법에서는 주식회사 회계에 대해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회계관행’에 따르도록 상법 제446조의2를 신설하였고 또한 구체적인 회계처리 규정들은 삭제하고,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외의 재무제표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함으로써 기업회계기준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로써 문제가 해결된 것만은 아니고, 그간 상법의 보수적인 회계처리의 상실로 새로운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 있다.

② 유한책임회사의 회계규정

유한책임회사 업무집행자는 결산기마다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그 밖에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여진 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상법 제287조의33). 여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자본 변동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중의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하는 것이다(상법시행령 제5조).

유한책임회사의 회계는 상법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 외에는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회계관행’에 따른다(상법 제287조의32). 따라서 유한책임회사에서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에는 상법과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회계관행의 순으로 적용된다.

유한책임회사의 회계원칙에 대한 취지는 주식회사의 입법취지와 같지만, 주식회사와는 달리 유한책임회사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회계관행보다 우선하게 되는 시행령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상법은 유한책임회사의 회계에 대하여 위에서 살펴본 재무제표의 작성(상법 제287조의33)과 회계원칙에 대한 규정(상법 제287조의32) 이외에도, 재무제표의 비치 및 공시(상법 제287조의34), 자본금의 금액(상법 제287조의35), 자본금의 감소(상법 제287조의36), 잉여금의 분배(상법 제287조의37)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③ 유한회사의 회계규정

유한회사의 이사는 매결산기에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상법 제579조 제1항, 제447조 제1항 제3호). 여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 자본변동표,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상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상법은 유한회사의 회계에 대하여 재무제표의 작성(상법 제579조), 영업보고서의 작성, 재무제표 등의 비치·공시(상법 제579조의2), 이익배당 기준(상법 제580조), 사원의 회계장부열람권(상법 제581조), 업무·재산상태의 검사(상법 제582조)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 외에도 재무제표 등의 승인과 공고(상법 제449조 제1항·제2항), 이사·감사 책임해제(상법 제450조), 이익준비금(상법 제458조), 자본준비금(상법 제459조), 법정준비금 사용(상법 제460조), 이익 배당(상법 제462조), 중간배당(상법 제462조의 3), 주주의 회계장부열람권(상법 제466조), 사용인의 우선변제권(상법 제468조) 등에 대해서는 주식회사의 회계규정을 준용하는 것으로 하였다(상법 제583조 제1항내지 제2항).

④ 회사의 종류에 따른 회계처리기준 비교

상법과 동법 시행령에 규정된 회사의 종류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에 관하여 살펴보면, 유한책임회사 및 유한회사는 상법의 규정과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회계관행’에 따르도록 되어 있고, 주식회사만 상법과 기업회계기준 및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회계관행에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다.

< 표 13 > 상법상 회사의 종류에 따른 회계처리기준

구 분	유한 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 회사
		외부감사 대상회사	공기업· 준정부기관	그밖의 회사	
상법의 규정	○	○	○	○	○
외감법상 회계처리기준 ¹¹⁸⁾		○			
공기업·준정부기 관 회계원칙			○		
중소기업 회계기준				○	
일반적으로 공정하 고 타당한 회계관행	○	○	○	○	○

주) 이진호. “상법상 회사의 회계처리기준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2014), pp.32.

3)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특징 비교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법률적인 차이점을 보면, 유가증권(주식·사채)의 발행 가능의 여부와 외부감사 및 기업공시의무의 여부를 들 수 있겠다. 주식회사는 외감법에 의거하여 자산총액 12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에 대해 외부감사를 의무화 하고 있으며,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접속하면 누구나 외감대상기업들의 경영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유한회사의 경우 경영정보가 차단되어 있으므로 비공개주식회사보다도 폐쇄적이라 할 수 있고, 원초적으로 유한회사는 당초 대규모 자본 투자가 필요 없는 소규모 기업에 적합한 회사 형태로 공모에 의한 투자유치도 금지되어 있다. 따라서 외부자본 유치가 필요치 않거나 단순 연락소 차원의 지사 설립에 안성맞춤인 것이다. 유한회사는 사원이 투자한 출자금액 만큼만 책임을 지는 회사이기에 감사보고서를 외부에 공시할 필요가 없다. 이런 점을 노리고 최근들어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변경하는 외국계 기업, 대기업 계열사

118) 외감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한국채택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의미함.

들이 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를 반영하여 2014년 말 현재 2010년 말 대비 주식회사는 24.7% 증가했지만, 유한회사는 44.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있음은 전술한 바이다.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와 마찬가지로 사원이 자신의 출자금액을 한도로 유한책임을 지는 물적기반의 회사지만, 주식회사보다 인적인 유대를 보다 중요시하는 소규모의 폐쇄적 기업에 적합한 형태이다. 유한회사의 특징은 첫째, 주식회사와 달리 회사 정관을 유연하게 만들 수 있는 점이다. 둘째, 주식회사와 달리 증서를 발행할 수 없어 사실상의 지분양도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점이 폐쇄적인 경영을 원하는 기업에 장점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점이다. 셋째, 미국 투자자의 경우 해외투자법인이 유한회사라면 본국에서 세제상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인적 유대를 중시하는 내·외국인 합작회사에 유한회사가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면서 최근 외국계 기업이 유한회사를 선택하여 설립하거나 조직변경을 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4) 주식회사가 유한회사로 조직변경 한 사례에서

(1) 사례1 - 테슬라코리아

자동차 시장만큼 진입장벽이 높은 산업도 없다. 최근 100년 동안 자동차 시장에 새롭게 진입해 성공을 거둔 업체는 드물다. 기존 기업의 축적된 기술력, 소비자들의 보수적 소비 패턴, 견고한 브랜드 인지도를 극복하기 힘들기 때문에 기존 자동차 브랜드의 기술이 진화해 신생 업체나 벤처가 갈수록 진입하기 힘든 시장이 될 것이란 전망이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 이런 전망을 비웃듯 등장한 회사가 전기차 제조기업 테슬라코리아 모터스다.¹¹⁹⁾

테슬라는 출발부터 독특했다.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벤처로 2002년 출발한 회사이지만, 온라인결제시스템페이팔을 만든 엘런머스크가 창업한 회사로도 주목을 받았다. 2008년 고성능 전기차 로드스터를 출시해 많은 이를 놀라게 했고, 2012년 모델S를 선보이면서 자동차 업계가 가장 주목하는 회사가 됐다.

119) 중앙시사매거진(<https://jmagazine.joins.com/economist/view/309635>), 2016.01.04.(박성민 기자)

처음 출시한 로드스터는 별다른 마케팅이나 홍보 없이도 미국 시장에서 2,500대가 팔렸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 잠깐 어려움을 겪었지만, 2009년 미국 정부가 ‘전기차 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원한 465만 달러로 모델S를 개발해 성공을 거두었고, 2015년 3분기까지 글로벌 자동차시장에서 팔린 테슬라 자동차는 3만 3000여 대에 이른다. 최근 2016년도에는 자동차 패러다임에 혁명을 가져올 전기자동차 모델3을 예약 주문받아 5월말 현재 예약 주문대수가 40만대를 넘어섰다.

서울중앙지법 등기국에 의하면, 테슬라는 ‘자동차와 관련 부품, 액세서리 수입과 유통, 판매, 서비스’를 사업목적으로 국내 법인등록을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법인의 이름은 ‘테슬라코리아 유한회사’이며 자본금 규모는 1억 원이다. 테슬라 본사가 한국 삼성동에 법인등록을 하면서 주식회사가 아닌 유한회사로 설립한 것은 명백한 ‘세금회피’와 ‘간접받지 않고 돈벌기’를 하고자 하는 두 가지 측면이 강한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유한회사와 주식회사의 차이점은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유가증권의 발행 가능 여부와 외부감사, 공시의무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 통상적인 주식회사와 같은 유한회사는 이사회 구성이나 감사선임의 의무가 없고, 사원이 투자한 출자금액만큼만 책임을 질 뿐만 아니라 감사보고서를 외부에 공개할 의무가 없으므로 외국기업으로서는 선호의 대상이기 때문이었다.

외감법상 자산총액 12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는 의무적으로 외부감사를 받는 것¹²⁰⁾은 물론이고, 이를 공시시스템을 통해 공시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기업으로서는 주식회사의 형태로 국내시장에 진출한다는 것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유한회사로 설립된 테슬라코리아는 이사회 구성도, 감사선임도 할 필요가 없고, 무엇보다 자산총액이 120억원을 넘어도 외부감사 및 감사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

이는 매출액과 영업이익, 순이익 등 기본적인 기업정보조차 공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더욱이 테슬라코리아가 자본금 규모를 스타트업이나 가능할 법한 1억원 규모로 한 것 또한 세금을 회피하거나 최소화하겠다

120)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5945호, 2014.12.31) 제2조

는 전략이 다분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러한 평가는 자본금을 1억원으로 해놓고 수십, 수백억원이 소요되는 전기자동차 판매매장과 AS센터 등은 모두 본사로부터 차입, 채무로 처리하겠다는 전략임을 훤히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테슬라코리아가 국내 영업을 시작하면서 매장과 AS센터 건립에 소요되는 자금을 테슬라코리아 증자를 통해 조달할 것인지, 아니면 본사로부터 돈을 빌리는 차입형태의 채무로 할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는 결국 증자일 경우는 투자하겠다는 뜻이지만, 차입을 통한 채무일 경우는 정상적인 현지 진출기업이라기보다는 세금은 최대한 회피한 채, 이자수익 등 이익금을 최대한 빼내겠다는 뜻으로 풀이될 수 있다.

또한 테슬라코리아가 제주도에서부터 판매를 시작하려는 것도 절세효과와 함께 이익금을 본사로 효율적으로 가져가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는 테슬라가 국내 법인의 형태를 주식회사가 아닌 유한회사로 했기 때문에 기인한 것으로, 더욱이 자본금을 1억원으로 정하면서 세금 회피를 위한 방편이라는 의심을 사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2) 사례2 - 피자헛

1985년 한국에 진출한 한국피자헛은 2007년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전환했다. 유한회사로 조직변경하면서 500대 기업명단에서 제외되었다. 더욱이 실적인 영업비밀로 감춰둔 채 공개하지도 않았고, 프랜차이즈 사업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는 제출했지만 이 또한 제한된 정보공개에 지나지 않았다. 유한회사는 현행 외감법상 외부감사 대상에서 빠지기 때문에 매출액과 영업이익 등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감사보고서를 공개할 의무가 없었기 때문에 규모가 큰 외국계 기업은 경영정보 공개를 회피하기 위해 유한회사 형태로 국내에서 영업하는 경우가 많은 이유가 되고 있다. 실제로 유한회사로 전환한 뒤 한국피자헛은 연간 매출액조차 공개하지 않았다.

이러한 점에서 유한회사의 과세 투명성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정부가 각종 정책을 입안할 때도 투명한 업체의 자료현황을 볼 수 없어 이러한 점을 일각에서는 문제로 보는 시각도 있는 상황이다. 2005년도에 한

국피자헛은 배당금 315억원을 본사에 송금했는데, 당기순이익은 40억원에 불과했다. 이렇게 할 수 있게 된 것은 피자헛코리아를 유한회사로 전환하면서 국내 회계법인의 외부 감사를 받지 않게 되면서부터 배당도 자유로워졌기 때문이다. 2012년 공정거래위원회가 피자업종에 대해 모범거래 기준을 마련하였을 때 한국피자헛은 실적을 외부에 일절 공개하지 않고 오직 3년째 영업손실을 냈다는 이유로 모범거래기준에 대한 합의를 거부했다. 공정위도 피자헛의 이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유한회사들은 세무조정계산서 등 일부 서류만 제출하면 되므로 주식회사에 비해 상당히 완화된 기준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유한회사의 과세 투명성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이 사실이다.

(3) 사례3 - 루이비통코리아

루이비통코리아는 2012년 11월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하여 외부감사 의무에서 제외되었다. ‘명품(名品)’이란 과거엔 장인의 땀이 만들어 낸 제품을 가리켰지만, 현재의 소비자에게선 선망의 대상, 또한 사업가에게선 수익성 높은 비즈니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1854년 프랑스 파리의 조그만 가방전문점으로 시작하여 지금은 세계 최대의 럭셔리 브랜드로 손꼽히게 된 루이비통이 그 대표적 사례이다.¹²¹⁾

한국에서의 비즈니스로서 루이비통의 파워는 정말 막강하다. 인천공항 면세점에 ‘루이비통 공항 매장’을 유치하기 위해 신라와 롯데가 법정 다툼을 벌인 일이 있는가 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임대료 등 루이비통 측의 요구를 인천공항이 거의 다 받아들인 일 등으로 인해 지난 1, 2년 사이 세간에서는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한 바 있다.

2012년 한 해 동안 루이비통은 인천공항에서 약 1,027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그때 당시 인천공항 면세점의 연간 매출이 약 1조 9천억원이었으니, 루이비통 하나가 공항 면세점 전체 매출의 약 5%를 차지한 셈이다. 수백 개의 브랜드가 면세점에 입점해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루이비통의 존재감은 대단해 보인다.

121) 신동아, 2013년 04월호, ‘유한회사 전환으로 ‘감시망’ 벗어나다’ 인용.

면세점 이외의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루이비통코리아 또한 꾸준한 상승세를 타고 있다. 2011년도 매출액이 4,973억원으로 5년 만에 4배 이상으로 뛰었다(2006년도에는 1,212억원). 기업의 모든 수익에서 비용과 손실을 뺀 당기순이익도 2008년까지는 70억원 정도였지만, 2009년부터는 400억원에서 560억원 수준으로 수직 상승했다. 당기순이익률(당기순이익/매출액)도 2009년도 이후 약 9%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국내 제조업의 당기순이익률이 대체로 2%부터 4% 수준임을 감안하면 대단한 것이다.

또한 기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짐작해 볼 수 있는 급여,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등은 해마다 조금씩 늘긴 했으나, 당기순이익이나 매출액의 상승세와는 비교되지 않는다. 그동안 명품업계의 소홀한 사회공헌활동이 종종 언론에 오르내리곤 했지만, 루이비통코리아가 실제 지출했던 기부금도 가장 많은 해가 약 2억1,000만원(2011년 기준)으로 매출의 약 0.04%에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한편, 2010년도부터 루이비통코리아는 주주에게 그해 당기순이익과 비슷한 규모의 배당금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즉, 2010년도 440억원(당기순이익 400억원), 2011년 400억원(당기순이익 448억원)이 배당되었는데, 이는 자본금이 86억원이다 보니 자본금의 5배에 해당하는 고배당인 것이다. 프랑스 본사 루이비통말리에(Louis Vuitton Malletier)가 루이비통코리아의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배당금 전액을 본사가 가져가게 된 것이다.¹²²⁾

5) 주식회사 조직변경시 회계감사제도와 관련된 문제점

(1) 유한회사 및 비상장법인에 대한 감사제도

현행법은 외부감사 대상기업을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주식회사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유한회사의 경우는 외부감사를 받을 의무가 없고 감사보고서의 제출 대상에서도 제외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상법」의 개정으로 유한회사에 관한 제한이 완화되면서 주식회사 형태의 기업들이 유한회사로 조직변경

122) 이상에서 살펴본 루이비통코리아의 경영정보는 이 회사가 금융감독원에 매년 제출하는 감사보고서를 통해 파악된 것이지만, 2012년 이후의 경영정보는 알 수 없다. 이는 루이비통코리아가 2012년 11월 상법상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조직변경하게 됨에 따라 더 이상 금융감독원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이다.

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그 중에는 한 사업연도의 영업이익이 수백억원에 이르는 곳도 있으나 외부감사 대상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이 회사의 재무상태를 파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게 되어 문제시되고 있는 것이다.¹²³⁾

한편, 현행법은 비상장 주식회사는 회사의 규모가 아무리 크더라도 비상장이라는 이유만으로 상장회사에 비하여 훨씬 완화된 회계감독규율을 적용받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비상장 대기업의 회계투명성이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고, 이점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비상장주식회사에 대하여는 상장회사에 준하는 회계감독 규율을 적용받도록 함으로써 비상장 대기업의 회계투명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상황이기도 하다.¹²⁴⁾

그리고 일부 대형 주식회사에 있어서도 그동안 외부감사인 자격제한, 동일감사인 3년 선임의무, 회계감리절차 등 회계감독을 상장회사 중심으로 강화해옴에 따라 상장주식회사와 비상장 주식회사 간의 규제차익이 커짐에 따라 대형 주식회사들이 상장을 기피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사실 대형 비상장주식회사의 경우는 채권자·종업원·거래규모 등에 있어 중·소형 상장회사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지만, 비상장이라는 이유로 계속해서 회계감독을 소홀히 함으로써 분식회계 등의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심각한 피해 및 경제적 파장을 초래할 우려가 발생한다. 이점 또한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에 대해서는 상장회사에 준하는 회계감독 규율을 적용하여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고, 규제차익을 고려한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의 상장기피 현상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이유이기도 하다. 영국·호주 등 외국의 입법 사례에서도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비상장회사나 상장회사 간에 회계감독 규율의 차이는 없다. 이를 반영하여 뒤늦게나마 금융위원회도 대형 비상장주식회사에 대한 회계감독규율을 상장회사에 준하도록 강화하기 위한 현행법의 개정을 검토하고 있어서 개정안에 긍정적인 입장이라 할 것이나, 이 경우 상장법인에 준하는 회계규제를 적용하는 대형 비상장주식회사의 기준에 관해서는 본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하고 시행령에 위임하여 정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한다.

123) 김태호의원 대표발의, 2014. 2.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24) 김태호의원 대표발의, 전계법률개정안 참조.

(2) 국가 전체의 회계투명성을 총괄하는 기구의 부재

사회의 각 분야별로 회계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소관부처가 달라 개별 법률로 각기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나 이 또한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문제로 지적된다. 회계시스템은 각 분야별로 특성을 고려할지라도 신뢰성 있는 재무보고라는 동일한 목적으로 설계되어야 하지만 소관 부처가 달라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규제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라는 것도 지적되어 왔으나,¹²⁵⁾ 주식회사의 조직변경과 관련된 상술한 국익유출과 같은 근본 문제는 현시점에 국가 전체의 회계투명성을 총괄하는 기구가 없다는 점에서 기인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3) 영리조직을 중심으로 회계제도 발달

그 동안의 회계제도에 대한 개선노력은 영리조직 위주로 진행되어 다른 분야의 회계투명성 부분은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현재 금융위원회 소관 영리조직을 제외하면 아마도 대다수의 관련 부처 및 이해관계자들의 관심부족과 전문성 미비 등의 이유로 규제시스템이 체계적으로 구축되지 못하고 있고 실효성마저도 미흡한 상태이다. 최근 들어 정부회계 및 공공기관 등의 회계투명성에 대한 문제인식이 커지고 있음에 따라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이 또한 여전히 부족한 실정에 있음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고 하겠다.

(4) 회계정보 제공기관의 특성 및 목적을 고려하지 않는 규제시스템

정부의 각 부처에서 회계와 관련된 제도도입을 위해 외감법 등을 준용하고 있지만 그에 따른 회계기준이나 감독에 대한 전문성 등의 부족으로 각 분야별 특성에 맞는 규제시스템의 도입에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회계나 감사전문가들이 회계기준의 기본원칙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무보고의 목적이나 그에 따른 환경에 맞는 제도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고, 그 과정에 있어서 관련 부처와 기관 간의 협력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125) 김완희·정창모·전규안·송옥렬·남혜경, “비영리조직의 회계투명성 제고방안” 「한국회계학회 기타자료집」 Vol. 2013 제4호, 2013, pp.16-54.

3. 회계감사제도의 개선방안

1) 외감법 개선의 필요성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외부감사의 규율대상을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유한회사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라 법의 제명을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유한책임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변경될 필요가 있다.

이는 현재 유한회사의 회계처리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유한회사는 외부감사를 받을 의무가 없고, 회계처리시 적용하는 회계기준도 임의로 선택이 가능하다. 2011년 상법의 개정으로 사원수의 제한 및 지분양도 제한이 폐지되어 사실상 주식회사와 유사해졌고, 상당수의 유한회사는 주식회사 이상의 규모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점이 입법개정에 관한 제안을 하게 된 이유이다.

또한, 외국의 경우에도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외부감사를 같은 법률로 규율하는 사례가 많으며,¹²⁶⁾ 그동안 회계감독의 사각지대로 방치되었던 유한회사에 대한 회계감독 강화로 회계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고, 그리고 이는 외부감사를 피하기 위한 주식회사의 유한회사로의 전환을 사전에 방지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이기도 하다.

126) 진정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정무위원회, 2014.

< 표 14 > 외부감사 규율관련 해외사례

국가	회사유형	외부감사 의무		외부감사기준
		근거규정	대 상	
미국	주식회사, 유한책임회사	증권 거래법	상장주식회사 및 자산 1,000만 달러 이상, 주주 500인 이상 장외등록회사	-
영국	공개주식회사 ,비공개 유한 책임회사, 무한책임회사, 공동이익회사	회사법	모든 회사 (소규모회사 면제)	소규모회사 기준 : 다음 중 2이상 해당 (매출액 £ 650만(112억원), 총자산 £ 326만(56억원), 종업원 50인 이하)
독일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	상법	모든 회사 (소규모회사 면제)	소규모회사 기준 : 다음 중 2이상 해당 (매출액 968만유로(134억원), 총자산 484만유로(67억원), 종업원 50인 이하)
일본	주식회사, 합동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	회사법	일정규모 이상 주식회사	자본금 5억엔(49억원) 이상 또는 부채 200억엔(1,950억 원) 이상
		금융상품 거래법	유가증권신고서 제출회사(상장회사 , 협회등록주 발행회사, 주주 수 500인 이상 회사)	-

주) 진정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2014년) 재인용

2) 외감법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제안

(1) 감사범위에 대한 개정제안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그 법명에서부터 변경해야 한다는 개정(안)은 이미 국회에 제출된 바가 있었다. 동 개정(안)에서의 “주식회사”를 “주식회사 등¹²⁷⁾”으로 법명부터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고, 내용에 있어서도 현재의 “주식회사”로 되어 있는 것을 전부 “주식회사 등”으로 변경하자는 법률(안)이었다.¹²⁸⁾

이러한 개정을 통해 그간 “주식회사”에 한하여 적용되던 규율을 “유한회사와 비영리법인” 등에 확대 적용하자는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는 기본적으로 찬성할 수가 있다. 그러나, 주식회사의 일부에만 적용하던 것을 비영리법인을 포함한 모든 법인으로 한꺼번에 개정을 가한다면 그에 따른 저항은 만만치 않을 것이므로 일단은 영리법인 기업의 범위 내에서 물적 중심회사만 우선적으로 개정을 진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하에서는 그 개정안을 구체적으로 < 표 15 >를 통해서 제안해 보고자 한다.

127) 주식회사 등이란 주식회사, 유한회사, 비영리법인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128) 김태호의원 대표발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4. 1. 재인용

(2) 유한회사 등에 대한 규율체계 마련

그동안 회계의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노력한 결과, 우리나라 회계 제도의 인프라 전반은 국제적인 수준¹²⁹⁾에 이르고 있으나 유한회사와 비영리 법인 등은 회계감독의 사각지대에 있도록 유지되어 왔고, 대형 비상장주식회사는 다수의 이해관계인 등으로 얽혀 있어 상장사와 유사한 회계 투명성이 요구되어 왔으나, 현실은 아직도 소규모 비상장사 수준으로 규율하고 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소규모 외부감사인(감사반 등)의 회계감사 능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회계법인의 회계감사 품질관리제도 개선 등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품질관리 감리제도는 2007년도부터 도입되었으나, 효과적인 이행수단이 미비하여 실효성이 극히 제한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2016년도에도 일부 대기업을 중심으로 기업 부실과정 등에서 분식회계가 발생한 것이 보도되고 있고, 그에 따라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제고에 대한 요구도 꾸준히 증대되고 있음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외부감사인이 기업으로부터 벗어나 보다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며, 감사업무의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기업이나 외부감사의 책임성 등을 지금보다 강화할 수 있도록 현실성 있고 실효성 있는 제도 구축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3) 외부감사 대상 확대 및 규율 강화

① 유한회사에 대한 외부감사 도입

2011년 상법이 개정됨으로 인해 유한회사와 관련된 규제가 대폭 완화되면서 지분양도가 허용되는 등 주식회사와 실질적으로 유사해졌고 최대자본금제도 및 사원수에 대한 제한 등의 폐지와 지분양도의 허용, 그리고 기존 유한회사와 유사한 성격의 “유한책임회사”가 신설된 것에 대해서는 전술하였다.

그러나 이해관계자 수가 많아짐에 따라 회계 투명성이 중요한 대규모 유한회사의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지만, 유한회사에 대해서는 아직

129) 회계전문 체정기구 설립(1999년) 및 회계법인 품질관리 감리제도 도입(2007년), 국제회계 기준(IFRS) 적용 의무화(2011년) 등.

까지 회계처리 기준·외부감사 의무·재무제표 공시 등 외부감사에 관한 규율이 마련되지 않아 규제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 하겠다.

< 표 16 > 주식회사·유한회사·유한책임회사 제도 비교

구 분	주식회사	유한회사 (상법 개정전 → 개정후)	유한책임회사 (상법 개정으로 신설)
자본금	제한 없음	1천만원 이상 →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주주(사원)수	제한 없음	50인 이하 → 제한 없음	제한 없음 * 사원 가입은 정관변경시에만 가능
지분 양도	제한 없음	불가능 → 제한 없음	불가능
사채 발행	가 능	불가능	불가능
이사의 수	3인 이상	1인 이상	업무집행자 1인 이상
이사회 제도	있 음	없 음	없 음
감사	필수 기관	임의 기관	없 음

자료) 금융위원회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 입법예고자료 . 14.10.8.

위의 < 표 16 >은 현행 물적중심회사인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에 대한 법제의 종합비교표이다. 상술한 바와 같이 유한회사에 대해 외부감사를 의무화해야 함이 바람직 할 것이나, 외부감사의 실익이 적은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면제하되 면제 범위는 시행령에서 구체화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¹³⁰⁾ 그리고 유한회사의 회계처리 기준(가칭 주식회사 등의 회계 및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내부회계관리제도(동법 8조)¹³¹⁾ 등은 비상장주식회사에 준하는 규율을 적용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감사보고서 공시의무는 이해관계자 보호의 실익 등을 감안하여 유한

130) 금융위원회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 보도자료 인용, 14년 10월 8일자, <http://www.fsc.go.kr>

131) 자산 1,000억원 이상시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

회사의 범위, 공시의무를 지는 유한회사의 범위, 공시내용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하에서는 현행법상 유한회사와 비상장주식회사의 회계처리에 관하여 비교표로 정리해 두고자 한다.

< 표 17 > 비상장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회계규율 비교

	비상장 주식회사	유한회사
외부감사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산 120억원 이상 ◆ 자산 70억원·부채 70억원 이상 ◆ 자산 70억원·종업원 300인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행령에서 구체화
회계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내부회계 관리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산 1,000억원 이상시 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외부감사인 선임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또는 감사위원회)가 외부감사인 선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가 있는 경우) 감사가 외부감사인 선임 ◆ (감사가 없을 경우) 회사(경영진)가 외부감사인 선임
재무제표 공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외부감사 대상 비상장 주식회사가 재무제표를 공시 ◆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 전부를 공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행령에서 구체화

자료) 금융위원회 전계자료.

② 외부감사 대상 요건에 매출액 기준 도입

현행 외감법은 외부감사 대상요건으로 자산, 부채, 종업원 수를 두고, 매출액은 기준에 포함 시키지 않고 있다. 다만, 매출액 규모는 거래처와 소비자 등 이해관계인의 수를 파악하는 것과 정확한 과세를 위한 회계투명성이 높은 지표로 이용되고 있을 뿐이다. 외국 선진국에서는 매출액을 외부감사 대상요

건으로 두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의 경우도 매출액을 외부감사 대상요건에 포함시킴이 타당하리라 생각한다.

< 표 18 > 주요국 외부감사 대상 기준

구 분	외부감사 의무	면제 대상
영 국	◆ 회사법상 모든 회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 중 2 이상 해당 · 총자산 £326만(56억원) 이하 · 매출액 £650만(112억원) 이하 · 종업원 50인 이하
독 일	◆ 상법상 모든 회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 중 2 이상 해당 · 총자산 484만유로(67억원) 이하 · 매출액 968만유로(134억원) 이하 · 종업원 50인 이하
호 주	◆ 회사법상 모든 회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 중 2 이상 해당 · 총자산 1,250만호주달러(119억원) 이하 · 매출액 2,500만호주달러(239억원) 이하 · 종업원 50인 이하

주) 진정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검토보고서(2014년)” 재인용

③ 감사인 품질관리제도 확립

회계법인의 감사업무 품질 확보를 위해 “품질관리 감리제도”¹³²⁾를 2007년에 도입 하였으나, 아직도 회계법인의 품질관리 수준은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품질관리기준에 대한 준수 의무가 법에 아직 명시되어 있지 않고, 설령 감리시에 미흡사항이 지적되더라도 개선권고 이외에는 조치근거가 없는 것이 지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품질관리의 수준을 주기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고, 품질관리 현황을 공개하는 등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므로 품질관리기준 준수 의무 및 제정 절차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정하

132) 회계법인이 감사품질 유지를 위해 지켜야 할 인사, 성과배분, 교육 등 관련 기준을 마련 하여 두고, 이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제도

도록 해야 할 것이고, 금융감독위원회는 이를 사전 승인해야 함을 법률로 명시해야 할 것이며, 또한 품질관리기준 위반시 제재근거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④ 회사 및 감사인에 대한 과징금제도 도입

현행법제에서는 분식회계 등에 대해 자본시장법·공인회계사법 등에 과징금에 의한 제재가 일부 도입되어 있으나, 적용범위 한정 등으로 그 실효성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현행 규정으로는 사업보고서에 대한 의무제출 대상¹³³⁾이 아니거나, 증권을 발행하지 않은 회사가 분식회계를 하면 이에 대해서는 증권발행 제한 등 실효성이 상당히 낮은 조치만 가능하다.

그리고 감사인의 고의 및 중과실로 인한 감사기준 위반에 대해서는 부당한 이익을 환수하는 강력한 금전적 제재가 미흡한 실정이며, 현행 공인회계사법상 과징금은 “업무정지를 같음”하는 과징금성격으로 그 활용도 상당히 제한적이다.

따라서, 분식회계 등에 대한 법률상 과징금에 관한 체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입법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3) 대규모 비상장회사에 대한 회계규율 강화에 관한 제안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비상장주식회사에 대하여도 상장회사에 준하는 회계감독 규율을 적용받도록 하기 위하여 주권상장법인의 회계감독 규정에 대형 비상장주식회사를 추가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2013년도 말을 기준으로 자산총액이 5,000억원 이상인 비상장주식회사가 407개에 이를 만큼 다수의 대형 주식회사가 비상장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데, 비상장주식회사는 규모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비상장이라는 이유만으로 완화된 회계감독 규율을 적용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하에서 비상장주식회사의 규모별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33) 주권상장법인과 회사채 등 공모발행법인, 외감대상 법인 중 증권별 소유자수 500인 이상.

< 표 19 > 비상장 주식회사의 규모별 현황

(단위 : 개)

구 분		사업연도			
		2010	2011	2012	2013
자 산 총 액	1조원 이상	170	187	200	211
	5,000억원 ~ 1조원	180	179	195	196
	3,000억원 ~ 5,000억원	242	261	275	303
	1,000억원 ~ 3,000억원	1,436	1,451	1,519	1,603
	700억원 ~ 1,000억원	954	1,014	1,012	1,086
	500억원 ~ 700억원	1,121	1,145	1,272	1,341
	300억원 ~ 500억원	2,375	2,593	2,759	2,996
	100억원 ~ 300억원	9,833	10,521	10,900	11,735
합 계		16,311	17,351	18,132	19,471

자료) 한국공인회계사회 통계자료(2014)

비상장주식회사 중 대형회사인 경우는 많은 이해관계자가 존재하므로, 상장회사에 준하는 회계투명성이 요구되나, 현행 규정은 회사 규모와 무관하게 비상장 주식회사 전체에 대해 상장 주식회사에 비해 완화된 회계규율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대형 비상장주식회사에도 상장주식회사에 준하는 회계 규율을 적용할 필요가 있고, 이 경우 대형 비상장주식회사의 기준은 시행령에서 또는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여 구체화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대형 비상장주식회사를 회계감사 할 수 있는 회계법인의 규모를 제한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동일 이사가 연속하여 감사할 수 있는 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표 20 > 상장회사와 비상장주식회사의 회계 규율 비교

구 분	상장 주식회사	비상장 주식회사
감사인 범위	◆ 회계법인으로 제한*	◆ 회계법인 + 감사반
동일이사 감사 제한	◆ 3년간 연속감사 후 3년 제한	◆ 5년간 연속감사 후 1년 제한
감사인 선임기간	◆ 3년간 연속 선임 의무	◆ 제한 없음
감사인 선임절차	◆ 감사인 선임위원회 승인**	◆ 내부감사 승인으로 가능

자료) 금융위원회 전제자료.

주) * 유가증권시장 상장 주식회사만 해당(코스닥·코넥스 상장은 감사반 감사 가능)

** 전문성과 독립성이 갖추어진 외부감사인을 선임하기 위해서 구성하는 위원회(감사 1인, 주주 2인, 사외이사 2인, 기관투자자 2인, 채권금융회사 2인, 등으로 구성)

4) 비영리법인의 투명성제고를 위한 기준확립에 관한 제안

(1) 회계투명성 확보차원의 총괄기구 구축 및 회계원칙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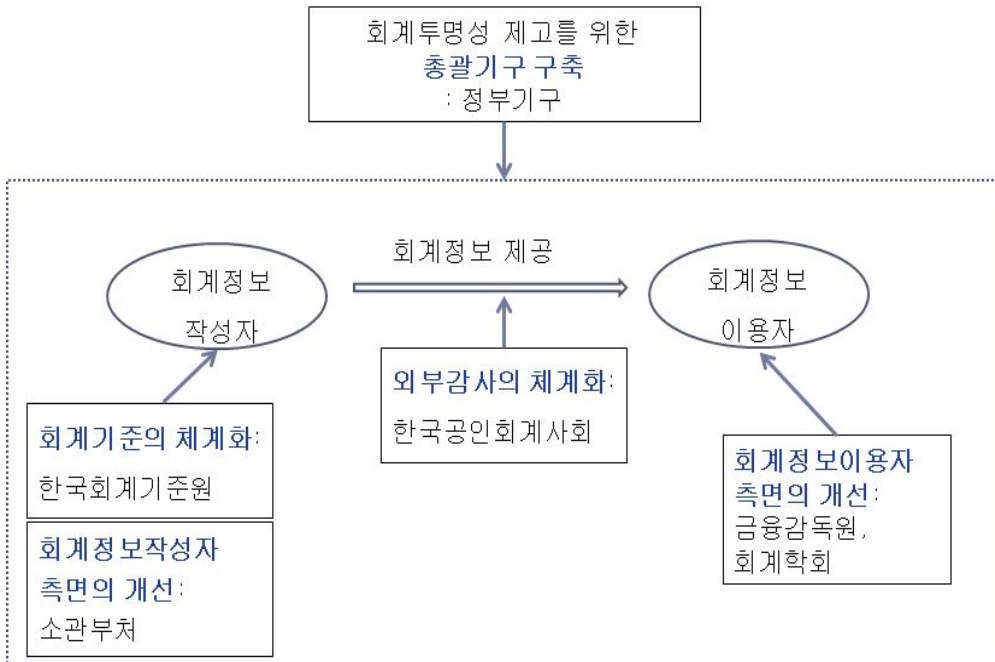
일반적으로 사회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의 역할은 아래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회계기준, 회계감사, 회계정보 작성자, 회계정보 이용자, 회계제도 등 크게 5개 분야로 구성된다. 우리나라 회계감사에 관한 규정 중 비영리법인의 회계현황과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제시한 방안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회계기준의 체계화를 위해서 한국회계기준원이 주관기관이 되고, 회계감사의 체계화를 위해서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주관기관이 되며, 회계정보 작성자 측면의 개선을 위해 정부의 각 소관부처가 주관기관이 되며, 회계정보 이용자 측면의 개선을 위해서는 회계학회와 금융감독원이 주관기관이 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주장하는 견해들이 표출되고 있다.¹³⁴⁾

134) 김완희·정창모·전규안·송옥렬·남혜경, “비영리조직의 회계투명성 제고방안” 「한국회계학회 기타자료집」 Vol. 2013 제4호, 2013, pp.16-54.

이러한 견해에서는 모든 과정을 총괄하는 총괄기구로서 정부기구가 역할을 담당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과 견해에 대해서 논자는 기본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다.

상술한 주장과 견해를 그림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¹³⁵⁾

< 그림 3 > 회계투명성 확보차원의 제도개선방안



①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총괄기구 구축

사회의 각 분야별로 회계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소관부처(금융위원회, 행정자치부, 교육부 등)가 다르고, 회계와 관련된 규제를 개별법에 근거하여 규정하고 있지만 형식적인 운영이 대부분이다. 회계시스템은 각 전문 분야별 특성을 고려하여 '신뢰성 있는 재무보고'라는 하나된 목표로 설계되어야 하지만, 현실은 소관 부처가 달라 체계적인 회계기준 정립이 어렵고 또한 규제시스템

135) 김완희 등, 전제논문.

을 구축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을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시급한 것은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총괄 기구의 구축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실제적이고 보다 효율적이면서 독립적인 회계감독을 위해 전 정부를 총괄하는 회계관련 기구의 설립 또는 기존에 존재하는 기구를 대폭 개편하여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총괄 기구(control tower)의 구축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이 기구가 모든 영역에 대한 회계시스템을 직접 관리감독하지 않더라도 효율적이고 일관된 회계정책을 위한 총괄 및 지휘 기능을 갖는다면 회계투명성의 목적에 매우 근접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회계에 관한 control tower의 역할은 그동안 회계와 외부감사에 관한 전문능력을 가져온 정부기구가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정부기구가 control tower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더라도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와 협력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즉, 현행의 관련 부처가 다른 기관의 외부감사 및 회계와 관련된 역할을 수행하더라도 이러한 정부기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여 회계와 감사제도의 기본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비영리법인의 회계원칙 마련

현재 협동조합법, 민법 등에 따라 여러가지 비영리법인이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지만, 회계처리의 기준에 대한 통일적인 원칙은 거의 없는 현실이다. 다만, 영리법인에 대해서는 상법에 따른 회계자료(상업장부) 작성원칙이 준용되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비영리법인은 소관부서 법령별로 일부 회계관련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나, 상당수의 비영리법인은 회계원칙 자체부터가 미비한 것이 현실이다.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도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하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객관적인 자료·증빙에 따라 공정한 회계 처리가 필요하다.

따라서 금융위원회관할로 비영리법인에 대한 표준회계처리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 비영리법인 소관부처가 그 설립목적·특성 등을 감안하여 비영리법인 회계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원칙을 정함으로써, 소관기관의 회계규율지원의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겠다.

(2) 회계기준의 체계화

비영리법인에 대한 회계기준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통일된 회계기준의 제정, 내부통제제도의 확립, 외부감사의 체계화, 회계정보 이용자 및 작성자 측면의 개선, 맞춤형 회계시스템의 도입 등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① 통일된 회계기준의 제정

현재 비영리법인의 회계처리에 관하여는 「비영리조직의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 지침서」가 마련되어 있으나, 동 지침서는 비영리조직의 회계실무와 괴리가 크다. 비영리법인의 회계기준은 복식부기와 단식부기가 혼재되어 있고, 여전히 현금주의를 사용하고 있는 조직도 존재한다. 복식부기제도는 하나의 거래를 대차평균의 원리에 따라 이중으로 기록하는 방법이며, ‘자산=부채+자본’의 구조를 갖는다. 이를 사용하면 대차평균의 원리로 인해 내부통제기능이 작용할 수 있고 상호점검이 가능하기 때문에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고, 또한 이를 통하여 회계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비영리기관의 책임감과 회계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 외에도 복식부기제도를 사용하게 되면 정확한 재정정보의 산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부경영진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단식부기에 비해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렵기에 전문가에 의한 회계지식 교육과 지원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발생주의에 대한 회계처리기준을 재정비하여 비영리법인이 준용할 수 있도록 재무회계규정을 개정, 혹은 신설할 필요도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회계기준을 체계화하는 방법으로 미국처럼 하나의 일원화된 회계기준을 제정하여 모든 비영리법인에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방법과, 일본처럼 비영리법인별로 각각의 회계기준을 제정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상기한 「비영리조직의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 지침서」라는 일종의 통일된 회계기준과 각 비영리법인별 회계기준이 공존하고 있는 상황에 있다. 그러나 「비영리조직의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 지침서」는 통일된 회계기준의 역할을 수행하기에 부족하고, 각 비영리법인별 회계기준은 비영리법인의 결

산서에 대한 명칭이 서로 상이하며, 공시 재무제표의 내용도 상이하여 일관성이 없다. 그러므로 일관된 회계지침을 마련할 필요도 있다고 할 것이다.

상술한 바를 종합하면, 비영리법인에 적용되어질 기본적인 회계기준을 제시하고, 비영리법인별 서로 다른 목적과 회계처리규정에 대해서는 각 비영리법인별로 적용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나, 이러한 회계기준 제정과정에서는 일관성 있고 논리성 있는 회계기준이 제정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통일된 회계기준은 한국회계기준원에서 제정하고, 각 비영리법인별 회계기준을 현재처럼 각 부처의 주관하에 제정할지라도 한국회계기준원과 협력하여 일관되고 논리적인 회계기준이 제정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일본의 다원적 접근방법과 미국의 통일적 접근방법의 절충 형태로서 기존의 비영리법인 회계기준을 존중하면서도 그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으로써 양자의 장점을 살린 방안이다. 더불어 비영리기관용 재무정보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도 필요하다는 점 또한 지적해 두고자 한다.

② 회계정보의 공시대상 및 공시범위의 정립

통일된 회계기준의 제정과 함께 회계정보의 공시대상과 공시범위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먼저, 비영리법인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는 공시대상 기준금액(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하면 자산총액 5억원 이상 공익법인)을 좀 더 하향 조정하고 수입기준으로 병행하여 부과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모든 공익법인이 회계정보를 공시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미국과 영국의 경우에는 비영리법인의 규모와 관계없이 일정한 양식에 의해 연간보고서 등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고, 다음은 현재 비영리법인별로 각각 다른 이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기에 비교가능성이 매우 낮으므로 필수 재무정보를 선정하여 각 비영리법인이 공시해야 하는 정보를 표준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비영리법인의 회계정보 공시에 대한 감시활동 등은 민간시스템을 활용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예산과 인력의 절감이라는 차원에서 참작해 볼 수 있음이다.

③ 내부통제제도의 확립

비영리법인은 회계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식을 가진 직원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달리 말하면 비영리조직이 회계투명성을 위해 노력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더라도 인력부족으로 인해 실행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기존 직원들로 하여금 회계와 관련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기회를 제공하고, 더 나아가 부족한 부분은 공인회계사의 재능기부의 형식으로 회계관련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현재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사회공헌사업의 하나로 ‘비영리법인 회계 멘토링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비영리법인의 결산서 및 연차보고서 작성에 대한 지원, 회계실무의 개선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비영리법인의 회계처리를 투명하게 유도하고 있기는 하나, 내부통제제도를 확립하여 비영리법인이 자체적으로 회계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④ 감사위원회 운영

비영리법인에 대한 건전한 지배구조 확립을 위해서 윤리규정을 재정비하고, 이사회와 독립적인 감사위원회를 구성하되 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의 구체적인 방안으로 비영리법인의 운영상황에 관심이 있는 국민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감사위원회 등을 운영하여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채널을 제공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월드비전이라는 비영리단체는 ‘후원자 모니터링’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기부자들이 후원하고 있는 아동들을 직접 만날 수 있게 하고 있는데, 이러한 움직임은 기부금의 투명한 사용을 확인하게 함으로써 기부자들에게 신뢰를 제공하여 자발적인 기부문화 형성에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작용하고 있다.

⑤ 외부감사의 체계화

현행 외부감사대상은 외감법에 따라 주식회사에만 한정하고 있으나, 주식회사가 아니더라도 국민생활 및 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법인 등은 회

계투명성 제고를 위해 외부감사가 필요할 것이다. 상호금융조합은 신용사업이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능이 주식회사인 금융기관과 비슷하고, 공동유대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누구나 조합을 이용할 수 있는 등 다수의 이해관계자도 존재하고 있다. 외감법에 의해 주식회사인 금융기관은 외부감사 의무대상이지만, 해당법률에서 외부감사 근거를 찾을 수도 있는 상호금융조합의 상당수는 외부감사를 받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즉, 대부분의 기관은 주무부처 장관의 재량에 따라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의 기관만 외부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만 시행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외부감사강화에 관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비영리공익법인에 대해서는 공인회계사에 의한 외부감사를 확대하되, 일정 규모 이하의 비영리공익법인의 경우에는 한국공인회계사회를 중심으로 무료로 외부감사를 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는 공인회계사의 재능기부의 일환으로 진행하고 무료감사에 참여한 공인회계사의 경우에는 일정 범위 내에서 회원 연수시간으로 인정하도록 하는 방안도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된다.

이러한 외부감사강화에 대한 대안이 모색될 경우 비영리단체는 회계에 대해 규제로 생각할 것이고, 회계기준은 준수하여야 할 중요한 법규로 인식하고 공인회계사를 감시하는 기관으로 생각할 것이며, 회계기준의 준수에 대한 부담감을 크게 느낄 수 있을 것이고, 단식부기 중심의 회계임에도 불구하고 공인회계사는 복식부기에 따른 조언을 함으로써 복식부기 전환에 따른 부담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 캐나다, 영국 등 선진국에서도 소규모 단체를 제외하고 신탁과 같은 상호금융기관의 경우도 예외 없이 외부감사를 의무화하고 있다. 즉, 영국은 FSA(Financial Services Authority)의 검사 여부와 관계 없이 원칙적으로 모든 신탁은 매년 외부감사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신탁(직전연도 총출납액기준 5,000파운드) 또는 조합원수 500명 이하이고 총자산기준 5,000파운드 이하인 신탁에 대해서만이 예외적으로 외부감사 의무를 면제하고 있을 뿐이다.

캐나다는 감독기관과 무관하게 모든 신탁에 대해 외부로부터 독립된 감사인에 의해 재무제표 감사를 받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미국은 총자산 1,000만달러 이상인 신탁은 매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독립된 외부감사인에게 외부감사를 받을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리고 총자산 5,000만달러 이상 신탁은 외부감사인의 범위를 공인회계사로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분식회계 사전예방 및 상호금융기관 서로간의 형평성도모를 위하여 일정 규모(예를 들어 자산 300억원) 이상의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외부감사 강제가 필요하다 할 것이고, 그 밖에 조합장 임기와 같은 예외 사항이나 주무장관의 재량(수협·새마을금고 등)에 의한 외부감사 실시의 여부가 결정되어 지는 부분도 제거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외부감사 강제를 위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농협, 수협), 산림청(산림조합), 행정자치부(새마을금고) 등 관계부처와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상호금융기관은 관련 이해관계자가 많고, 파급효과도 크기에 투명한 회계정보의 중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조속한 개선마련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의 회계감사기준과 적용지침에도 여러 법인실체와 관련된 기준이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회계감사기준과 적용지침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별도의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 이는 외부감사에 대한 기본이 되는 원칙은 회계감사기준과 적용지침으로 처리하고, 새로운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실체는 필요시 별도의 관련 지침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현행 외감법 규정에서는 외부감사인 선임에 대한 권한을 회사에 부여하고 있으며, 내부감시기구는 선임하게 될 외부감사인에 대해 승인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즉, 회사가 선임한 외부감사인에 대해 상장법인은 감사인선임위원회에서, 그 외 법인은 감사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외감법 제4조). 그러나 국내 기업의 대부분은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지 않고 지배주주가 직접 경영하는 경우가 많으며, 감사에 대한 독립성도 많이 결여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 때문에 내부감시기구의 외부감사인 승인절차가 형식적인 경우가 많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외부감사인을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가 외부감사의 성공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그러므로 이에 대

한 체계적인 제도화도 필요하다. 새롭게 인증업무를 도입하게 될 때 감사인에 대한 선임권을 누구에게 부여할지에 대한 문제는 인증업무 도입제도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다. 감사보고서의 수요자 또는 감시 및 감독권한을 가진 자가 아닌 감사의 대상자에게 감사인 선임권을 부여할 경우, 감사인은 독립성을 잃게 되어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될 위험에 빠질 수 있다. 따라서 감사인 선임권은 반드시 감사보고서의 수요자나 감시권한을 가진 자에게 부여되어야 할 것이다.

인증업무 도입에 있어서는 어떤 사항에 대한 인증을 하도록 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하다. 정부나 공익법인은 영리법인과는 달리 인증보고서에 대한 수요자가 필요한 정보를 명확히 하여 인증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법인의 실체에 꼭 필요한 내용을 제시할 때 회계기준의 부속명세서형태로 제시하도록 하고 이를 공인회계사가 감사하도록 하는 방법을 이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회계감사 등 인증업무를 추가 도입 시에는 주무관청과 한국공인회계사회 간에 인증대상 등에 대한 사전 협의가 필요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근거 마련은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⑥ 회계정보 작성자 측면의 개선

최근의 화두는 복지가 되고 있다. 그러나 복지제도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조직에 대한 회계투명성확보가 전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회계정보를 작성하는 기관의 지배구조에 대한 정립이 필요하다. 따라서 기존의 관심대상이었던 영리법인 뿐만 아니라 모든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도 지배구조개선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비영리법인 이사회 구성의 합리성 확보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사회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대표성과 전문성을 갖춘 이사가 선임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¹³⁶⁾

즉, 조직의 사업 및 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는 이해당사자 및 고객들의 입장을 대표할 수 있는 자가 반드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공익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사회

136) 한동우, 전게서, pp.14-34.

복지사업법' 개정은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을 반영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비영리법인의 지배구조를 구성하는 기구 간의 역할정립이 필요하다고 하겠는데, 이는 법인의 규정이나 정관 등을 통해 이사회와 사무국의 권한과 책임의 범위를 명확히 나타내는 것과 이러한 것을 실제 경험 등과 연계하여 구체적으로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것을 의미한다. 조직 내의 위원회와 이사회 그리고 사무국간의 관계 정립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와 같이 비영리법인에 대한 지배구조가 제대로 정립되어야 비영리법인의 건전한 의사결정이 가능해지고 또한, 상호견제가 가능해진다. 비영리법인 내에서 상호견제가 가능해지게 되면 종종 발생하는 공금유용이나 횡령 등과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될 뿐만 아니라 회계투명성도 함께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비영리법인의 건전한 지배구조개선과 함께 내부감사제도의 개선과 내부통제제도의 강화가 필요하다. 내부감사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내부감사 선임 방법의 개선이 필요하다 하겠는데, 이 경우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내부감사가 임명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내부감사기능의 역할 강화를 위해 내부감사에 대하여 지속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며, 내부감사가 실질적인 내부통제기능을 갖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편으로 영세한 비영리법인에 대한 수준 높은 내부통제제도를 갖추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최소한의 내부통제제도를 마련하여 법인 내부의 횡령사건 등을 방지하는 것은 비영리법인의 장기적 생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그러므로 일정규모 이상의 비영리 법인은 자체적으로 내부통제제도를 갖추도록 하되, 그 규모 이하의 비영리법인들은 법인 상호간 서로 교차하는 방법을 통하여 내부통제제도를 갖출 수도 있고, 외부의 재능기부 등을 통해서 내부통제제도를 갖추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외부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해서는 외부감사인 선임방법의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외부 감사인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선임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하겠는데, 현재 외부감사를 받고 있는 비영리법인의 경우도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을 중심으로 외부감사인의 선임이 이루어지고 있어 외부

감사인이 본래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외부감사인 선임권은 반드시 감시 및 감독권한을 가진자 또는 감사보고서의 수요자에게 부여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모든 것들의 효율증대를 위해서는 국가보조금 및 기부금 세제혜택 부여와 투명성 제고의 연계가 필요할 것이다. 즉, 비영리법인은 대부분 자체 수익이 발생되지 않으므로 외부로부터의 자원을 제공받고 있다. 따라서 기부자에 대한 기부금 세제혜택 부여시나 국가보조금을 지급할 때 이러한 기부금을 받는 단체의 투명성과 연계시키는 방법으로 비영리법인의 회계투명성을 높이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국가가 보조금을 지급할 때는 회계투명성이 높은 비영리법인에게 또 다른 혜택을 주거나, 이러한 비영리법인에게 기부하는 기부자에게 세제상의 추가 혜택을 주는 방법도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비영리법인의 회계투명성을 평가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모든 비영리법인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회계투명성이 높은 것으로 인정받은 비영리법인에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외국의 사례를 참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복식부기와 발생주의를 이해하는 직원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는데, 이는 비영리법인에 대한 현행 회계는 단식부기와 복식부기가 혼재하고 발생주의와 현금주의가 혼재하고 있어서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있고, 각각 다른 회계기준에 의해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므로 일관성이 없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일면에서는 복식부기와 발생주의에 근거한 재무제표의 작성이 가능하도록 회계기준을 정비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⑦ 회계정보 이용자 측면의 개선

회계정보 이용자 측면에서 살펴보면, 비영리법인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와 재정 운영상황에 대한 정보 등이 투명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비영리법인의 투명성제고를 위한 방법으로 공시대상 기준금액을 하향 조정하는 방법이 있으며, 수입에 대한 기준까지 병행하여 공시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공익법인을 포함한 모든 비영리법인이 회계정보를 공시하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이고,

필요 공시정보의 범위가 명시되어야 할 것이다. 비영리법인의 재무제표작성과 표시에 대해 요구되는 사항이 다를 수는 있겠으나, 여기서는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을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가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가 제공되어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현재 비영리법인에 대한 정보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으나, 국세청에서 배너를 찾기도 어려우며 홍보부족으로 인해 이에 대한 사회적 인지도가 낮은 편이다. 비록 비영리법인에 대한 회계기준이 통일되고 외부감사를 받게 된다고 할지라도 투명성문제는 별개로 여전히 남게 된다. 영리기업의 경우에도 관련회계제도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지만 부실회계에 대한 논란은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비영리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회계정보를 공시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것인데, 미국 가이드스타를 참고하여 볼 때 공시정보에 대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비영리법인에 대한 온라인 공시사이트를 마련하여 주는 것도 좋은 방안이며, 회계투명성이 높은 비영리법인을 표창하여 비영리법인들이 자발적으로 회계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그 대안으로 들 수 있겠다.

⑧ 맞춤형 회계시스템의 도입

기관 및 법인 등의 특성과 그 목적에 맞는 ‘맞춤형 회계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여러 분야의 회계에 대한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고안된 체계화된 시스템을 구축하되, 법인의 특성, 규모 및 목적 등에 따라 차별적으로 실효성 있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현재 외감법은 중소기업과 비상장 대기업에 대한 회계제도가 차별화되어 있지 않고 있기에 이에 대한 차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각 주체별로 회계기준 뿐만 아니라 공시, 외부감사 대상 및 목적이 달라질 수 있기에 회계와 감사에 대한 일관성과 논리성을 유지하며 각 주체에 최적화된 회계시스템을 개발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각 주관 기관(한국공인회계사회, 금융감독원, 한국회계기준원, 학회, 각 소관부처) 등이 주축이 되어 각 역할을 잘 분담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5) IFRS 도입에 따른 회계감사제도의 개선에 관한 제안

(1) 회계실무자의 인식변화 필요성

IFRS 도입에 따른 회계환경 변화의 큰 특징 중 하나는 원칙중심 접근방법을 따른다는 점이며, 또한 중속회사가 있는 경우에는 그 회사와 연결된 연결 재무제표를 기본으로 하고, 이에 따라 사업보고서 등 모든 공시서류가 연결 재무제표를 중심으로 작성된다. 국제회계기준의 큰 특징은 법률 및 규정 중심이 아닌 원칙중심이다. 이에 따른 회계실무자들의 인식 변화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된다.

과거 규율이나 규정 중심의 회계기준이었을 때는 각 국가별로 단일 회계처리가 가능하였다. 이는 명문화된 규정을 어기면 그에 따른 제재가 가해졌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원칙중심은 다르다. 국가마다 다른 회계 환경에 맞는 회계처리가 보장되고, 회사의 업종별로 다른 회계처리를 자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 즉 국제회계기준은 비록 원칙을 정해 놓았지만, 그 원칙에 대한 적용은 개별 국가의 회사에 위임하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동일한 거래에 대해 다른 회계처리를 할 수도 있다는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은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에 관한 책임을 더욱 명확히 인식해야 하는 환경적 요인이 되고 있다. 국제회계기준은 연결재무제표가 중심이며, 국제회계기준에 의한 재무제표는 재무제표 본문 뿐만 아니라 주식으로 공시되는 정보의 양이 많고 복잡하다. 하지만 일부 기업들은 연결재무제표, 현금흐름표, 주식 등의 작성을 감사인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감사인의 독립성 유지에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서 온전한 감사절차가 이루어 질 수 없는 환경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기업에 재무제표의 작성에 관한 책임이 있으며, 회계법인은 기업이 제시하는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는 사실을 보다 명확히 인식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¹³⁷⁾

137) 최근에는 이와 관련하여 재무제표 사진공시제도가 회계업계 일각에서 논의되고 있다. 이는 각 회사의 결산후 작성된 재무제표를 전자공시시스템에 의해 공시하되, 그 재무제표를 중심으로 감사하도록 하는 것이다.

< 표 21 > 원칙중심의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활동주체의 인식 변화

활동주체	원칙중심의 IFRS 도입에 따른 활동주체의 인식 변화
금융감독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과 회계법인이 새로운 회계 패러다임(paradigm) 하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역할의 수행 - 원칙중심의 국제회계기준하에서는 답이 여러 개 있을 수 있음 - 원칙중심 회계환경에서는 기업을 준 원칙아래에서 합리적인 회계 처리를 하고 그 이유를 공시하면 회계기준 세부규정과 일치 하지 않더라도 기업을 처벌하지 않음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이 재무제표 작성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식, 국제회계기준 전문가를 키워서 자체적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할 수 있는 능력 배양 필요
회계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계처리의 의문이 제기되었을 때 금감원의 질의회신이 아닌 감사인의 전문가적인 판단을 수행, 회계법인은 이를 위한 훈련과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 - 자기감사위험을 주의하며 독립성 유지를 우선해야 함
정보이용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계처리의 근거까지 공시, 이를 고려하여 적정성을 판단해야 함
공인회계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율감리에 대한 신뢰성 회복 필요, 일정 수준 이상의 품질관리

주) 회계저널 제20권 제3호, 한국회계학회, 2011. pp.50.

(2) 외부감사 계약제도 개선의 필요성

현행 회계감사계약은 감사인과 피감사회사간의 계약으로 감사 종료 후 피감사회사에서 수입료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다. 회계감사는 공공재 성격이 있으므로 수입료를 피감사회사에서 직접 받는다면 감사인의 독립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 특히 피감사회사가 한정 또는 부적정 의견이나 의견거절을 받는 경우 피감사회사에서 수입료를 주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감사인과 피감사회사간의 회계감사계약이 체결되면 금감원 또

는 다른 기관에서 그 계약금액을 피감사회사에 징수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감사종료 시 감사인에게 계약금액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개선하면, 감사인이 감사대상회사의 회계감사를 하는데 있어서 피감사회사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는 계약구조를 만들어 질 것으로 판단된다.

(3) 규정중심 회계원칙 필요성

규정중심 회계원칙은 명확성이라는 장점도 있지만, 경제적 실질과 무관한 회계처리를 특정기준에 의해 하게 됨으로써 이를 회피하는 구조화된 거래를 하게 된다는 단점도 지적된다. 즉, 상세한 법률과 규정은 회사 경영자들의 자의적인 해석을 제한한다. 감사인도 이러한 규정과 법률 등을 근거로 경영자가 행하려는 기회주의적 경영을 막을 수도 있는 것이다. IFRS 도입 초기에는 원칙중심으로 전환을 준비하기는 하되 규정중심의 장점을 살리면서, 규정이나 원칙의 해석기준에 맞게 광범위한 실무 지침서를 만들어 실무에 사용하게 하는 것이다. 실무 지침서는 감사인의 객관성과 원칙적용의 보편성을 보장하게 함으로써 감사인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광범위한 재무제표자료를 기업 경영자들에 의해 선임된 회계실무자들의 자의적인 해석에 따라 작성하게 되는 위험성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 되는 것이었으며, 감사인 또한 이를 근거하여 감사하여야 IFRS의 적용 및 정착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이유에서이다.

(4) 국제회계기준 심의위원회 도입의 필요성

현행 규정 중심의 회계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감사 및 회계보고 관련 규정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에 반해 IFRS는 회계 담당자와 감사인의 전문적 판단을 중요시하는 원칙중심 접근방법이므로 서로 다른 의견이 존재할 수 있다. 또한 IFRS은 원칙중심 접근방법을 사용하고 있기에 동일한 회계처리에 대한 감사인들의 서로 다른 해석이 나올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IFRS에 맞는 재무제표가 제대로 작성되었는지 또한 이에 맞게 감사하였는지를 판단할 기구가 필요하다.

국세청, 지방국세청과 지역세무서에서는 국세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배심원제 성격을 가지는 것이고, 법리 적용이 분명하지 못한 개별 사안에 대해 심의위원회에 탈세의 판단여부를 묻는 것이다. 이러한 제도는 좋은 효과를 보고 있으며 약간의 시행착오를 거치고 나서 이제는 정착단계에 이르렀다. 그러므로 이와 유사한 공공적 성격의 IFRS 심의위원회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IFRS 심의위원회는 감독기구(금융감독원)의 위임을 받은 심의위원들 즉, 감독기구 파견자, 교수, 감사인, 회계실무자 등이 참여할 수 있을 것이고, 위원들에 대한 위촉은 10배수로 뽑아 각 사안별로 무작위 방식으로 추첨하되 추천된 위원들만 사안별로 별도로 배정받아 IFRS의 올바른 적용에 대한 판단 여부를 결정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다.

(5) 개별기업의 재무제표를 감독기구에서 직접 감독할 필요성

미국은 증권법에 따라 재무정보 감독이 기업의 재무제표를 심사하게 되고, 재무보고에 대한 공시감독을 수행하고 있으며, 빠른 심사 후 결과에 대해 미리 공시된 재무제표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작성 원천부터 투명한 작성을 유도하므로 감독의 효과성이 높고, 재무정보 작성 책임자에 대한 직접 감독이 이루어져 감독의 효율성도 높다. 또한 재무제표 심사 후 단기간 내에 재무제표 수정이 이루어져 신속하게 회계정보가 정정되기도 한다.

이처럼 미국은 증권법을 근거로 하는 공개기업 재무자료에 대해 심사기능은 가지고 있으나, 우리나라와 같은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독방식은 별도로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를 규정한 것이 명확히 없고, 외감법에서 감사보고서의 감리를 수행하는 형태의 간접 감독방식을 채택하고 있을 뿐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어 지는 개별기업 재무제표를 직접적으로 감독 및 심사할 수 있도록 법률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이에 대한 감독 권한을 외부감사인에게 위임하고 있으며, 금융당국은 감사인들만 감독하는 간접 감독방식을 택하고 있는데 이는 소극적인 감독방식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국세청에서 탈세가 의심되는 기업에 대해 강력한 세무조사를 시행하고

있는 현실과도 비교되는 대목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기업의 이해관계자들에게 손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위험한 기업이라는 판단이 되면 감독기구가 직접 나서서 개별 기업의 재무제표를 감독하고 필요하다면 조사할 수 있는 법률의 제정이 시급할 것이다.

6) 내부회계관리제도 개선방안의 모색

우리나라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일본이나 미국의 ‘재무보고와 관련한 내부통제’에 해당되는 규정이지만, 내부통제제도와 내부회계관리제도라는 용어에 대해 이를 이원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인하여 내부통제와는 관련이 없는 것처럼 인식될 우려가 크다. 즉 ‘관리’란 용어로 인해 ‘통제’라는 개념을 정확히 나타내지 못하고 있어 이로 인한 개념상의 혼란을 가져올 수 있으며, 내부회계통제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표현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있다.¹³⁸⁾ 이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각 국의 비교가능성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저자 본인도 이점에 기본적으로 찬성한다.

그리고 비상장기업의 경우는 상장기업과 비교하여 이해관계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이 일반적이고, 실질적인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충분히 수립되어 있지 못한 경우도 많으며, 비록 제반 제도나 규정 등이 수립되더라도 이에 대하여 기업내부제도로 도입해서 실행할 인력이나 재정기반이 부족한 경우가 허다하다.¹³⁹⁾ 그럼에도 외감법은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설치의무를 비상장법인에게는 자산총액이 1,000억원 이상인 회사에 대해서만 부여하고 있다. 이는 제도의 설치와 운영능력 등의 현실이 고려되지 않은 입법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미국이나 일본과 같이 그에 대한 적용대상을 상장법인에 한정하고, 비상장법인의 경우는 운용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하도록 하는 방식의 외감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또한

138) 손상호,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기능 정착방안」, 한국금융연구원, 2006, pp60.

139)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실효성은 기업규모와 관련이 높으며, 자산총액이 큰 기업일수록 실효성이 크다. 또한 비상장중소기업은 비용최소를 위하여 형식적이고 가시적인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할 것이고, 이러한 것이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실효성에 논란을 가져온 것으로 생각된다.

중소기업에 대해 이 제도를 의무적용하게 하는 것도 동일선상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는 기업의 규모, 기업의 업종, 제도의 운영 의지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용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부담완화와 현실고려라는 측면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비상장기업과 상장기업에 대한 외부 이해관계자들의 규모의 차이가 고려되지 않고 일률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가 법적으로 의무화되는 것은 비상장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 지나친 규제로 작용할 위험이 존재한다. 따라서 비상장기업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구축 및 운영을 법정하여 의무적으로 적용시키는 현행법의 방식보다는 기업경영진의 경영목적에 맞는 자율적인 판단에 맡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V. 결론 및 한계점

1. 결론

일반적으로 지하경제는 세원투명성이 확보되면 자동적으로 양성화 된다. 궁극적으로 경제의 투명성 확보는 사업자들의 세원투명성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제도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부터 출발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법인사업자들의 세원투명성이 확보되게 되면, 이들과 연관되어 거래하는 여러 개인사업자들도 투명하게 만들게 되고, 더 나아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들과 거래하는 비사업자들도 거래에 관련된 내용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어 결국은 모든 거래가 투명해지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인사업자들에게 자의적으로 외부회계감사를 받도록 동기부여 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다. 자발적 외부회계감사를 확대하는 것은 세무당국의 입장에서도 바람직할 것이며 이는 세무조사를 위한 인력에 이미 한계를 느끼고 있으므로 현실적으로도 세무조사를 끝없이 확대할 수 없는 점도 감안한 것이라 하겠다.

금융위원회는 외부감사 대상기준을 12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유한회사, 비영리법인 등을 포함한 회사까지 외부감사를 확대하는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외부감사 대상범위 확대와 대규모 비상장주식회사의 회계규율 강화하는 안¹⁴⁰⁾과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는 주권비상장주식회사가 자산 및 부채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부감사를 받도록 하는 안¹⁴¹⁾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비록 법안통과가 언제 이루어질지 알 수는 없지만 이런 논의를 바탕으로 감사 및 회계제도의 투명성 확보를 통해 보다 더 기업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에 희망을 가져본다.

이러한 감사제도개선에 대한 논의가 이슈화 되고 있는 배경은 국내외 투자자 신뢰회복을 위한 회계정보의 투명성 제고에 대한 끊임없는 요구에 기인한

140) 김태호의원 대표발의, 진계법률개정안 참조.

14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12998, 서영교 등 10인), 2014.12.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정책 방향에 대한 찬반 의견이 대립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찬성론에 힘이 실리고 있는 것은 외부감사가 회계투명성을 제고하는 긍정적 효과로 나타나기 위해서 외감법의 개정을 통해 유한회사 등에 대한 감사의 체계화 및 비영리법인의 투명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주식회사의 조직변경 및 비영리법인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감사제도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한 개선방안으로 회계감사의 체계화를 위한 차원에서 주식회사의 감사범위에 대한 개정, 유한회사 등에 대한 규율체계 마련, 외부감사 대상 확대 및 규율 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둘째, 회계정보 작성자 및 회계정보 이용자 측면과 외부감사 측면에서의 개선방안으로서 대형 비상장주식회사 및 비영리법인의 회계규율 강화 등을 위한 차원에서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총괄기구 구축, 회계기준의 체계화를 통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셋째, IFRS 도입에 따른 회계감사제도의 개선을 위한 차원에서 외부감사 계약제도 개선, 규정중심 회계원칙, 국제회계기준 심의위원회 도입 등을 통한 회계감사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회사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감사제도의 역할에 대하여 주식회사 뿐만 아니라 유한회사, 비영리법인 등을 대상으로 개선방안을 살펴보았으며, 또한 원칙중심의 IFRS가 도입되게 되면 회계감사제도가 이에 맞게 효율적이고 믿을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그 방안을 이하의 이유에서 제시하였다.

즉, 원칙중심의 IFRS는 회계전문가들의 판단이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전문가의 지도에 따라 기업은 가장 신뢰할만한 재무보고서를 작성하고, 감리자는 이 보고서를 국제회계기준에 맞게 감독하고 또한 이를 기업의 이해관계자들에게 보고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것들이 신뢰성을 높이는 지름길이며, 회계정보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또한, 금융당국도 기업의 이해관계자들이 심각한 피해가 발생되리라고 예상되는 기업에 대해서 직접적으

로 감독하고 및 조사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세분하여 회계기준, 회계감사, 회계정보 작성자, 회계정보 이용자, 회계제도 등 5개 분야로 나누어 감사제도 현황과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그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를 통하여 그동안 영리법인(특히 외감법 대상인 감사대상 주식회사)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회계투명성이 유한회사 뿐만 아니라 비영리법인에게도 중요함을 제시하였고,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유한회사 및 비영리법인에 대해서까지도 외부감사를 확대해야 한다는 제안은 유한회사 및 비영리법인에 대한 규제를 확대하거나 감독을 강화하여 유한회사 및 비영리법인의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회계투명성의 확보를 통해 그들 법인이 본래의 역할을 제대로 더 잘 수행하도록 돕기 위한 것에 있음이다.

또한 비상장기업의 입장에서 부담이 되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외감법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치의무를 비상장법인중 자산총액이 1,000억원 이상인 회사에 대해서도 부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미국이나 일본과 같이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적용대상을 상장법인에 한정하되 비상장법인의 경우는 운용할지의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외감법 개정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중소기업에 대한 의무적용도 동일선상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기업의 규모, 제도의 운영 의지, 업종 등을 고려한 탄력적 운용이 바람직하고 부담완화와 현실고려라는 측면도 함께 고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간에 외부 이해관계자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일률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것은 비상장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 지나친 규제로 작용될 위험이 존재하므로, 비상장기업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구축과 운영을 법정하여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현행법 보다는 이러한 의무적용을 면제하되 기업경영진의 경영목적에 따른 자율적인 판단을 믿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하겠다. 또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유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평가에 대한 근거기준의 제정주체를 민간기구에서 정부기구로의 이전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2. 한계점 및 향후 연구의 방향

본 연구는 대부분 문헌연구를 바탕으로 한 규범적 연구이기에 회계감사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객관성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앞서 제시한 개선방안에 대한 실증적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주식회사의 조직변경에 대한 업체의 폐쇄성으로 인한 자료의 확보가 어려웠기 때문에 실질적인 조직변경 전후의 기업에 대한 손익을 계량화해서 분석하는 실증적인 연구가 뒷받침되지 못한 한계점을 지닌다.

추후 연구에서는 변경관련 실증연구 뿐만 아니라 주권비상장주식회사의 자산총액 규모의 조정(현행 120억원 이상은 외부감사의 대상임) 및 부채규모 등이 일정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주권상장법인이 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권상장법인의 이해관계인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라도 해당 주권비상장주식회사가 독립된 외부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도록 할 필요성에 대한 세부적인 연구가 뒷받침 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는 외부감사의 목적이 다양한 외부정보 이용자를 보호하고 기업의 회계투명성을 제고하여 공적인 신뢰를 높이는 데 있음을 고려할 때, 외부감사의 의무대상이 되는 자산기준은 경제여건의 변화 외에도 이해관계자 보호의 필요성, 회계의 투명성 확보, 경영진 감시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사안이라 생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연구범위에 포함되지 못하였지만, 주권상장법인이 대주주에 해당하는 주권비상장주식회사에 대해서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외부감사의 대상을 정하는 기준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회계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이해관계인의 보호와 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 기인하여 자산기준 등을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연구해야 함을 추후 과제로 남긴다.

【참고문헌】

1. 국내문헌

- 강희갑, “미국의 주식회사의 감사위원회제도에 관한 최근 동향과 그 시사점” 「상사법연구」 제20권 제4호, 2002.
- 곽수근·박종일, “외부감사가 타인자본비용에 미치는 효과: 비상장기업을 중심으로” 「세무와 회계저널」 제12권 제4호, 2011.
- 권상로, “주식회사의 감사 감사위원회제도에 관한 법적 연구” 「한독사회과학논총」 제20권 제3호, 2010.
- 권수영·이영한·황문호, “국제회계기준 및 신·국제감사기준 도입에 따른 회계감리제도 개선방안” 「회계저널」 제20권 제3호, 2011.
- 권순희, “미국과 독일의 기업지배구조와 최근 동향에 관한 비교검토” 「상사법연구」 제21권 제4호, 2003.
- 권영호, “감사인 교체와 규모가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 「국제회계연구」 제25집, 2009.
- 김교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시 유의사항과 내부회계관리자의 역할” 「상장회사내부회계관리자포럼제2호」 한국상장회사협의회, 2007.
- 김상웅, 「내부감사제도의 이해와 활용을 위한 사례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시립대학교, 2006.
- 김소연, 「국제회계기준(K-IFRS) 적용이 감사시간 및 감사보수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서울시립대학교, 2014.
- 김순석, “기업의 회계부정과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제고방안” 「증권법연구」 제3권 제2호, 2002.
- 김완희·정창모·전규안·송옥렬·남혜정, “비영리조직의 회계투명성 제고방안” 「한국회계학회 기타자료집」 Vol. 2013 제4호, 2013.
- 김용식, “K-IFRS시행에 따른 경영자와 감사인간의 의견불일치와 감사의견에 관한 연구” 「회계학연구」 제38권 제2호, 한국회계학회, 2013.

- 김정란, 「우리나라 회계감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조선대학교, 2001.
- 박성환, “비영리법인의 외부감사와 공시제도 개선방안” 「한국공인회계사회 심포지엄」 (2013).
- 박성환·이호영·강선아·채수준, “비영리법인 내부통제 현황과 외부감사제도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인식 설문연구” 「국제회계연구」 제62집, 2015.
- 박정우·최원석·이영한·전병욱, “외부감사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연구” 「조세연구」 제10권 제1호, 2010.
- 배원기, “일본의 비영리법인(공익법인) 제도의 개혁과 시사점: 우리나라 제도와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비영리연구」 제11권 제1호, 2012.
- 백희영, 「미국 유한책임회사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2011.
- 서성호, “일본 회사법상 주식회사의 감사제도에 관한 고찰” 「한국비즈니스리뷰」 제4권 제3호, 2011.
- , “주식회사의 감사제도에 관한 연구”, 「기업법연구」 제18권 제1호, 2004.
- , “회계감사인의 법적책임에 관한 연구” 「기업법연구」 제15집, 2003.
- , “소규모주식회사의 감사제도에 관한 비판적 고찰” 「기업법연구」 제28권 제4호, 2014.
- 서성호·김진환, “주주의 유한책임과 채권자보호에 관한 고찰” 「기업법연구」 제24권 제3호, 2010.
- 서성호·이재운, “한국상법상 주식회사의 감사제도에 관한 고찰” 「기업법연구」 제25권 제3호, 2011.
- 서성호·이재운·김진환, “주식회사의 회계감사제도에 관한 연구” 「기업법연구」 제26권 제2호, 2012.
- 서완석, “기업지배구조론에 관한 서설적 고찰” 「기업법연구」 제27권 제4호, 2013.
- , “주식회사의 감사제도에 관한 연구” 「기업법연구」 제18권 제1호 2004.
- 서의경, “주식회사 감사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제25권 제3호, 2015.

- 손원익·송은주, “비영리단체 정보공개 제도의 국제비교: 한·미·일을 중심으로” 「비영리연구」 제8권 제3호, 2010.
- 오광욱·정석우·차승민, “외부감사가 부채조달비용에 미친 효과: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의 비교를 중심으로” 「국제회계연구」 제38집, 2011.
- 유정민, “투명한 회계, 코리아 프리미엄” 「월간 공인회계사」 Vol 247, 2013.
- 이수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기업법제 개선방안」 박사학위 논문, 건국대학교, 2014.
- 이영종, “주식회사 외부감사의 법적 지위와 직무수행에 관한 고찰-기관과 기관담당자의 구별에 기초를 둔 이해를 위한 시론” 「증권법연구」 제15권 제3호, 2014.
- 이재용, 「주식회사의 업무집행에 대한 감사·감독제도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2005.
- 이진호, 「상법상 회사의 회계처리기준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2014.
- 이준섭, “감사인인 피감사회사에 대한 부실감사 책임” 「증권법연구」 제7권 제1호, 2006.
- 이홍욱·손영기, “한·중회사법상 감사제도 비교 연구” 「법학논총」 제38권 제4호, 2014.
- 장금주·강민정·김상순, “법정 외부감사에서 배제된 소규모 비상장기업의 이익 조정” 「회계저널」 제23권 제5호, 2014.
- 전삼현, “독일감사회의 본질에 관한 소고” 「법학논총」 제16집,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06.
- 정도진, “지정감사제 확대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감사(감사위원)의 대응방안” 「상장회사감사회 회보」 제179호, 2014.
- 정문중, “회계투명성의개선 : 감사 및 감리를 중심으로” 「회계저널」 제13권 제2호, 2004.
- 정민희, 「내부통제 및 내부감사 기능의 이해와 활용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2004.
- 정영기·박재환·박종성·진규안·이영환, “신·국제감사기준의 도입에 따른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회계와 감사 연구」 제50호, 2009.

- 창신연, 「중국 주식회사 감사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가천대학교, 2014.
- 최완진, “비교법적 고찰을 통한 우리나라 감사제도의 실태와 개선방안” 「경
 영법률」 제19권 제2호, 2009.
- 최정호·이재은, “감사인 품질관리에 대한 공적규제와 회계정보의 가치관련성”
 「회계학연구」 제37권 제3호, 2012.
-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감사제도” 「상장협실무전집」 vol
 32, 2007.
- 한동우, “사회복지 조직의 거버넌스와 투명성” 「한국회계학회 기타자료집」
 Vol. 2012 제10호, 2012.
- 홍기용·김갑순·이선표·박훈, “자발적 외부회계감사 확대와 지하경제 양성화”
 「회계·세무와 감사연구」 제55권 제2호, 2013.
- 감사연구원, “해외 감사원의 감사제도 연구” 2014.
- 금융감독원, “주요국의 회계감독제도 비교 및 시사점”, 2006.
- , “2015년 외부감사대상 회사 및 감사인 지정 현황 보도자료”
 (2016.1.21.).
- , 2016년 1월 29일 보도자료(<http://www.fss.dr.kr>).
- , 2014년 10월 8일 보도자료(<http://www.fss.dr.kr>).
- 김건식 외, 「회사법(제3판)」 박영사, 2012.
- 서성호, 「최신기업법강의」 무역경영사, 2015.
- 서성호·윤주한, 「(신정판)기업법」 무역경영사, 2011.
- 손상호,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기능 정착방안」 한국금융연구원, 2006
- 신현걸·최창규·김현식, 「IFRS 중급회계」 탐진, 2009, 2013.
- 이범찬·오욱환, 「주식회사의 감사제도」 한국상장회사협의회, 1997.
- 이기수·유진희·이동승, 「회사법」 박영사, 2002.
- 이철송, 「회사법강의(제11판)」 박영사, 2004.
- 이효익, 「회계감사론(제11판)」 신영사, 2010.

- 정찬형, 「상법강의(상)(제17판)」 박영사, 2014.
- , 「제8판·상법강의(상)」 박영사, 2005.
- 정동윤, 「회사법(제7판)」 법문사, 2001.
- 정희철, 「상법학(상)」 박영사, 1989.
- 최기원, 「상법학신론(상)(제18판)」 박영사, 2009.
- , 「14대정판·상법학신론(상)」 박영사, 2003.
- 최준선, 「회사법(제9판)」 삼영사, 2014.
- 한국회계연구원, 「비영리조직의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 지침서」 2003.
-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감사기준」(2012년 12월 금융위원회 승인).
- 머니투데이, “정부 외감대상 기준 완화에 회계업계 반발”(2013년 11월 25일).
- 주간 금융브리프, “EU 회계감사제도 개혁의 주요 내용” 제19권 제42호
(2010.10.23. 발행분).
- 문화일보, 2015년 12월 04일 기사자료.
- 연합뉴스, 2013년 10월 28일 기사자료(박상돈 기자 : kaka@yna.co.kr).
- 중앙시사매거진, 2016년 01월 04일 기사자료(박성민 기자 :
<https://jamagazine.joins.com/economist/view/309635>).
- 신동아, “유한회사 전환으로 감시망 벗어나다”(2013년 04월호 기사자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15년도.
- 김태호외 11인,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
번호 : 9026, 2014.01).
- 진정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정
무위원회·2014).
- Daum백과사전, “엘론 사태란 무엇인가?”(<http://100.daum.net/encyclopediaprint/92xx35800560>).
- Naver지식백과, “대우사태”(<http://terms.naver.com>).

2. 외국문헌

- Abbott, L. J. and S. Parker, “Auditor Selection an Audit Committee Characteristics, Auditing”, A Journal of Practice & Theory, 19, 2000.
- Allen, Jacobs & Strine, “Realigning the Standard of Review of Director Due Care with Delaware Public Policy: A Critique of Van Gorkom and its Progeny as a Standard of Review Problem”, 96 Nw. U. L. Rev. 2002.
- Baums, “German Government Panel On Corporate Governance”-Summary of Recommendations-in : Company Law Reform in Germany, Institut für Bankrecht, 2002.
- Bedard, J., and K. Johnstone, “Earnings manipulation risk, corporate governance risk, and auditors’ planning and pricing decisions”, The Accounting Review 79 (2), 2004.
- Carcello, J. V., A. Vanstraelen and M. Willenborg, “Rules Rather than Discretion in Audit Standards : Going-Concern Opinions in Belgium”, The Accounting Review 84(5), 2009.
- Chen, C., C. Lin, and Y. Lin, “Audit partner tenure, audit firm tenure, and discretionary accruals: Does long auditor tenure impair earnings quality?”, Contemporary Accounting Research Vol.25 No.2, 2008.
- Ettredge, M., J. Heintz, C. Li, and S. Scholz, “Auditor realignments accompanying implementation of SOX 404 ICFR reporting requirements”, Accounting Horizons 25 (1), 2011.
- Frank H. Easterbrook & Daniel R. Fischel. “The Economic Structure of Corporate Law”, Harvard University Press, 1996.
- Gary Gorton, Frank Schmid, “Class Struggle Inside The Firm: A Study of German Codetermination“, NBER Working Paper 7945, 2000.
- Hope, O. K. and J. C. Langli, “Auditor independence in a private firm and low litigation risk setting” The Accounting Review 85 (2), 2010.

- Khurana, I. K. and K. K. Raman. "Litigation risk and the financial reporting credibility of big 4 versus non-big 4 audits: Evidence from Anglo-American countries" *The Accounting Review* 79 (2), 2004.
- Simunic, D. "The Pricing of Audit Services : Theory and Evidence.",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18, 1980.
- Wallace, W. A. "The economic role of the audit in free and regulated markets: A look back and a look forward", *Research in Accounting Regulation* 17, 2004.
- Watts. R., and J. Zimmerman., "Agency problems, auditing, and the theory of the firms: some evidence." *Journal of Law and Economics* 26 (3), 1983.
- Woodlock, P., and G. Claypool, "Your Audit Committee: How to Cope with the End of the 'Rubber Stamp' Era" *The Journal of Corporate Accounting and Finance* 12, 2001.
- 徐聖浩, 「株式會社における監査役制度の研究」法學博士學位論文(早稻田大學) 2001.
- , "監査役の兼任禁止に関する研究" 「法研論集(第87號)」早稻田大學大學院) 1998.
- 奥島孝康, 「コーポレート・ガバナンス : 新しい危機管理の研究」((社)金融財政事情研究會・早稻田大學エクステンションセンター) 1996.
- 酒卷俊雄, 「改正商法の理論と實務」(帝國行政學會) 1974.
- 西山忠範, "監査役の業務監査は取締役の妥當性監査に及ぶか" 「法學教室 第7號(ジュリ別冊)」1975.
- 大隅健一郎・今井廣, 「新版・會社法論(中) I 」(有斐閣) 1983.
- 森田章, 「企業法入門」(有斐閣) 2006.